

입법평가 연구 09-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Regulation for Qualification
of Museum Professional’ System under Museum and
Art Gallery Promotion Act

연구자 : 정종섭(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Chong, Jong-Sup

최정필(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Choe, Chong-Pil

최 환(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Choi, Hwan

2009. 9. 30.

국문 요약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는 학예사자격증 취득과 실제 박물관·미술관에 종사하는 박물관 전문직들이 학예사자격증 발급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며 자격증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학예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법률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는 단계에 따라 사전적·병행적·사후적 입법평가로 나누는데,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는 사후적 입법평가이다.

학예사 제도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는 단순히 경제적 비용이나 효용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학예사 제도를 통해 본래 학예사 제도가 목표하였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났는가? 수범자들이 학예사 제도의 틀 안에서 문화의 창조와 국가적 문화 발전, 국민들의 문화 향유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즉 현재 학예사 제도가 규범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심사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나은 제도의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규범론적 분석의 일환으로 입법평가의 대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의 정의와 학예사자격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소개와 함께 현 제도의 문제점을 및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다음으로 규범론적 분석의 일환으로 규범의 연혁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규범간의 체계 정당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법사회학적 조사방법론의 일환으로 전문가 및 수범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법경제학적 분석방법론인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 분석은 자격제도 시행의 특성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예사자격제도와 관련된 법제에 대한 분석 및 현행 운영되고 있는 학예사 자격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 사례와 국내 유관분야 자격제도 또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방법론으로 학예사자격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 하나는 현행 학예사자격제도상 자격승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승급시 심의 기준을 개선안을 제안하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현행 학예사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따른 학예사자격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평가를 통한 대안제시가 향후 입법자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입법자료를 제공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키워드 :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학예사, 학예사자격제도 운영, 정·준학예사, 전문학예사, 인증학예사

Abstract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e Regulation for Qualification of Museum Professional which is implemented by the Museum and Fine Art Gallery Act. In this poin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point out the inefficiency of the Regulation for Qualification of Museum Professional and to suggest alternative plans through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regulation for museum professional. Generally,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is divided into prospective, concurrent, and retrospective evaluation in terms of the stage of the factory establishment, and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regulations for 'Regulation for Qualification of Museum Professional', according to this view, is a retrospective evaluation. Specifically,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regulation for qualification of museum professional is categorized as "retrospective evaluation".

It is not easy to analyze economic cost and effective value simply based on post-legislative evaluation. This research examined if the regulation of museum professional plays a vital role as a standard tool and if regulation for museum professional fully achieve the original plan and purpose by regulation for museum professional. Also,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answer about "Does museum professionals who obtained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from the government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culture, the cultural advance from the national view?" "Are museum professionals really dedicated to improving the cultural enjoyment of the public?"

Our research, therefore, would like to examine problems caused by the present Regulation for Qualification of Museum Professional and to suggest an ideal model for the system.

In order to carry out the research properly, first, our research setup the definition of museum professional and discussed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adoption of the Regulation for Qualification of Museum Professional, and then drew an improved device for the regulation based on the perspective of normative analysis. Second, the research examined history of the regulation together with systematic justification among them. The research also conducted statistic analysis of questionnaires from museum specialists and those who obtained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under the present regulation. The research, however, did not deal with analysis of cost/benefit and cost/effectivenes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esent regulation itself does not require high cost.

Last, the research attempted to analyze the law related to the Regulation for Qualification of Museum Professional and to compare it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thereby suggesting alternative devices.

This research proposed two alternative models based on the research method of post legislative evaluation. One is to amend the regulation with regard to evaluation criteria for promotion of the ranks of museum professional, while the basic frame of the regulation maintain to exist. Another model is to redefine the concept of museum professionals in order to provide a new regulation.

※ **Key Words** : Legislative evaluation. Post legislative evaluation. Museum and Fine Art Gallery. Museum and Fine Art Gallery Act. Museum professional. Authorized museum professional. Associatemuseum professional. Regulation for qualification of museum professional.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for museum professional.

입법평가 요약서

입법평가 요약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목 차】

- | | |
|------------------------------------|--|
| I. 학예사 자격제도에 대한 입법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전문가 및 수범자 의견조사 |
| 1. 입법평가의 필요성 | 4.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 분석 |
| 2. 입법평가의 목적 | IV 대안 및 권고 |
| II. 입법평가의 대상 | 1. 대안 A:정학예사 승급제도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 1.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의 정의 | 2. 대안 B : 전문학예사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
| 2. 학예사 자격제도의 의의 | 3. 기타의견 |
| 3. 입법평가의 대상 법령 | V. 종합결론 |
| III. 입법평가 방법론 | |
| 1. 서 설 | |
| 2. 규범적 분석 | |

I. 학예사 자격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입법평가의 필요성

본 연구의 기획은 학예사 제도의 기준과 운영, 그리고 활용에 있어 수범자들의 다양한 불만족과 현실적으로 문화의 창조와 향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학예사 제도는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 왔고, 그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획기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특히

학예사 제도는 문화 관계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로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보고서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학예사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못하고 문제만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쳐 왔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전문가와 수범자들의 학예사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집약하고,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학예사 제도가 문화 영역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이 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입법평가라는 연구방법론이 보다 제도 개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보다 바람직한 제도 설계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2. 입법평가의 목적

학예사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는 사후적 입법평가에 해당한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우리가 법 규정의 의도하는 목표에 충분히 도달했으며, 규범수범자들이 가중된 부담을 충분히 수인했고, 용인했는지, 규범수범자들이 규정을 충분히 준수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후적 입법평가는 현행 규정의 발생 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서, 현행 규범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근거를 분명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 규정의 개선 방향(수정, 폐지를 포함)을 근거지우는데 도움을 준다.¹⁾

이와 같은 사후적 입법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본 과제는 ① 제도와 정책 목적 사이의 균형점 발견, ② 법률, 시행령 등에 규정된 정제도의 정비 및 개선, ③ 학예사 제도의 수용성 및 준수성의 정도, ④ 문화 관계법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의 목표 달성 여부, ⑤ 제도의 실효성 및 제도와 현실의 비교, ⑥ 학예사 제도의 활용을 통한 박물관 미술관의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목적 하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박영도 역, “오스트리아와 인접국가에서의 법률평가와 입법평가-오스트리아 입법학회 2003년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 2008, 54면.

II. 입법평가의 대상

1.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의 정의

가. 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의 박물관 전문직 정의

국제박물관협회 정관(ICOM Statutes)의 제 2조 2항2)과 국제박물관협회 전문인력윤리강령(ICOM Code of Professional Ethics)의 제1조 3항3)에 의하면 “박물관 전문직(museum professional)은 전문화된 기술이나 학술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그에 상응하는 실무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문인력의 윤리 기본 강령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박물관 또는 박물관으로 인정받는 기관의 모든 인력으로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박물관 학예사(전문직)에 대한 정의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9년 2월 8일) 제6조에 의하면, 학예사는 제4조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자’로

-
- 2) 2. Professional museum workers include all the personnel of museums or institutions qualifying as museum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in Article 2, para. 1, having received specialized training, or possessing an equivalent practical experience, in any field relevant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a museum, and independent persons respecting the ICOM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nd working for museums as defined above, either in a professional or advisory capacity, but not promoting or dealing with any commercial products and equipment required for museums and services.
- 3) 1.3 The Museum Profession: ICOM defines the members of the museum profession, under Article 2(2) of its Statutes, as follows: “Professional museum personnel include all the personnel of museums or institutions qualifying as museum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in Article 2(1) (as detailed under para. 1.2 above), having received specialised training, or possessing an equivalent practical experience, in any field relevant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a museum and independent persons respecting the ICOM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nd working for museums as defined above, either in a professional or advisory capacity, but not promoting or dealing with any commercial products and equipment required for museums and services.”
-

정의해 놓았다. 또한 제4조 박물관 사업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물의 등록 및 관리, 보존, 조사연구, 전시, 교육, 출판, 교류, 기타 사업 등이다.

2. 학예사 자격제도의 의의

박물관 및미술관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자격제도는 박물관의 전문성 함양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0년부터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2004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학예사자격제도의 내용은 학예사자격증 발급과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학예사자격증 제도는 1·2·3·급 정학예사와 준학예사자격증으로 구분되며 정학예사자격증의 경우는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가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소정의 경력을 이수하면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정학예사자격증 발급 대상자 이외의 희망자들이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준학예사자격증 제도를 병행 실시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질 제고에 이바지 하고 있다.

3. 입법평가의 대상 법령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6 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학예사는 1급 정(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 3 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학예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Ⅲ. 입법평가 방법론

1. 서 설

학예사 제도에 대한 입법평가는 먼저 학예사 제도의 관련 규정이 연혁적으로 적당한 것이고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하였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학예사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에서의 전문가와 수범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자들 간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그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전문가와 수범자들이 현행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행의 제도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학예사 제도 개선 방안을 두 가지로 집약하여 보다 나은 대안의 선택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규범적 분석

학예사제도 관련 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에 있어서 규범적 분석은 규범의 연혁적 분석과 규범의 체계성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규범의 연혁적 분석은 학예사 관련 법제가 만들어질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배경 및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현재시점에서 규제법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사후적 입법평가에서 주요한 분석방법이 된다. 규범의 연혁적 분석은 사법적 판단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⁴⁾ 규범의 연혁적 분석은 현 시점에서 사회현실을 규율하고 있는 법규범이 규범의 탄생 시와 같은 가치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규범에 대한 연혁적 분석을 통하여 학예사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 목적하였던 바를 확인하고 이를 현 시점에서 분석하여 봄으로써 규제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학예사 제도의 규범체계성 분석 또는 규범의 체계 적합성 분석은 관련 법제 전반이 체계 적합성을 갖는가의 검토이다. 물론 학예사 제도는 단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거의 내용의 전부이기 때문에 규범체계성 분석이 다른 규제 법률과 달리 그 자체로 큰 문제

4)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어떤 사안이 후자와 같은 태두리에 들어가는가에 관하여는 본래적으로 규범통계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면서 직접 그 결정주문에서 밝혀야 할 것이나, 직접 밝힌 바 없으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법률의 연혁·성질·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적·합목적적으로 정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동 결정은 판단의 기준으로서 규범의 연혁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세한 것은 1993. 5. 13. 92헌가10등 사건, 판례집 5-1, 240-252면; 현재 2001.12.20, 2001헌바7, 판례집 제13권 2집, 859면; 현재 2000.08.31, 2000헌바6, 공보 제49호, 746면 참조.

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예사 제도를 통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지원할 경우 학예사 제도는 보다 체계적합성을 가져야 지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타당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체계적합성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향후 학예사 제도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의 다양한 지원 근거로 활용될 경우 규제의 성격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체계적합성을 전제로 법제의 합리적 개선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전문가 및 수범자 의견조사

학예사 제도와 관련한 입법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구 방법은 전문가 및 수범자에 대한 의견조사이다. 지원의 주체가 되는 담당공무원과, 실제로 제도의 영향을 받는 학예사 혹은 학예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학예사 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학계의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규범 자체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학예사 제도의 운영 현실과 그로 인한 제도의 효과, 제도의 활용 방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제도의 기준을 말하는데 균형점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는다.

4.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체크 항목에 대한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을 하는 것이 문화 관계법에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또한 시간적·인력적 제약에 의하여 불가능하여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비록 문화 관계법의 특성과 시간적·인력적 제약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직접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을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입법대안의 제시 및 입법자료로서 보다 폭넓은 활용을 위하여 이와 같

은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물이 가지는 역할이 크므로 향후 입법평가 보고서에서는 그 사안에 따라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추후 문화 관계 영역에서도 비용·편익, 비용·효과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EU의 지침을 수정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후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IV 대안 및 권고

1. 대안 A:정확예사 승급제도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가. 근거 및 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정확예사 승급제도 와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정확예사 자격부여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학력(학위)과 실무경력 의 비중을 조정하여 도출해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나. 내용 및 분석

1) 3급 정확예사

	승급 방법	자격 부여 방법
현행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 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승급 방법	자격 부여 방법
개선방안	<p>준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p>	<p>-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p> <p>-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p> <p>-해당분야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p>

2) 2급 정학예사

	승급 방법	자격 부여 방법
현행	<p>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p>	-없음
개선방안	<p>-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p> <p>-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p> <p>-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5)</p>	<p>-해당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p> <p>-해당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p> <p>-해당분야의 박사 과정을 수료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p> <p>-해당분야의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p>

5) 한국 사서직원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준사서에서 2급 정사서로 승급하는 경우,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음.

3) 1급 정학예사

	승급 방법	자격 부여 방법
현 행	2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없음
개선방안	-2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2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 ⁶⁾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해당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 경력인정대상기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국·공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과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미술관 및 외국 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임.

2. 대안 B : 전문학예사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가. 근거 및 의견

학예직의 전문성 내지 전문직성(professionalism)⁷⁾에 대한 논의는 박물관이 사회적 제도로 등장하여 관람객들에게 자료(소장품 및 전시)와

6) 한국 사서직원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2급 정사서에서 1급 정사서로 승급하는 경우,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7) 전문직성은 그것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사회로부터 합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내포하지만,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상태이다. 따라서 일종의 이념적인 것이며, 전문직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집단적으로 인정되는 믿음이나 가치의 체계이다. 반면에 전문직은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구조 및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의 객체이다. 하나의 법칙이 아니라 전문직 자체에서 사회적 실체성이 주어지는 행위이다. 따라서 전문직은 존재를 수긍하고 합법성을 믿으며 그것에 준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을 제공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또한 박물관 학예직은 ‘전문직(profession)’인가 또는 ‘일반직(occupation)’인가, 아니면 준전문직(semi-profession)인가, 혹은 현재 전문직화 과정(professionalization)에 놓여 있는 직업인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박물관 전문 인력훈련위원회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 교육의 적합성 향상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직종 간 공통 자질과 각 전문 영역별로 요구되는 특수 자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박물관학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설계 방향 및 내용을 제안했다.

<표 1> 현직자가 요구하는 박물관 신입인력의 자질

영역 구분		박물관 신입인력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공통 영역	핵심 지식과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내의 다양한 전문 업무 영역과 이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지식 ● 구두(보고)/문서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기술 ● 박물관 윤리에 대한 지식 ● 박물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에 대한 지식 ● 컴퓨터 활용 지식과 기술 ● 박물관의 교육적 미션에 대한 지식 ● 관객 중심적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 ● 인간관계와 팀워크에 대한 지식과 기술 ● 소장품 관리와 보전에 대한 지식 ● 박물관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지식 ● 재정관리와 예산편성 지식 ● 지원금 신청서 작성과 재원조성 지식 ● 연구조사에 대한 지식과 기술 ● 사회의 다양한 계층 및 단체에 대한 지식 ● 박물관 거버넌스와 조직에 대한 지식 ● 역사나 미술사와 같은 전통적인 소장품과 관련된 학술적 영역에 관한 지식

영역 구분		박물관 신입인력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의 테크놀로지 활용 지식 • 학습 장소로서의 박물관과 여가 위락 장소로서의 박물관에 대한 이슈에 대한 지식
	개인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전문인으로서의 적절한 행동(적절한 복장, 박물관 대변자로서의 적절한 행동, 유연성, 박물관과 지역사회에서의 적절한 행동과 에티켓 준수) • 지속적인 학습 의욕과 동기 • 업무의 정확성 추구 •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
전문 영역	관객연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및 전시 개발과 평가 • 사회과학 연구설계와 방법 • 기초 수학 및 통계 • 학습 이론 • 관객 연구의 이론과 문헌
	큐레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텍스트와 라벨 작성을 위한 해석적 작문 능력 • 박물관 소장품과 관련된 감식안 • 박물관 소장품 관련 시장 지식 • 사진 촬영 기술
	재원조성 및 멤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기술과 기법 • 고객 서비스 기법 • 재원조성 기술
	미디어/테크놀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픽 디자인 • HTML 또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섭외/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픽 디자인 • 티켓팅 시스템 • 미디어 운영 • 홍보 기법 • 광고 제작 및 탑재
	레지스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기록 기입과 정보관리 • 박물관 등록 절차 • 박물관 보험과 대여 • 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소규모 박물관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박물관 운영과 활동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박물관 경영

(출처: Terry R. Reynolds(2000), Training for entry-level museum professionals,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http://education.nyu.edu/art/entrylevelprotein.html> 재구성)

전문학예사 제도 실행 시 전문 인력의 능력 검증에 대해서는 박물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 박물관 기능적 측면에서의 개인의 전문성>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이해> 박물관 실무경력> 기관의 업무적 특성이나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외국어 능력> 기획서(보고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능력 순으로 그 우선순위가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 결과, 전문 학예사 제도 도입에 대한 호응도나 이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검증되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 즉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박물관의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과 전반적인 운영 활성화라는 기대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나. 내용 및 분석

1) 대안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학예사’ 라는 명칭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학예연구직을 ‘일반학예사,’ 이외의 유물 등록 및 관리, 보존, 전시, 교육, 행정(정책), 경영, 마케팅 또는 기획 및 마케팅(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 전문 인력을 ‘전문학예사’라고 통칭하여 일반학예사와 구분한다.

2) 대안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학예사’ 라는 명칭을 유지하면서, 전문 영역(유물 등록 및 관리, 보존, 조사연구, 전시, 교육, 행정(정책), 경영, 마케팅 또는 기획 및 마케팅(홍보))을 표기한다. 예컨대, 유물 등록(또는 관리)학예사, 보존학예사, 연구학예사, 전시학예사, 교육학예사, 행정(정책)학예사, 관람객 개발(마케팅 및 홍보) 학예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단, 조사 연구의 경우, 인문사회 학예사, 자연과학 학예사, 예술학 학예사 등으로 대별해서 분류하거나 좀 더 전공 영역을 세분해서 고고

학 학예사, 미술사 학예사, 예술학 학예사, 민속학 학예사, 인류학 학예사, 서지학 학예사, 자연사 학예사, 과학사 학예사, 박물관학 학예사, 역사학 학예사 등으로 세분화 하여 학예사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학예사의 영역을 전공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전문박물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학예사 전공 영역의 세분화에 현실적인 박물관 변화의 추이를 반영해야 한다.

3) 대안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학예사’라는 명칭을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 수정하고, 소장품 관련 전문인력, 공공 프로그램 기획(전시 및 교육영역)전문인력, 행정 전문인력, 관람객 개발 및 마케팅 기획 전문인력으로 구분한다(이탈리아식 직렬 구분 방식 차용).

4) 대안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학예사’ 라는 명칭을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 수정하고, 유물 등록 담당원, 소장품 관리자, 학예연구사, 보존처리사, 전시기획자, 교육담당자, 마케터 등으로 그 명칭을 세분한다(미국, 프랑스, 스위스식 직렬 구분 방식 차용).

전문학예사 제도를 실행하는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하고 있는 ‘박물관 사이버 교육 코스웨어 개발(2007)’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경쟁력 있는 박물관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공동 활용 기관과의 상호 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 증진으로 박물관 전문 인력을 위한 사이버 교육 활성화 및 예산 절감 효과 극대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지식을 수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로 최적의 학습 효과 및 현업 적용도 극대화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통해 박물관 전문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 환경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아울러 실무 활

용도가 높은 교육 콘텐츠가 최신 교수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제공될 예정이므로,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실무 경력 습득과 함께 실무에 대한 적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3. 기타의견

가. 인증학예사 제도

인증학예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민원이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에 빈번하게 요청된 바 있는데, 대학박물관의 경우 실무경력확인서에 총장 직인이 요구되었던 것이 관장 직인으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고, 전문박물관의 경우에도 그 영역 구분이 없어짐으로써 이 문제점 또한 해소되었다.

비록 인증학예사제도의 실행을 원하는 잠재 신청자의 욕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분석 내용,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증학예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는 상황, 현재 국내의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해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신분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부 소수 집단을 위해 새로이 인증학예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나. 경력인정대상기관의 관리

향후 인턴 등의 실무 경력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력인정기관의 선정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현행 경력인정기관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력인정기관의 선정하고 이들 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 지표 구축이 요구된다. 경력인정기관의 선정과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의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경영, 시설, 전시, 사업기획, 교육, 인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가중치를 달리하고 세부 평가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V. 종합결론

본 연구는 현행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서 채택한 학예사제도가 원래 디자인한 목적에 합당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 그 해결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입법평가에서 사후적 입법평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평가는 입법을 한 후에 법이 실제에 얼마나 실효적이고 규범적인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법률의 변경을 도모할 수 있다.

현행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에서 채택한 학예사제도도 이러한 목적에 실현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학예사자격제도에 대해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규제가 된다고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학예사자격제도를 둬으로써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기 어렵게 하고 운영상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원래의 취지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자유롭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지만, 그 질적인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것이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단순히 설립하는 것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전문적인 인력이 양성되어 이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함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할 필요성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현행법이 학예사자격제도를 디자인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문제는 현행의 학예사제도가 그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는 법 시행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본문에서 실시한 바와 같다.

현행 제도는 학예사의 자격을 획득하는데 비합리적인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학계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키는 방법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학예사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준학예사, 정학예사로 분류하되, 준학예사의 경우에 자격시험 합격이라는 요건이외에 경력만을 요구하던 것을 변경하여 자격시험합격과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 분야의 변화하는 지식을 계속 습득하게 하고 경력만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의 현실상 제도의 부실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학예사의 경우는 현재의 자격 취득요건은 업무에 비추어 너무 과다하므로 이를 완화시키고 현행의 대학교육과정의 학위시스템과 연동시켜 합리적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제시한 대안이 대안A이다.

현행 제도는 3급 정학예사의 경우에만 자격 부여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2급과 1급에 대해서는 승급방식만 있다. 본 연구에서는 2급과 1급 정학예사에 대해서 자격 부여 방법을 고안하였다. 현행 대학교육의 학사과정에 비추어 보건대, 학사는 4년, 석사는 2-2년 반, 박사는 3-4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의 연구 경력을 자격부여에 반영하였다. 이로써 1급과 2급 정학예사 자격의 취득을 보다 용하게 할 수 있고 질적 수준도 유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현행 3급 정학예사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석사논문 이외에 연구 논문을 학술지, 학회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없는 자는 자격증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003년 하반기 학예사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바 있

는데, 이는 학예사제도의 취지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정학예사의 경우에 1, 2, 3급으로 급수를 구분하는 방식을 통하여 학예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하되, 각급의 학예사의 경우에는 모두 승급방식과 자격부여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두어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상위 급의 학예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 대학이상의 과정에서 해당분야의 학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분야는 가능한한 연관되는 전공으로 개방하여야 하고 축소하여 폐쇄적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이를 폐쇄적으로 정하면 학예사제도는 해당 학문 분야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만다. 학예사는 여러 전공을 통하여 이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개방적이어야 하고, 승급방식이든 자격부여방식이든 최소한의 요건만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적용한 것이 대안A이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본 바와 같다.

본 연구는 대안A를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시하되, 전문학예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지 않고 이를 제도화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의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는 본 입법평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향후 이 모델은 전문학예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일정한 방향 제시로 역할을 할 것이다.

인정학예사제도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법에서 채택하는 학예사제도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문학예사제도를 채택하여 이 분야를 발전시키는 경우에 이러한 것과 시스템적으로 합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입법평가로서 그에 합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된다. 입법평가의 목적이 규범과 현실간의 규범력을 측정하고 이 양자간의 간극을 해소하는데 있는 만큼 학예사제도의 경우에 이를 보면, 규범과 현실간에 간극이 발생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간극이 현실에 비추어 규범이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는 이를 발굴해낸 것이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있다. 이 학예사자격제도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정책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와도 연관이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 학예사를 두되, 학예사를 두는 목적이 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예사를 통하여 이 분야의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관련학문이 발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색지삽입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의 개요	35
I. 학예사 자격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36
1. 입법평가의 필요성	36
2. 입법평가의 목적	38
II. 입법평가의 대상	40
1.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의 정의	40
2. 학예사 자격제도의 의의	42
3. 입법평가의 대상 법령	44
III. 입법평가 방법론	46
1. 서 설	46
2. 규범적 분석	48
3. 전문가 및 수범자 의견조사	51
4.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 분석	51
제 2 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 학예사제도 관련 법제	57
I. 학예사 자격제도 관련 법제	57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 개관	57
2. 학예사자격제도 관련 법령	78

II.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84
1. 국내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84
2. 박물관유형 및 등록 요건	86
3. 학예사 자격제도 현황	90
4.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교부 현황	112
5.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119
III. 학예사 자격제도 관련 사례	134
1. 프랑스의 학예사 자격제도	134
2. 영국의 박물관전문인 인증제도	138
3. 일본의 학예원 자격제도	139
IV. 국내 유관분야 자격제도 분석	141
1. 사서 자격증	141
2. 무대예술전문인	143
3. 문화재수리기술자	144
4. 문화재수리기능자	145
5. 사회복지사	145
6. 교 사	146
제 3 장 학예사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149
I. 규범론적 분석	149
1. 규범의 연혁적 분석	149
2. 제도의 운영 현황	151
3. 평 가	154
II. 전문가 조사	155

1. 조사 개요	155
2. 학예사 자격 취득 여부 및 의향	159
3. 인턴 등 실무경험	162
4. 현행 학예사 제도에 대한 인식	170
5.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개선	184
제 4 장 대안 및 권고	205
I. 대안 A: 정학예사 승급제도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205
1. 근거 및 의견	205
2. 내용 및 분석	206
II. 대안 B: 전문학예사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209
1. 근거 및 의견	209
2. 내용 및 분석	217
III. 기타의견	230
1. 인증학예사 제도	230
2. 경력인정대상기관의 관리	233
IV. 종합결론	238
참 고 문 헌	243
【부 록】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5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26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274
2. 학예사 자격제도 입법평가에 대한 조사 보고서	307
3. 설문양식	
학예사 자격제도 입법평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지	369

제 1 장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의 개요

문화 관계법 영역에서 입법평가는 사실 현재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문화 관계법의 특성상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규제 중심이 아니라 문화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개입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한 제도의 경우 문화의 내용을 정부가 규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를 통해 문화를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학예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관계법에 있어서도 입법평가는 필요한 것이며 그 시범적 시도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문화 관계법에 있어 입법평가 역시 문화 영역에 관한 특성 외에는 일반적인 입법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갖고 접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럽과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평가의 유형 즉, 사전적 입법평가, 병행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중에 현행 제도의 형성 과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하게 된다. 학예사 제도는 오랜 동안 시행되어 온 법제도이므로 세 번째 모델이 사후적 입법평가에 해당한다.

학예사 제도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는 단순히 경제적 비용이나 효용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학예사 제도를 통해 본래 학예사 제도가 목표하였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났는가? 수범자들이 학예사 제도의 틀 안에서 문화의 창조와 국가적 문화 발전, 국민들의 문화 향유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즉 현재 학예사 제도가 규범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심사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나은 제도의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본 연구의 필요성, 대상 및 범위와 입법평가의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학예사 자격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입법평가의 필요성

학예사 제도에 관한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효과와 운영은 학예사 제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지원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하나의 입법 체계 내에 있어 규제 방식은 단순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 방안은 매우 다양해질 수 있고, 반대로 수범자에게는 그 영역에 있어 부담이 되거나 혹 자유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제도로 개선될 여지도 많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예사 제도를 단순히 규제 영역으로 해석하거나 학예사 그 자체에 한정하여 입법평가를 하는 것은 입법평가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단순히 비용, 편익 분석으로는 짐작하기 어려운 효과와 영향 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문화 관계법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 관계 영역에서 시범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평가보고서의 의의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란 입법 활동에 계획성을 구비하여 법규의 무절제한 증식을 억제하고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솔함을 제거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입법현상을 평가함으로써 과학적인 입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학의 방법론적 연구영역이다.¹⁾ 즉, 입법평가는 법규범에 대한 평가라는 협의의 개념적 요소에 기초하여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와 관련된 요소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평가에 관한 부분을 포괄하고 있

1)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 2002. 3., 20면.

지만, 입법이라는 평가대상의 상이에 따른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입법평가를 법률결과의 예측으로 본다면 구체적인 규범사항에 대하여 법률제정(개정)을 위한 다양한 실태조사 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제정(개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법률제정(개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결정이 되면 입법을 준비하는 기관이 구체적인 법률안 작성을 하여 법률안을 완성하고 이를 법률로써 제정·공포하고,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입법준비단계에서 입법자가 법률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 및 목표가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 적절한 작위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를 위하여 입법평가는 보다 적은 법령, 법률의 높은 효율성과 수용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입법준비단계에서부터 입법과정과 법률제정 이후의 전 과정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각 단계별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즉, 입법평가의 절차적 진행과정은 입법평가를 실행할 기본적인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심사기준의 선정 및 평가의 범위확정으로 구성되는 구상단계와 자료조사와 조사된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실행단계 및 개별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하고 기록하는 평가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표 1> 입법평가의 절차 및 단계²⁾

예비평가단계	구상단계	수행단계	평가단계
· 평가실시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평가 및 예비평가	· 시험영역 확정 · 평가범위 확정 · 비교평가대상과 영역에 구	· 자료조사 및 분석 · 지속적 보고 · 영역 및 분야연구 · 전문가/수범자	· 조사된 자료의 평가 · 법규정에 대한 비교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2) Carl Böhrer/Götz Konzendorf, 박영도/장병일 역, 입법평가입문-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한국법제연구원, 2007, 295면 참조.

예비평가단계	구상단계	수행단계	평가단계
	상단계 · 자료조사방법 선택 · 자료조사 구상 및 조직적 준 비단계	의견조사 · 전문가 워크샵 · 관련자료 조사연구	기록 및 제안 · 규정의 개정·폐지, 표현변경, 존치에 관한 결정

본 연구의 기획은 학예사 제도의 기준과 운영, 그리고 활용에 있어 수범자들의 다양한 불만족과 현실적으로 문화의 창조와 향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학예사 제도는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 왔고, 그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획기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특히 학예사 제도는 문화 관계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로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보고서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학예사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못하고 문제만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쳐 왔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전문가와 수범자들의 학예사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집약하고,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학예사 제도가 문화 영역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이 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입법평가라는 연구방법론이 보다 제도 개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보다 바람직한 제도 설계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2. 입법평가의 목적

학예사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는 사후적 입법평가에 해당한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우리가 법 규정의 의도하는 목표에 충분히 도달했으며, 규범수범자들이 가중된 부담을 충분히 수인했고, 용인했는지, 규

범수범자들이 규정을 충분히 준수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후적 입법평가는 현행 규정의 발생 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서, 현행 규범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근거를 분명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정의 개선 방향(수정, 폐지를 포함)을 근거지우는데 도움을 준다.³⁾

즉 사후적 입법평가의 목적은 ① 법규정의 목표달성을 추후 파악하기 위해서, ② 법규정의 부수적 효과(역효과, 반작용)와 그 밖에 발생한 효과를 인식하기 위해서, ③ 현재의 규정의 개정필요성과 개정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은 명확히 제시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한 정량적 목적에 관한 사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는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그것이 대상 집단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체계적·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성패여부를 측정하여 이의 가치를 판단하는 협의의 입법평가와 성패여부의 측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의 원인규명에 관심을 가지는 광의의 입법평가로 나뉜다. 따라서 입법평가의 목적은 공통적으로 책무성의 확보, 과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지식의 증대 등을 들고 있다.

책무성의 확보란 현대입법의 특성에 따라 입법자에게 입법 활동의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입법실무자들이 본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는지를 판단하자는 것을 말한다. 입법과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이란 입법평가의 목적이 결과검토를 통한 정보의 피드백을 통하여 입법의 운영과 방향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정과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점이 입법평가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

3) 박영도 역, “오스트리아와 인접국가에서의 법률평가와 입법평가-오스트리아 입법학회 2003년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 2008, 54면.

라서 결정과정에 있어서 각 단위의 의사결정권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며 실증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이 입법평가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지식의 증대는 입법평가를 통한 결정의 피드백을 통하여 입법절차 전 단계에 이르는 인과경로를 검토하고 확인하며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입법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들을 기존의 이론과 가설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이 입법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이론의 향상·발전이나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는 좋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후적 입법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본 과제는 ① 제도와 정책 목적 사이의 균형점 발견, ② 법률, 시행령 등에 규정된 정제도의 정비 및 개선, ③ 학예사 제도의 수용성 및 준수성의 정도, ④ 문화 관계법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의 목표 달성 여부, ⑤ 제도의 실효성 및 제도와 현실의 비교, ⑥ 학예사 제도의 활용을 통한 박물관 미술관의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목적 하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입법평가의 대상

1.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의 정의

가. 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의 박물관 전문직 정의

국제박물관협회 정관(ICOM Statutes)의 제2조 2항4)과 국제박물관협회 전문인력윤리강령(ICOM Code of Professional Ethics)의 제1조 3

-
- 4) 2. Professional museum workers include all the personnel of museums or institutions qualifying as museum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in Article 2, para. 1, having received specialized training, or possessing an equivalent practical experience, in any field relevant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a museum, and independent persons respecting the ICOM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nd working for museums as defined above, either in a professional or advisory capacity, but not promoting or dealing with any commercial products and equipment required for museums and services.

항5)에 의하면 “박물관 전문직(museum professional)은 전문화된 기술이나 학술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그에 상응하는 실무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문인력의 윤리 기본 강령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박물관 또는 박물관으로 인정받는 기관의 모든 인력으로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박물관 또는 ICOM 규정으로 박물관으로 인정받는 기관의 종사자로서 박물관 경영과 운영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무적 경험을 갖고 있는 인력, 그리고 ICOM의 박물관 윤리강령을 존중하며 박물관 또는 박물관으로 인정받는 기관을 위해 일하는 독립인력”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된 총회(ICOM, 2004)에서 개정된 박물관 윤리강령(Code of Ethics for Museums)의 박물관 전문인력(museum professional) 정의)

나. 우리나라의 박물관 학예사(전문직)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2월 8일 개정 공포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제1항에 “박물관 및 미술관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학예사는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1.3 The Museum Profession: ICOM defines the members of the museum profession, under Article 2(2) of its Statutes, as follows: “Professional museum personnel include all the personnel of museums or institutions qualifying as museum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in Article 2(1) (as detailed under para. 1.2 above), having received specialised training, or possessing an equivalent practical experience, in any field relevant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a museum and independent persons respecting the ICOM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nd working for museums as defined above, either in a professional or advisory capacity, but not promoting or dealing with any commercial products and equipment required for museums and services.”

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9년 2월 8일) 제6조에 의하면, 학예사는 제4조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자’로 정의해 놓았다. 또한 제 4조 박물관 사업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물의 등록 및 관리, 보존, 조사연구, 전시, 교육, 출판, 교류, 기타 사업 등이다.

- 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 연구
- 박물관 자료의 보존,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관람회, 전시회, 발표회, 감상회, 탐사회, 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 박물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 자료, 미술관 자료, 간행물과 프로그램 및 정보의 교환,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 기타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2. 학예사 자격제도의 의의

가. 학예사자격제도 소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자격제도는 박물관의 전문성 함양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0년부터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2004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학예사자격제도의 내용은 학예사자격증 발급과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 주요 현황 및 내용

학예사자격증 제도는 1·2·3·급 정학예사와 준학예사자격증으로 구분되며 정학예사자격증의 경우는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가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 소정의 경력을 이수하면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정학예사자격증 발급 대상자 이외의 희망자들이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준학예사자격증 제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준학예사자격증은 학사학위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응시자가 매년 12월에 시행하고 있는 준학예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학력에 따라 요구되는 경력을 쌓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다. 경력의 인정은 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전후 관계가 없이 인정된다. 준학예사자격증 취득자 역시 자격증 취득 후 일정경력을 쌓으면 3급 정학예사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학예사자격증 신청자가 필요한 경력을 쌓기 위한 기관의 폭을 넓히고자 시행하고 있는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가기준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모두 포함되며, 등록 사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는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인가하고 있다.

다.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유물의 확보 여부 및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의 의무채용이다.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박물관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매우 설득력이 있으나, 일부 특수박물관의 경우(김치박물관, 스키박물관 등),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중에서 박물관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전문박물관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근무 기피로 인하여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 등 애로사항이 건의되고 있다.

이에,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물관이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인력 요소라는 것으로서, 현재 박물관 운영상 연구, 교육, 전시, 보존·관리, 경영, 홍보 등 각 방면에서 전문성을 지닌 인재가 두루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예사제도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받는 인력은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등 특정 인문학에 편중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 입법평가의 대상 법령

본 연구보고서의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6 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예사는 1급 정(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 3 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학예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9.1.14>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등 급	자 격 요 건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 국립중앙박물관 2. 국공립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공립미술관 5. 국립민속박물관 6.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급 정학예사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준 학예사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비고

1. 삭제<2009.1.14>
2. 실무경력은 재직경력·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한다.
3.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 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Ⅲ. 입법평가 방법론

1. 서 설

학예사 제도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① 현행 규정이 본래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②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중요한 것인가, ③ 학예사 제도로 인해 수범자의 부담이 발생하였는가, ④ 학예사 제도는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⑤ 문화의 지속적인 창달과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등의 문제제기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사후 입법평가는 현행 규정의 성과를 제시해 주고, 현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법을 분명하게 해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 규정의 개정, 새로운 표현방식 또는 폐지의 근거로써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는 의도된 법률의 효과와 결과를 실제적인 조사 자료에 따른 개별적 심사기준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법률의 목적적 당위와 현실적 결과에 대한 비교, 제정이 전과 이후의 규범효과에 대한 비교, 법률의 효력발생 후에 시간흐름의 형식에서 실시하는 사전-사후(Ex-Post)분석, 개별 제도와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연구 등의 비교방식을 근거로 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판단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요청되고 있는 신뢰 가능한 예측을 위하여 …… 이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것이 자신의 입법적 평가활동을 위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판단할 것이 요청된다”⁶⁾고 판시하여 입법자에게서 입법에 대한 사후적 개선의무를 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자가 사후적 개선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다.

학예사 제도에 대한 입법평가는 먼저 학예사 제도의 관련 규정이 연혁적으로 적당한 것이고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하였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학예사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에서의 전문가와 수범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자들 간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그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전문가와 수범자들이 현행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행의 제도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학예사 제도 개선 방안을 두 세가지로 집약하여 보다 나은 대안의 선택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학예사 제도가 문화 관계법의 영역에서 단순히 비용, 편익의 평가 대상으로는 입법평가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관련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수범자들의 의견을 통해 보다 법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는 것이다. 문화 영역에서의 법제도는 다른 영역에서의 규제와 달리 국가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규제라고 인식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것은

6) 박영도, “효과지향적 입법관리”, 『법제(통권 제579호)』, 86면에서 BVerfGE 88, 203, S.263, 재인용.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분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체계 상 다른 영역의 제도와 비교가 쉽지 않고 제도의 운영 효과도 그만큼 주관적으로 판단되어질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전문가 조사나 수범자 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수범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평가 항목으로 선택한 것은 다음과 같다.

2. 규범적 분석

학예사제도 관련 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에 있어서 규범적 분석은 규범의 연혁적 분석과 규범의 체계성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규범의 연혁적 분석은 학예사 관련 법제가 만들어질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배경 및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현재시점에서 규제법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사후적 입법평가에서 주요한 분석방법이 된다. 규범의 연혁적 분석은 사법적 판단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⁷⁾ 규범의 연혁적 분석은 현 시점에서 사회현실을 규율하고 있는 법규범이 규범의 탄생 시와 같은 가치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7)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어떤 사안이 후자와 같은 태두리에 들어가는가에 관하여는 본래적으로 규범통제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면서 직접 그 결정주문에서 밝혀야 할 것이나, 직접 밝힌 바 없으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 하는가의 여부는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법률의 연혁·성질·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적·합목적적으로 정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동 결정은 판단의 기준으로서 규범의 연혁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세한 것은 1993. 5. 13. 92헌가10등 사건, 판례집 5-1, 240-252면; 헌재 2001.12.20, 2001헌바7, 판례집 제13권 2집, 859면; 헌재 2000.08.31, 2000헌바6, 공보 제49호, 746면 참조.

규범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려면 우선적으로 규율대상인 사회의 현실과 입법사안을 정확히 반영하는 내용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규범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입법과 관련하여 각종 통계 및 실태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의 작업 등을 통하여 규범의 준수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규범의 개정으로 연결되거나 규범의 개정과정에서 이와 같은 노력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자는 입법에 있어서 입법의 준수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규범은 평균인이 준수할 수 있는 정도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너무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입법은 전혀 실효성을 갖지 못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⁸⁾

규범에 대한 연혁적 분석을 통하여 학예사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 목적하였던 바를 확인하고 이를 현 시점에서 분석하여 봄으로써 규제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학예사 제도의 규범체계성 분석 또는 규범의 체계 정합성 분석은 관련 법제 전반이 체계 적합성을 갖는가의 검토이다. 물론 학예사 제도는 단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거의 내용의 전부이기 때문에 규범체계성 분석이 다른 규제 법률과 달리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예사 제도를 통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지원할 경우 학예사 제도는 보다 체계정합성을 가져야 지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타당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체계적합성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체계적합성(Systemgemäßheit) 또는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은 입법기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으로서 법규범 상호간에는 규범 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 내지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따르면 개별 법률규정이나 개별법은 다른 법률규정 및 법률의 관계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되어야

8)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통권 제258호)』, 2006, 83-84면.

한다. 따라서 어떠한 법령이 법체계 내에서 모순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입법자는 입법의 기능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체계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법령 상호간의 모순과 저촉을 배제하여야 하며 법령체계 가운데 조화와 균형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⁹⁾ 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의 규범 상호간에는 그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모순이 없어, 결국 모든 규정의 내용과 체계가 상호 모순과 갈등 없이 그 본래의 입법목적의 실현에 합치되고 이바지 하는 것을 말한다”¹⁰⁾고 설명하고 있으며,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수평적 관계이건 수직적 관계이건)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Verfassungspostulat)이다. 즉 이는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규범 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고 판시하여 체계적 합성이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향후 학예사 제도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의 다양한 지원 근거로 활용될 경우 규제의 성격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체계정합성을 전제로 법제의 합리적 개선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9) 홍완식, 앞의 글(2006), 86면.

10) 헌재 1995.07.21, 94헌마136, 판례집 제7권 2집, 192면.

11) 헌재 2004.11.25, 2002헌바66, 판례집 제16권 2집 하, 333면; 헌재 2005.06.30, 2004헌바40, 판례집 제17권 1집, 962-963면.

해야 할 것이다.

3. 전문가 및 수범자 의견조사

학예사 제도와 관련한 입법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구 방법은 전문가 및 수범자에 대한 의견조사이다. 지원의 주체가 되는 담당공무원과, 실제로 제도의 영향을 받는 학예사 혹은 학예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학예사 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학계의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규범 자체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학예사 제도의 운영 현실과 그로 인한 제도의 효과, 제도의 활용 방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제도의 기준을 말하는데 균형점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는다. 특히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비용, 편익 또는 효과 등은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갖고 있어 제도의 운영이 규제가 되고 있는지, 적절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대답은 사실상 의견조사를 토대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통하여 제도의 도입 목적 달성 여부, 목적에 적합한 제도 설계 등 적절한 대안의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면접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문가와 수범자들의 의견을 나누거나 실제 학예사와 관련 학자들의 의견을 대조 검토한다면, 이들 간의 인식의 차이를 점검하게 되고 보다 현실에 적합한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4.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체크 항목에 대한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을 하는 것이 문화 관계법에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또한

시간적·인력적 제약에 의하여 불가능하여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비록 문화 관계법의 특성과 시간적·인력적 제약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직접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을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입법대안의 제시 및 입법자료로서 보다 폭넓은 활용을 위하여 이와 같은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물이 가지는 역할이 크므로 향후 입법평가 보고서에서는 그 사안에 따라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추후 문화 관계 영역에서도 비용·편익, 비용·효과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EU의 지침을 수정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후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EU에서 주로 사용되는 Impact Assessment Guidelines(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영향분석의 기초로 주로 사용하는 질문 중에서 학예사 제도 넓게는 문화 관련 영역의 법제도에 이용 가능한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에 관련된 질문을 재구성 또는 보완하고자 하였다.¹²⁾

<표 2> 경제적 영향

영 향	주 요 질 문
경쟁력, 무역 및 투자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들을 비교해서 수범자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컨대 학예사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관련 영역의 종사자들 간에 어떤 경쟁력을 갖게 되는가? • 대안들이 문화활동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떤 투자 흐름을 자극하는가? • 현행 제도나 대안이 문화 영역에서의 필요한 수요와 공급 또는 그 관계를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12) 입법평가의 내용에 관한 영향분석지침은 EU의 Impact Assessment Guidelines(영향평가지침, 2005)을 본 보고서의 입법평가지침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임.

영 향	주 요 질 문
시장에서의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이 문화상품으로서 시장의 기능과 경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컨대, 일반 시민의 문화 향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축소시키는가, 현재 기득권자들에게만 어떤 독점력을 발생시키지는 않는가? 신규 진입자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는가?
기업의 행정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및 미술관에게 추가적인 추가적인 행정적 요구를 부과하거나 행정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는가? • 이러한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중소 규모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가중되는가?
수범자와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이 앞으로 학예사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비용 지출을 많이 하는가? • 현행 학예사들이 누리고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 일반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경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공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이 장단기적으로 공공 박물관과 미술관의 예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대안의 실행을 위하여 현존하는 공적 기관의 재구축 및 신설이 요구되는가?
거시경제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의 전반적인 결과가 경제발전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표 3> 사회적 영향

영 향	주 요 질 문 들
작업의 질과 관련한 기준과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이 학예사의 수준과 업무의 질에 영향을 주는가? • 대안이 학예사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혹은 현직 학예사들에게 업무상 또는 지속적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가? • 학예사를 준비하는 자들의 일자리 보호에 영향을 주는가? • 학예사의 근로의 질과 의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가?

제 1 장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의 개요

영 향	주 요 질 문 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예사 제도는 적당한 노력으로 취득 가능하고 유지할 필요성이 충족되는가? • 대안이 학예사 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거나 반대로 학예사 제도의 운영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닌가?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포섭과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다 큰 불평등/평등을 가져오는가? • 대안이 서비스 또는 문화에 시민의 동등한 접근에 영향을 주는가? • 서비스장소(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이용 또는 보편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서비스의 접근에 영향을 주는가? • 대안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일반인이 더 나은 정보, 문화 향유를 접하기 쉽게 하는가? • 대안이 다른 이들보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 기업, 지역, 가장 민감하거나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대우와 기회의 평등, 비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이 학예사를 지망하는 자들에게 평등한 대우와 기회에 영향을 주는가? • 남녀평등에 영향을 주는가?
거버넌스, 참여, 양질의 행정, 공정한 재판, 미디어 및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이 조약 및 새로운 거버넌스의 접근에서 제시된 거버넌스의 과제에 이해관계자의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 주관자와 이해관계자 전부를 그들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동등한 토대에서 다루는가? 대안이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그들이 권한을 가지는 범위에서 사회적 당사자들의 자치권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단체협상을 맺거나 집단적인 행위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가? • 제안된 조치의 이행에 공적 기관 및 행정부문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그들의 책임성에 관하여 영향을 주는가? •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 개인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가? • 대안이 특별한 문제에 대하여 공중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가? 그것이 공중의 정보접근에 영향을 미치는가? • 대안이 미디어, 미디어 다양성 및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가?

III. 입법평가 방법론

영 향	주 요 질 문 들
공중위생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평균수명, 사망률과 발병률, 생존률을 포함한 개인/인구의 위생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가(예컨대, 작업환경, 소득, 교육, 구직, 영양)?
사회적 보호 및 교육체계의 효과에 대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이 문화적 서비스의 질과 접근에 영향을 주는가? • 학예사의 교육이나 이동성에 영향을 주는가? • 대안이 개인의 공교육 및 사교육,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주는가? •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 국경지역의 협력 및 국경이동의 알선에 영향을 미치는가? • 대안이 제정/조직/사회, 위생 및 교육체계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주는가(직업교육을 포함)? • 대학 및 학문의 자유/자아실현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 2 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 학예사제도 관련 법제

I. 학예사 자격제도 관련 법제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 개관

가. 박물관¹³⁾의 이해

1) 목 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¹⁴⁾

현행 법령은 이 정의를 통해 모든 박물관이 대외적으로 공공성과 문화예술영역의 주요 기반시설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 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고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관행에 의한 운영 및 파행 등으로 실제 박물관의 실정과는 무관한 오해를 받아 설립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히 사립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향후 비영리 재단화 또는 비영리 단체화 등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공공법인화를 완료한 사립 박물관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세제지원방안이나 운영지원을 통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13) 미술관은 통칭 박물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됨에 따라 이후 부터는 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한다.

1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

2) 정 의

국제박물관협회¹⁵⁾(ICOM :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에서는 박물관의 정의를 “박물관은 인류와 인류 환경의 물적 증거를 연구·교육·향유할 목적으로 이를 수집·보존·조사연구·상호교류(교육·전시)하는 비영리적이며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대중에게 개방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물관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박물관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며 공공을 위해 존재하는 비영리적이며 항구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정의에 교육기능이 추가된 것은 최근의 개정(일부개정 2007.7.27. 법률 제8556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개정 법률의 주요 특징에는 문화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 및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의 및 사업범위에 교육기능을 명시하고,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의 허가요건 중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운용될 여지가 있는 공공 이익 증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전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3호)과 시행규칙의 정비가 이루어져 조문번호의 수정과 별표 및 별지양식의 변화가 있었다. 이번 정비 작업에는 알기 쉬운 용어로의 대체와 함께 각종 양식에 불필요한 남녀성별 표기란이 있던 것을 삭제하는 등의 변화가 반영되었다.

15) 국제박물관협회의회는 전 세계의 자연과 문화, 현재와 미래, 유형과 무형의 유산을 보존, 지속, 소통하는데 헌신하는 박물관과 박물관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145개 이상의 국가에서 2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국제 네트워크이다. ICOM은 1946년에 설립된 비정부·비영리 기구로서 UNESCO와는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UN 경제사회이사회와는 자문 관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개정도 이루어졌다. 2007년 4월 11일에 이루어진 전면개정(법률 제8347호)에서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의 지침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사용하는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¹⁶⁾

그에 따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에 대해서는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무형적 증거물(또는 기록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⁷⁾

한편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

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1.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3내지4.

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¹⁸⁾

이에 따른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⁹⁾

박물관 자료의 정의에 무형적 증거물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는 문화콘텐츠의 원형보존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3D 등의 첨단기술을 동원한 디지털 복원 등의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입장이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만큼 박물관자료의 정의에서도 무형적 결과물(디지털 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추가하였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박물관 자료’의 정의부분에서부터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을 “인간과 환경의 유·무형적 증거물(또는 기록물)” 등으로 개정 이후에 거쳐야 할 작업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의 종별·유형별 구분기준에도 특수박물관 또는 디지털유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사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 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 ②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 ③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 ④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2.

1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4.

- 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 ⑤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 ⑥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 ⑦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²⁰⁾

<표 4> 박물관의 사업내용과 기능의 이해²¹⁾

	수집	조사	전시	교육	공공	관리
보존	보존과학 활동	수집정책 및 기획	전시보존 환경	보존과학 교육		수장고 환경 보전방재 관리
연구	조사발굴 학예연구 지원	연구정책 연구평가	전시기획 전시자료 개발	교육활동 지원	미술품 감정	연구환경 관리 조직관리
전시 보급	전시자원의 수요공급 관계	전시관람객 분석 피드백	전시개발 전시평가 소장자료의 교환및대여	전시와 교육 활동의 연계	뮤지엄숍 상품개발 복제품개발 지원	보안관리
특별 활동	교육활동 지원 소장품의 제공	전문가 재교육	교육자료의 공유	교육정책 수장자료의 대여	이벤트 기획	활동환경 관리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21) 문화체육부, 21세기 박물관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문화체육부(1997). 123쪽 참조.

제 2 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 학예사제도 관련 법제

	수집	조사	전시	교육	공공	관리
공공 봉사	소장자료 제공	외래연구 지원	전신, 전달해석	전시홍보	관람객 서비스의 평가 진진적 모색 공공봉사의 질 유지	이용자 유치
경영	수집예산 수집환경 보전	연구성과의 사회화	전시섭외	정규교육 섭외 사회교육 섭외	관객유치 수익성 검토	수익사업

4) 적용범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적용되는 범위에는 다음과 같이 예시된 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²²⁾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설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박물관의 각 사업내용에 의한 것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수족관 중에서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²³⁾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

2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

5) 구 분

현행 법령에서 박물관을 나누는 기준은 그 설립과 운영의 주체에 따른 구분이며, 크게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사립 박물관 및 대학 박물관으로 나누고 있다.²⁴⁾

실무적으로는 박물관의 등록을 위해 규모 및 전시물의 유형에 따라 제1종 박물관과 제2종 박물관 및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²⁵⁾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최근에는 미디어박물관, 콘텐츠박물관 등 특수박물관을 새로운 유형으로 인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으며, 사회의 다원성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 ①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 ②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 ③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 ④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이러한 분류는 운영 또는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로서 독립법인 형태의 박물관²⁶⁾은 국립 박물관으로 볼 수 있고, 사립법인 형태의 박물관은 사립 박물관, 기업이 모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박물관 역시 사립 박물관으로 분류된다. 종교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사립 박물관으로 분류된다.

2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2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참조.

26)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소장품의 전시방법에 의한 분류로 실내전시형의 전통박물관과 실외전시형의 야외전시관(박물관), 디지털 시대의 주요유형인 사이버 박물관 등의 구분도 있다.

6) 기부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거주자가 지출한 공제대상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 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 중 박물관과 관련된 기부금에는 사실상 지정기부금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립 박물관이 영세하고 자비 등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하루빨리 특례기부금화 내지 법정기부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표 5> 기부금의 종류 및 관련법규

구 분	종 류	한도액 및 근거조항
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소득금액의 100% ·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
특례기부금	문예진흥기금 출연 기부금 병원 등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기부금	소득금액의 50% (문예진흥기금 출연시 개인 100%, 법인 75%)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구 분	종 류	한도액 및 근거조항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부금 : 기부금의 필요경비 손금불산입 (대상은 등록 박물관, 미술관)	개인: 소득금액의 10% 법인: 5% ·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1항

현행 법령에서는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다.”²⁷⁾라고 하여 기부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우선에 의하여 실제 기부에는 제한이 많아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규정이라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실정이다.

7) 진흥시책의 수립과 시행

현행 법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²⁸⁾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공립 및 사립 박물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정의 실체는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박물관의 진흥시책의 수립과 시행의 무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와 노력

2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2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등이 없으면 박물관의 육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도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가 제정되고 구체적인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좋은 수범사례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나. 국립·공립·대학박물관

1) 국립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지방 박물관을 둘 수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의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을 둔다.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은 법이 정하는 고유사업 외에도 다음 각 호²⁹⁾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①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 ②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 ③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 ④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 ⑤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2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한편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³⁰⁾ 이 때 필요한 서류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① 사업계획서
- ②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 ③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내역서
- ④ 조직 및 정원

2) 국립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법에서 국립 박물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을 칭하는 것으로, 국고 보조 또는 시도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의해 설립·운영되거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이 되는 시립 박물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공익성과 공공성을 달성한 시설로 볼 수 있어 공익시설로서의 세제혜택 등을 받기가 수월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의 보조도 받을 수 있다.

국립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³¹⁾고 규정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국립 박물관의 설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립 박물관의 설립시와 동일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제1항.

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3) 대학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³²⁾

또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 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없어 대학 박물관이 대학의 주요 시설로서 평가받기는 어려운 만큼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외에도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으나 위와 같은 현실에서는 원론적인 설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대학 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의 기본 사업 외에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다음과 같은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 ①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 자료의 수집·정리·관리·보존 및 전시
- ②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 ③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
- ④ 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 ⑤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협조
-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 ⑦ 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4조.

대학 박물관의 설립에 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의 협의 대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비취볼 때, 이는 법 취지상 입법미비라기보다 교육법상의 교육지원시설로서의 역할이 우선인 만큼 대학 당국의 자율적인 의지가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만 등록신청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등록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서류와 방법 등은 후술하는 사립 박물관의 등록제도와 동일하다.

다. 사립 박물관

1) 설립과 육성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³³⁾ 과거 법의 개정 이전에는 사립 박물관의 설립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진흥법의 취지상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즉 사립 박물관은 법의 취지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는 전제하에서는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하며 그 주체도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를 구별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른 사립 박물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³⁴⁾

2) 설립계획 승인신청 및 협의

사립 박물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시도지사는 설립계획의 승인을 위해 다음

3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제1항.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제3항.

과 같은 서류를 제출받아 승인신청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① 사업계획서
- ②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 ③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 ④ 위치도
- ⑤ 개략설계도
- ⑥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³⁵⁾

또한 그 설립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설립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설립과 변경승인 등의 절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상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는,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요청시 승인신청서류와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를 완료 한 것으로 본다.³⁶⁾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3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 ②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③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 ④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 ⑤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 ⑥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위와 같은 협의에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 때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그 허가·인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으며,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때 또는 폐관 신고를 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인가 및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한편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설립계획 중 다음의 내용을 말한다.

- ① 박물관·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유형
- ②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 ③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收藏庫) 시설의 위치 및 면적
- ④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면적(해당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⑤ 사업시행기간(해당 사업시행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설립계획의 승인이후라도 시·도지사는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구체적으로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⁷⁾

그리고 위와 같은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³⁸⁾

3) 기타의 방법에 의한 설립

사립 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부지나 건물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 공간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³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위와 같은 근거에 따른 유휴 공간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는 데 있어 융통성 있는 방법이 열려 있다.

최근 들어 인구의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처리에 고민 중인 폐교를 활용한 박물관, 전시관 등이 생겨나고 좋은 반응을 얻어

3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15조.

3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제5항.

3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9조.

성공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건에 따라 이 규정의 용도가 매우 유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정과 단체장의 박물관 진흥 및 육성에 관한 태도가 중요한 만큼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 등록제도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⁴⁰⁾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구비서류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⁴¹⁾를 준비하면 된다.

- ① 시설명세서
- ②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③ 학예사 명단
- ④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때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은 옥외간판 등에 “○○시·도 등록 제○○호”를 표시하는 방법 등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절차와 같이 등록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⁴²⁾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4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4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령 제8조.

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야 한다.⁴³⁾

- ① 등록증(박물관·미술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 ②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이처럼 사립 박물관의 경우 설립협약과 등록제도 등을 법제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육성·진흥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들어 등록을 유도하고 있긴 하지만, 진흥법 취지상 등록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제도에 대한 홍보 미비 또는 운영 등에 대한 규제의 우려, 궁극적으로는 등록 박물관으로서의 혜택에 매력을 느끼지 못해 미등록 박물관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박물관에 대한 진흥시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당위성이 부각된다.

박물관의 등록을 강제해서는 안 되지만 등록하는 경우의 혜택과 당위성이 보다 현실화된다면 등록을 주저할 이유가 없고, 추가로 등록 박물관의 협력망과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과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정비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정비 연혁

(1) 일부개정 2007.7.27 법률 제8556호

문화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 및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의 및 사업범위에 교육기능을 명

4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시하고,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의 허가요건 중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운용될 여지가 있는 공공 이익 증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전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3호)과 시행규칙의 정비가 이루어져 조문번호의 수정과 별표 및 별지양식의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는 알기 쉬운 용어로의 대체와 함께 각종 양식에 불필요한 남녀성별 표기란 이 있던 것을 삭제하는 등의 변화가 반영되었다.

(2)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7호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3)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작업에 따라 법령명의 변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 기부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기부금품”에는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포함한다. 유물과 골동품을 비롯하여 미술품, 또는 박물관의 건립을 위한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기부금품의 대상이며 이러한 물품으로 기증하게 되면, 시가 등을 기준하여 실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⁴⁴⁾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②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④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거주자가 지출한 공제대상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

4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1.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 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 중 박물관과 관련된 기부금에는 사실상 지정기부금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립 박물관이 영세하고 자비 등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하루빨리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2006년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나 사립 박물관의 공공성 및 공익성이 대체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인식에 따라 형평성의 원칙 등을 이유로 부처협의에서 난항을 거듭하여 현재에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본안심사를 통과하는 것도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⁴⁵⁾

사립 박물관을 포함한 박물관 등의 기부금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대안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박물관의 비영리 법인화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세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세금 제도가 틀을 잡기 시작한 1900년대 초반부터 비영리적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비영리 조직의 활동을 지원해왔다. 실제로 미국에서 개인이나 임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은 찾아보기 힘들며, 일반적으로 비영리 법인(Nonprofit Corporation)의 형태를 갖추고 박물관 내규와 지배구조를 명기한 내규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45) 한편 의원입법은 위와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노력의 반영으로 2007년 8월에 재정경제부가 입안한 조세법 개정안에서는 박물관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될 경우 11월경부터는 박물관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 구조는 박물관 운영 체계를 규정할 뿐 아니라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세제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인 것이다.

2. 학예사자격제도 관련 법령

가. 정학예사제도

학예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소장품)와 관련 있는 학문 분야의 전문가로서, 박물관 소장품과 대여 전시물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과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작품의 취득과 처분, 분류, 진위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소장품에 대한 연구와 출판, 교육에도 관여할 수 있다. 물론 박물관의 경영이나 행정 업무, 전시기획, 과학적 보존의 처리까지도 담당할 수 있다.⁴⁶⁾ 즉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사업을 담당하는 자이다.⁴⁷⁾

그러므로 박물관 전문가로서의 학예사는 학예사(Curator)라는 고유의 명칭 이외에 교육담당자(Educator), 기록담당자(Registra), 보존처리사(Conservator), 전시기획자(Exhibition Designer), 소장품관리자(Collection Manager)로 세분되기도 하며 이 모두를 통칭하여 학예 연구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예사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다만 이때의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만, 별표에서 표현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

46) 한편 학계에서는 박물관의 각종 소장품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소유자만을 지칭하는 ‘학예사(큐레이터)’를 박물관 경영, 교육, 홍보, 보존, 전시디자인 등 모든 관련직을 통칭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고고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역사학 등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인력인 전문학예사와 박물관학만 공부한 인력인 일반학예사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는 그러잖아도 수가 적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실정에 전문인력마저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박물관인력에까지 진입장벽을 세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우려가 컸던 때문인 듯하다.

4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런 분야”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실정(박물관 전공환경의 희소성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투명하여 오히려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진입장벽으로 존재하는 근거가 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고, 그 기준으로 제시된 비고란의 1항규정도 여전히 명확하지 못해 2007년 7월, 학예사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예규인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관련 분야’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이제는 전공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학예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완화되었다. 물론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아래의 표에서 제시하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⁴⁸⁾

<표 6> 학예사의 등급별 자격요건⁴⁹⁾

등 급	자 격 요 건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경력 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 국립중앙박물관 2. 국공립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공립미술관 5. 국립민속박물관 6.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8) 보다 구체적인 자격인정기준은 후술하는 “학예사운영위원회” 편에 기술하기로 한다.

4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 2 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 학예사제도 관련 법제

등 급	자 격 요 건
3급 정학예사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① 실무경력은 재직경력·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한다.
- ②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준학예사제도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정학예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준학예사자격을 얻어야 하는 데 준학예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⁵⁰⁾

5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시험의 일시·장소·과목·방법 및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하고 시험 과목은 총 4과목으로서 다음의 <표 7>과 같으며,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로 정하는 절대평가방식을 취하고 있다.⁵¹⁾

<표 7> 준학예사 시험과목

공통 과목	박물관학 및 외국어 (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선택 과목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 중 2과목 선택

다.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으로 명시된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취득신청의 접수와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준학예사 시험의 공고 및 실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하고 있다.⁵²⁾

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5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

5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5항.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⁵³⁾고 하여 학예사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국립중앙박물관이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⁵⁴⁾을 두어 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준학예사시험의 기본 방향 수립
- ②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 요건의 심사
- ③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 ④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의 인정
- ⑤ 기타 위원장 또는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학예사 자격인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별표1과 중복부분은 생략함)⁵⁵⁾

3급 정학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및 등록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한다. ▪ 실무경력의 경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인턴쉽, 학예분야 자원봉사 등의 경력을 인정한다. ▪ 박물관·미술관이 아닌 행정관청, 문화재발굴법인 등에서의 실무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에 준하는 박물관·미술관 시설을 갖춘 행정
---------	--

5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54)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55)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p>관청의 경우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실무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 6시)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1년을 총 2,000 시간으로 한다. ▪ 실무경력 시기는 학위 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이 없다. ▪ 신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등록일부터 실무경력을 산정한다. ▪ 국공립 및 사립,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장명의로의 실무경력 증명서가 인정된다.
<p>준학예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및 등록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 경력으로 인정한다. ▪ 실무경력의 경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인턴십, 학예분야 자원봉사 등의 경력을 인정한다. ▪ 박물관·미술관이 아닌 행정관청, 문화재발굴법인 등에서의 실무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에 준하는 박물관·미술관 시설을 갖춘 행정관청의 경우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실무경력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 6시)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1년을 총 1,000 시간으로 한다. ▪ 실무경력시기는 학위 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이 없다. ▪ 신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등록일부터 실무경력을 산정한다. ▪ 국공립 및 사립,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장명의로의 실무경력 증명서가 인정된다.
<p>경력인정 대상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적 경력인정대상기관이다. ▪ 사립·대학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심의하여 실무 경력을 인정한다. ▪ 사립일 경우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

	<p>의 관리실태 및 업무 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은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관장 포함)이 2인 이상 있어야 한다. ▪ 3급 정학예사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2명, 준학예사는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1명씩을 인정한다. ▪ 소장품 도록 또는 특별전시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전시 여부를 확인한다.
--	--

II.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1. 국내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8조(보고)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전국 국·공·사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파악의 기준은 국·공립은 등록과 관계없이 운영중인 박물관이고 사립·대학박물관은 등록된 박물관이다.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에 579개의 박물관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립이 27개, 공립이 255개, 사립이 215개 마지막으로 대학이 25개관에 이르고 있다.

<표 8> 전국 박물관 현황

(2008.12.31 기준)

구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소계
박물관	27	255	215	82	579

※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

※ 박물관통계는 국립·공립 박물관·미술관 및 등록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만 해당되며, 과학관육성법 제1조(목적)의 규정에 의거 건립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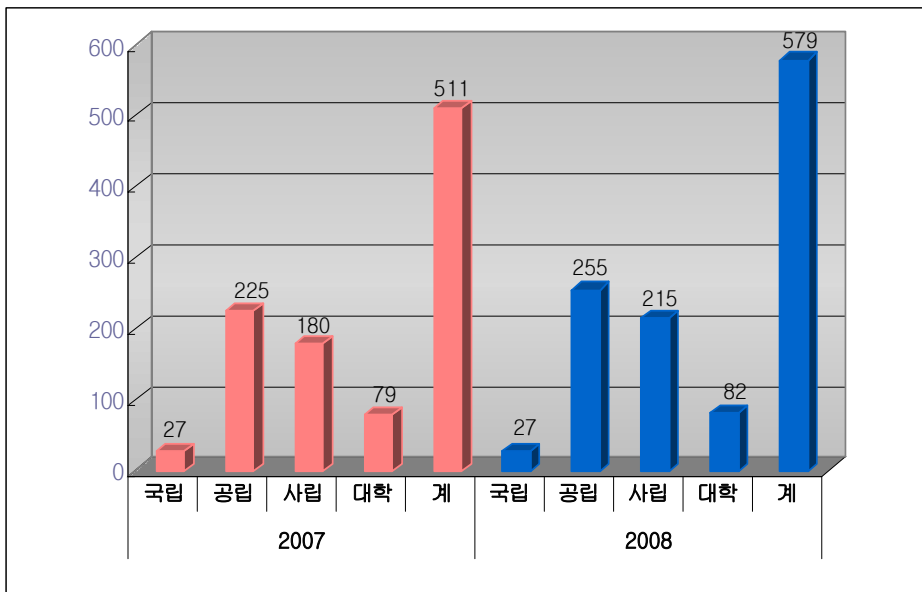
과학관은 제외됨.

- ※ 한국은행화폐금융박물관은 한국은행법 제1조(목적)의 규정에 따른 특수 무자본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은행에 속한 박물관임.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의 규정에 따라 사립박물관으로 구분함.

2007년 대비 2008년 박물관 현황을 보면 국립이 225관에서 255관으로, 사립이 180관에서 215관으로 증가했으며 대학박물관은 79관에서 82관으로 증가 하였다.

박물관 1관 당 총 인구수 대비 박물관 수를 비교해 보면 박물관 1관 당 인구수가 2007년 93,933명 정도로 파악되었으나 2008년은 83,949명으로 조사되어 박물관이 많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 1관 당 2~5만 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문화시설 확보 면에서 선진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2007/2008 전국 국·공·사립·대학박물관 현황 비교



2. 박물관유형 및 등록 요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전부 개정 2007. 9.10 대통령령 제20253호) 제8조에 의거,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서 작성, 시·도지사 접수, 현지 조사 및 등록 심의, 결과 통보, 관보 게재 순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신청서 작성 시 제출 서류에는 등록신청서, 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목록(사진 자료 첨부), 학예사의 명단(이력서 별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법 제10조에 의거, 박물관 유형별 등록요건을 살펴보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 자료,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표 9>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학예사	시설
종합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인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당해 전시실 2. 수장고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 장치
전문박물관	100점 이상	1인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II.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유 형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학예사	시 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 장치
미술관	100점 이상	1인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 장치
동물원	100종 이상	1인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사육 및 수용 시설 4. 동물진료 및 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 및 오수 처리시설
식물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내 : 100종 이상 2. 야외 : 200종 이상 	1인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 4. 묘포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인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표 10>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학예사	시 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인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박물관의 경우 각 분야별 1인 이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1종 및 2종 박물관 및 미술관의 학예사 채용 기준이 1인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소장 자료 및 시설 규모로 박물관을 구분했을 뿐 이러한 소장품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적정 학예사의 규모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

박물관과는 달리 도서관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적 33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서직원 3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했으며,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박물관의 경우에도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과 같이 향후 박물관 소장품과 시설의 규모를 평가 기준으로 현행 등록 요건에 적정 인원의 학예사를 의무적으로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을 시행할 경우, 등록박물관의 수가 감소하거나, 소장품과 시설의 규모를 축소시켜 등록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표 11> 도서관의 구분 및 사서 배치 기준

구분	배치 기준
공공도서관(사립·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
문고	공립문고에는 사서직원을 1명이상 둘 수 있다.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 도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각장애인을 봉사 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에는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둔다.
대학도서관	당해 대학의 학생수가 1천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인을 두되, 그 학생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학생 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학교 도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에는 36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겸임사서교사(사서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급이나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교사(사서) 중 1인을 두며, 36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24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두며, 24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2인을 두거나 사서교사와 겸임사서 교사 각 1인 또는 사서 교사와 실기 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3. 학예사 자격제도 현황

가. 박물관의 정의 및 사업범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개념과 이들 기관의 사업 영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국제박물관협의회 정관(ICOM Statutes)⁵⁶⁾ 제2조에 규정된 박물관의 정의 및 우리나라의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⁵⁷⁾에 기술된 박물관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국제박물관협의회 정관과 박물관을 위한 국제박물관협의회 윤리강령 제2조(정의)에 규정된 박물관 정의 및 국제박물관협의회 정관 제2조 1항에 명시된 박물관에 부합하는 기관

“박물관은 공중에 개방되고,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한다.”

(i)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관한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교류하는 자연과 고고학, 민족지의 기념물과 유적지, 그리고 박물관 성격의 역사적 기념물과 유적지; (ii) 동·식물원과 수족관, 동식물사육장처럼 동물과 식물의 수집품을 갖고 있고 살아 있는 표본을 전시하는 기관; (iii) 과학관과 천문관; (iv) 비영리의 미술 전시실(galleries); (v) 자연보존지역; (vi) 규정에서 명시한 정의에 준하는 박물관에 책임을 진 국제, 국가, 지역 또는 지방 박물관 조직 및 부처(ministries&departments)의 공공기관; (vii) 박물관과 박물관학에 관련된 보존, 연구, 교육, 훈련, 정보관리,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의 기관과 조직; (viii) 유·무형의 유산 자원(살아 있는 유산과 디지털 창조적인 활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 운영을 도모하는 문화센터와 그 밖의 실재(entities); (ix)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뒤 박물관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갖고 있거나 또

56) 국제간 비정부기구인 국제박물관협의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에는 기본 규약으로 국제박물관협의회 정관(ICOM Statutes)이 있다. 총 30조로 이루어진 이 현행 정관은 1989년 제16차 총회(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정되었으며, 1995년 18차 총회(노르웨이 스타벵거)와 2001년 제20차 총회(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수정되었다.

57) 일부개정 2007.7.27 법률 제8556호.

는 박물관학적인 연구,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해서 박물관과 박물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집행위원회 같은 그 밖의 기관”을 박물관에 부합하는 기관

<표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일부개정 2007.7.27 법률 제8556호)
제2조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정의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에서는 박물관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정의해 놓았다.

<표 1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에 기술된 박물관의 사업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이 법은 제5조(적용 범위)에 의거,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

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나. 박물관 학예사 및 박물관 전문인력의 정의 및 범위

1) 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정의

<표 15> 국제박물관협회의 박물관 전문직에 대한 정의

“박물관 전문직(museum professional)은 전문화된 기술이나 학술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그에 상응하는 실무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문인력의 윤리 기본 강령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박물관 또는 박물관으로 인정받는 기관의 모든 인력으로 구성된다.”

국제박물관협회 정관(ICOM Statutes)의 제2조 2항⁵⁸⁾과 국제박물관협회 전문인력윤리강령(ICOM Code of Professional Ethics)의 제1조 3항⁵⁹⁾

“박물관 또는 ICOM 규정으로 박물관으로 인정받는 기관의 종사자로서 박물관 경영과 운영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무적 경험을 갖고 있는 인력, 그리고 ICOM의 박물관 윤리강령을 존중하며 박물관 또는 박물관으로 인정받는 기관을 위해 일하는 독립인력”

(국제박물관협회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된 총회(ICOM, 2004)에서 개정된 박물관 윤리강령(Code of Ethics for Museums)의 박물관 전문인력(museum professional) 정의)

58) 2. Professional museum workers include all the personnel of museums or institutions qualifying as museum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in Article 2, para. 1, having received specialized training, or possessing an equivalent practical experience, in any field relevant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a museum, and independent persons respecting the ICOM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nd working for museums as defined above, either in a professional or advisory capacity, but not promoting or dealing with any commercial products and equipment required for museums and services.

59) 1.3 The Museum Profession: ICOM defines the members of the museum profession, under Article 2(2) of its Statutes, as follows: “Professional museum personnel include all the personnel of museums or institutions qualifying as museums in accordance with

2) 국제박물관협의회 국제인력훈련위원회(ICTOP)의 정의

한편 국제박물관협의회 국제인력훈련위원회(ICTOP: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Training of Personnel)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박물관 인력(museum personnel) 또는 박물관 직원(museum staff)이라는 용어가 박물관 종사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1974년 6월에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1차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국제박물관협의회 정관이 채택되면서 박물관 전문직(museum professional)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이후 1986년 11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15차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국제박물관협의회 전문 인력 윤리강령이 채택되면서 박물관 전문직이라는 용어로 본격적으로 통용되었다.

3) 미국의 박물관 전문직에 대한 범위 및 규정

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1989)의 박물관학 교과과정 위원회는 박물관 전문직 종사자의 직렬을 다음과 같이 1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업무내용과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또한 이후 1996년에 영국에서 발간된 ‘직장으로서의 박물관과 박물관 경력 설계(Museums: A place to work and planning career, 1996)’에서는 박물관의 직종을 29개로 상세 분류한바 있다.

미국박물관협회의 박물관 전문직 종사자 직렬은 아래와 같다.

the definition in Article 2(1) (as detailed under para. 1.2 above), having received specialised training, or possessing an equivalent practical experience, in any field relevant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a museum and independent persons respecting the ICOM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nd working for museums as defined above, either in a professional or advisory capacity, but not promoting or dealing with any commercial products and equipment required for museums and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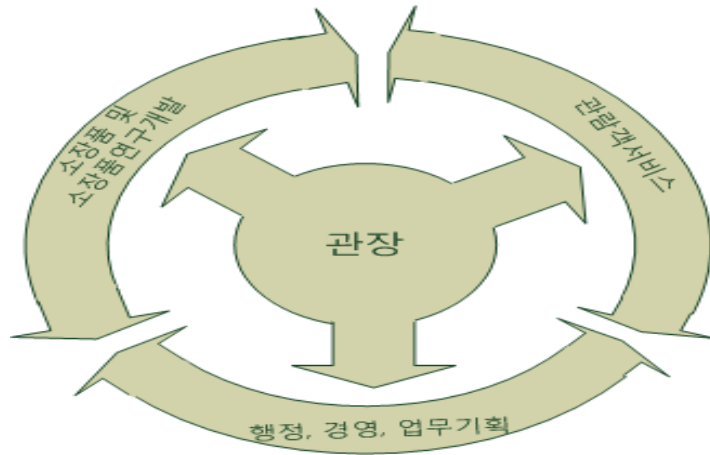
- | | |
|------------|------------|
| 1) 관장 | 9) 재원조성담당자 |
| 2) 사업경영자 | 10) 사서 |
| 3) 학예사 | 11) 회원제담당자 |
| 4) 교육담당자 | 12) 시설관리자 |
| 5) 소장품 관리자 | 13) 안전 요원 |
| 6) 보존처리사 | 14) 편집자 |
| 7) 전시디자이너 | 15) 사진기사 |
| 8) 홍보섭외담당자 | |

4) 유럽의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한 범위 및 규정

2005년 이탈리아의 페사로(Pesaro)에서 개최된 국제박물관협의회 심포지움에는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의 박물관 전문 인력들이 참여해서 유럽지역의 박물관 전문 인력에 관한 준거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6년 국제인력훈련위원회(ICTOP) 위원장의 주도하에 여러 차례의 회의와 함께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국내외 박물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박물관 전문직 활성화와 더 나아가 박물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박물관 전문직의 지식, 인식,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박물관에서의 활동에 대한 안내 지침서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해 기술한 초안은 2007년 3월 밀라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마련되었고, 5월에 바젤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종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박물관 전문 인력 범주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본질적으로 기존에 근거로 제시했던 국제박물관협의회 박물관 윤리 강령(2006)을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소장품 및 소장품과 연구 개발(collections, enhancement of collections and research),’ ‘관람객 서비스(visitor services),’ ‘행정, 경영, 업무 기획(administration, management and logistics)’이 박물관 전문 인력 활동 가운데 세 가지의 주요 활동 영역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2> 박물관 전문인력 활동의 세 가지 주요 영역



Collection, Research and Enhancement
(소장품 및 소장품 연구개발)

Curator (학예연구원)
Inventory co-ordinator (소장품관리자)
Registrar (유물등록담당원)
Conservator (보존처리사)
Curatorial assistant (학예연구원보)
Document Centre Manager (문서보관소담당자)
Exhibition and display curator (전시기획학예연구원)
Exhibition designer (전시디자이너)

Visitor (관람객서비스)

Manager of the education and visitor service
(교육 및 관람객서비스담당자)
Education and visitor service officer
(사회교육원)
Visitor care and security manager
(관람객 지원 및 보안담당자)
Visitor care and security assistant
(관람객 지원 및 보안담당자보)
Library and media centre manager
(도서관 및 미디어센터 관리자)
Web Master
(인터넷시스템 관리자)

Administration, Management and Facilities
(행정, 경영, 업무기획)

Administrator (행정가)
Facilities and Security manager
(시설물 관리 및 보안 담당자)
IT Manager (IT기술 담당자)
Manager of Marketing, promotion and fundraising
(마케팅, 프로모션, 자원조성모집 담당자)
Press and Media officer (언론홍보담당자)

이 세 가지 활동 영역 선정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각국이 제출한 박물관 전문 인력의 범주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스위스의 박물관 전문인력의 범주

- administrateur(경영지원팀/ 행정 담당 총무 또는 사무팀)
- bibliothecaire(도서관(장))
- chargée de l'aménagement(설계 및 전시 디자인 담당)
- chargée de l'inventaire(조사 및 집계 담당)
- chargée de médiation culturelle(문화 담당)
- chargée des relations publiques et de la presse(고객 지원 및 언론 홍보 담당)
- conservateur(학예연구원)
- directeur(관장)
- gardien(관리인(경비))
- photographe(사진 기사)
- préparateur(업무 보조, 어시스턴트)
- responsable du service d'entretien et de sécurité(보안책임자)
- régisseur d'oeuvres(등록담당원)
- restaurateur(복원사)
- secrétaire(비서)
- technicien(기술사)

② 프랑스의 박물관 전문인력의 범주

- architecte-maitre d'oeuvre(건축가)
- programmation(프로그램 기획)
- conservation(보존, 유지, 관리)

- restauration(보수 및 복원)
- conception d'exposition(전시 기획)
- conception multimedia(멀티미디어 기획)
- mediation(미디어, 매체)
- gestion(경영)
- communication(고객 관리 및 언론 홍보)
- accueil et surveillance(안내 및 감독)
- evaluation(평가)
- esearche(조사연구)
- libraries, boutiques(서점, 아트샵)
- restauration, cafeteria(식당 및 커피숍)

③ 이탈리아의 박물관 전문인력의 범주

- 소장품의 연구, 관리, 운영(research, care and management of collections)
- 행정, 재무관리, 경영 및 커뮤니케이션(administration, financ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 관람객 지원 서비스와 홍보(services and relations with the public)
- 구조, 전시 디자인 및 안전관리(structures, exhibition design and security)

5) 기타 분류

빅터 다닐로브(Victor J. Danilov, 1994)가 출간한 ‘박물관 직종 및 훈련: 전문가 안내서(Museum Careers and Training:A Professional Guide)’에 의하면, 박물관의 직종은 크게 행정직, 관람객 개발직, 학예 및 소장품 관련직, 공공프로그램 관련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직종이 존재한다.

<표 16> 빅터 다닐로브가 제시한 유형별 박물관 직종

administrative careers	development and public relations positions	curatorial & collection-related careers	careers in public programming
president	development director	curator	exhibit director
museum director	membership director	registrar	exhibit developer
deputy/associate director	marketing director	collection manager	exhibit designer
vice president /assistant director	public relations director	conservator/restorer	exhibit builder
business manager /administrative director	publications director	research associate/assistant	technician
accountant	graphic designer	librarian	education director
data service manager	photographer	archivist	program/training coordinator
personal manager		historic preservationist	outreach coordinator
store manager			volunteer coordinator
food service manager			teacher
special event manager			guide/interpreter
visitor service manager			evaluator
physical plant manager			planetarium director
security manager			space theater director

ICOM의 정의와 같이 최근의 경향은 박물관 전문 인력을 박물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직종의 종사자로 포괄하여 통칭하지만, 세분화된 직종 중에서 박물관의 전문 인력의 범주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다.

에컨대, 버코(Burcaw, 2001)는 박물관 전문인력이 박물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전문성을 박물관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박물관의 고유한 여건에 맞는 특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즉 뮤지올로지스트(museologist)와 뮤지오그래퍼(museographer)로 그 영역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버코는 채용조성, 수익사업개발, 편집, 일반행정, 어린이교육, 전시 디자인 등의 담당자는 박물관학이나 박물관이 다루는 학문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박물관 전문인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반 경영이나 행정 등의 업무의 범주로 간주될 수 있는 업무들도 박물관 경영환경의 고도화에 따라 박물관의 특수성에 맞는 고유의 방법론 및 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전문인력의 범주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현재 통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학예사이외의 박물관 전문인력의 범위도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박물관 경영의 향상을 위해 전문성이 개발되어야 하는 관련 분야의 인력을 박물관 전문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6) 우리나라의 박물관 학예사(전문직)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1984년 12월 31일 제정) 제 5조에서는 학예직에 관해 “박물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기타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1991년 11월 30일에 제정 공포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3항에 “전문직원의 자격요건 및 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며, 1992년 5월 30일에 제정 공포된 박물관 및 미술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기타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1999년 2월 8일 개정 공포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제1항에 “박물관 및 미술관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학예사는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9년 2월 8일) 제6조에 의하면, 학예사는 제4조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자’로 정의해 놓았다. 또한 제4조 박물관 사업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물의 등록 및 관리, 보존, 조사연구, 전시, 교육, 출판, 교류, 기타 사업 등이다.

- 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 연구
- 박물관 자료의 보존,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관람회, 전시회, 발표회, 감상회, 탐사회, 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 박물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 자료, 미술관 자료, 간행물과 프로그램 및 정보의 교환,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 기타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앞서 기술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학예사의 정의는 매우 모호하게 규정해 놓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박물관 전문직을 ‘학예사’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학예사를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학예사가 담당하는 박물관 사업을 7가지로 기술해 놓았다.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박물관의 사업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기능을 매우 근대적인 시각에서 기술해 놓았다. 이에 향후 박물관 기능의 시대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재 기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학예사가 담당하는 박물관 사업은 박물관 자료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학예사는 박물관의 소장품(자료를 포함)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고 정의해야 하며, 등록 및 유물관리, 보존, 조사연구, 전시, 교육, 마케팅, 행정 및 경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물관 전문직을 학예사라고 통칭하는 것은 학예사가 박물관의 각종 업무나 사업을 모두 담당하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이거나 또는 연구조사, 교육담당자, 등록담당자 및 소장품 관리자, 보존처리사, 전시디자이너와 전시기획자, 홍보섭외담당자 등 박물관의 다양한 전문 직종을 망라하는 박물관 전문직을 통칭하는 용어로 이해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박물관 기능의 존재 및 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학예사는 세분화된 박물관 전문직 가운데 박물관 자료(소장품)의 조사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예사가 박물관의 직무를 대표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결국 학예사의 업무 분장 및 직무와 역할에 대한 제도적 정의와 현실세계의 해석이 불일치하고 자의적으로 학예사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의상의 모호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박물관 조직이 학예직(전문직)과 일반직(비전문직)으로 대별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학예사 이외의 전문직 직제나 직렬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해 주며 직종에 관계없이 박물관 업무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전문 인력을 간주하는 국제적 기준과는 전문직의 개념과 범위 관점에서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노동부의 고용직업분류에 의하면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련직(대분류) 하에 문화 및 예술 관련직(중분류)이 있으며, 사서 및 학예사(소분류)가 있으며, 이 안에는 사서(5111), 학예사(큐레이터, 5112), 문화재보존원(5113), 기록보관원(5114)로 세부 분류되어 있다.

학예직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소장 자료와 관련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및 정보 센터의 각종 자료를 취급하는 사서직이 행정직에 편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연구직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학예직의 모든 인사제도(직제, 채용, 근무 평정, 승진, 대우 등)는 연구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르며, 공직상 분류체계는 경력직-일반직-연구직-학예직군-학예연구직렬- 학예연구사·학예연구관으로 집약할 수 있다.

다. 공·사립·대학박물관 박물관 전문직 현황

2009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도출된 2008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국·공·사립·대학박물관의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직원 현황은 기타용역직원 포함 총 5,247명이며, 이 가운데 전문직원이 1,341명, 일반직원이 2,410명, 기타용역직원이 1,496명으로 조사되었다. 전문직원 1,341명중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가 720명으로 54%를 차지하며, 자격증은 없지만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621명으로 46%를 차지했다. 박물관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대학박물관의 학예사 자격증 보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사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국·공·사립·대학박물관 박물관 전문직 현황표(2008.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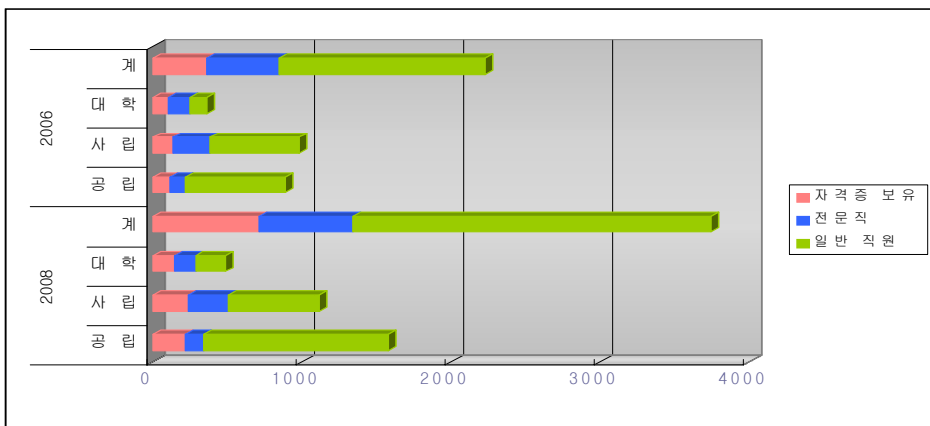
구 분	자격증 보유	전문직	소계	전문직중 자격증 보유 비율	일반 직원
국 립	119	75	194	61%	368
공 립	219	129	348	63%	1,234
사 립	239	273	512	47%	603
대 학	143	144	287	50%	205
계	720	621	1,341	54%	2,410

* 용역 등 기타지원 제외함/출처: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

전체 박물관수와 비교해 보면 2008년은 전년에 비해 박물관의 수가 68개 기관 증가하였으며 전체 직원 수는 2005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 용역직원수를 제외한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부족한 인력을 외주용역으로 충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직종별로 그 인원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2005년 대비, 전문직비율은 변동이 없었으나 일반 직원은 44% 증가하였으며 학예사자격증 보유 전문직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2006~2008 공·사립·대학박물관 박물관 전문직 현황



이렇게 전국 국·공·사립·대학박물관의 인력현황을 살펴보았다. 통계를 통해 2005년과 비교해 보면 전문 인력의 수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근무자중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의 수는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격증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으며 자격증 소지자 대상 인력지원사업 등 자격증 소지의 중요성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립 박물관 경영자는 개인의 자산 및 소장품을 공익을 위해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립박물관은 일반적으로 입장료와 일부 상품을 판매하여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의 과잉지출로 인해 재정 자립도가 낮으며 유물 확보 및 운영비 등의 재정 여건이 취약하다. 이로 인해 대외 홍보를 위한 박물관 전시 도록 및 팸플릿 등의 제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립박물관들이 부딪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전문인력 확보이다. 전국 사립박물관·미술관 실태조사결과(2005)에 의하면, 박물관 운영을 위해 특히 학예사 등의 전문인력 채용이 요구되나 인건비 등의 부담이 가중되어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박물관 경영이 대부분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 중심의 가족 단위에 의해 운영되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또한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예사의 52%정도가 석·박사 소지자인데 반해 100만원 이상의 월급여 비율은 51%이며 평균 월급여는 111만원이다. 이처럼 학예사는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동기부여가 제공되고 못하고 있다.

<표 18> 학예사 소지 학위 수준

구분	전문대 이하	학사	석사	박사	무응답
인원	3(3%)	33(36%)	47(52%)	5(5%)	3(3%)

(출처: 한국박물관협회, 사립박물관·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역할, 2005)

<표 19>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균 직원 및 급여(98관 대상)

인원 수	성 별	급 여
4.1명	남 1.9명, 여 2.2명	11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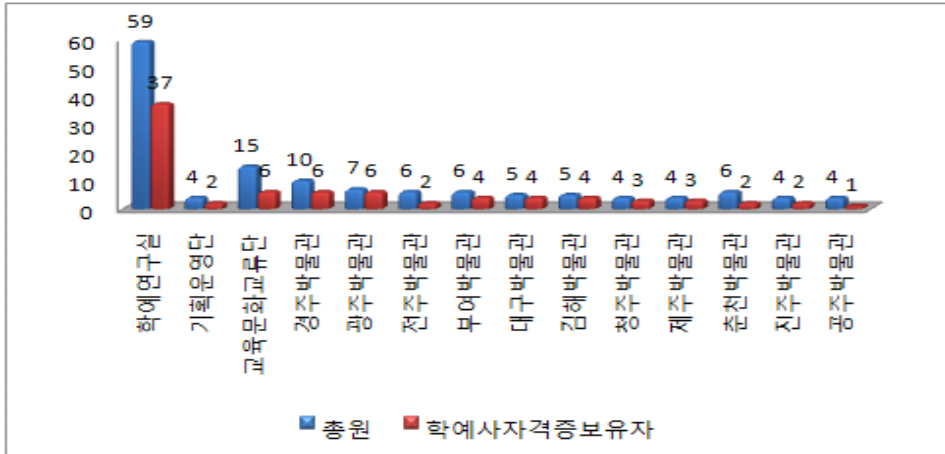
(출처: 한국박물관협회, 사립박물관·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역할, 2005)

라.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직 자격증(정학예사) 보유 현황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전국의 국립박물관의 학예연구직 가운데 적게는 20%, 많게는 80%가 넘는 인원이 아직도 학예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자격증 보유 현황(2007년 9월 10일 기준)을 살펴보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정원 145명(현원 139명) 가운데 학예사 자격증소지자 82명(58.99%)이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학예연구실이 3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교육문화교류단이 기획운영단보다는 학예사 소지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공무원의 학예사 자격증 보유현황 (2007년 9월 기준)



학예사 자격증의 발급을 담당하는 기획총괄과가 국립중앙박물관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립박물관의 학예연구직 비율상 40%에 달하는 인원이 학예사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현재 국립박물관들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예사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격증 취득에 대한 효용성 및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함께 학예사 자격제도의 기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국립박물관들의 능동적 참여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5년 제1회 학예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의 경우 한국고고학, 한국미술사학, 한국사학, 박물관학(소장품관리)으로 총 10명을 선발하였는데, 이 시험에서 취업보호대상자와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래에 제시된 표의 내용과 같이 박물관 유관분야의 국가공인자격증인 학예사 자격증이 가산특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표 20> 2005년 4월 11일 시행 학예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가산특전

<p>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p> <p>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가산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 적용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p>

<표 21> 자격증 분야 및 자격증 등급별 가산 비율

자격증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 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2006년 11월에 시행된 일반계약직공무원(학예연구) 채용공고'의 경
 우 유물보존처리를 위해 8명을 선발하였는데,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이
 루어진 이 시험에서도 역시 학예사자격증은 가산특전에 포함되지 않
 았다.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의 내용 가운데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응시자격 및 학력 및 경력 요건은 아래의 표의 내용과 같다. 이에 의거하면 전공과 실무 경력이 신규 인력 채용의 평가 기준일 뿐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외국어 우수자 우대)라고 기술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표 22> 2007 국립중앙박물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구 분	직 급	분 야	채용인원	비고(근무부서)
일반직	학예연구사	유물관리	1명	-
		복식사	1명	-
		건축사	1명	-
		미술사(전시)	1명	-
		학예일반 (박물관국제교류 및 박물관정책)	2명	-
일반계약직 7호	행정주사보 또는 7급 상당	교육	1명	교육팀
계		-	7명	-

<표 23> 2007 국립중앙박물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학예연구사 학력 및 경력요건

채용분야	담당업무	인원	관련학과	응시자격
유물관리	소장품 관리	1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박물관·미술관학	국내·외 대학에서 관련학과 및 관련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 석·박사 학위논문 포함 담당 업무 관련 연구논문 1편 이상 발표한 자 ◦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국·
복식사	복식 (의생활) ※국립대구박물관	1	의상학과, 의류학과 등 의생활(복식)관련학과	

II.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채용분야	담당업무	인원	관련학과	응시자격
건축사	아시아 건축	1	건축학(아시아 건축 전공자)	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담당 업무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국내·외 대학에서 관련학과 및 관련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 국제교류(영어 능통자) - 외국어대어학검정 80점 이상 ※TEPS 800점, 토플 CBT기준 243점, 토익870점, 플렉스 800점 이상자 포함 ※유효기간: 검정일로부터 5년간 -또는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담당업무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자 ※영어권 국가에서 근무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 ◦ 박물관정책 -담당업무 관련 연구논문 1편 이상 발표한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담당업무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미술사	전시	1	미술사학, 미술사 관련학과	
학예 일반	국제교류 또는 박물관 정책	2	국어국문학,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미술사학, 서지학, 인류학, 민속학	

그러나 2009년 7월 31일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의 내용 가운데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응시자격 및 학력 및 경력 요건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이에 의거하면 전공과 실무 경력이 신규 인력 채용의 평가 기준이며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된 내용은 외국어 우수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와 관련

된 내용을 별도로 만들어 관련자격증 란에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자격증을 소개하였다. 이는 앞에서 소개한 내용과 비교했을 때 박물관 학예연구직 채용시 학예사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가산점 등 다양한 방식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초가 되리라 생각된다.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연령 : 20세이상(1989.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학력 및 경력요건

- 직급 (분야) : 학예연구사(보존과학)
- 담당업무 : 관련분야 학예 조사·연구 등
- 관련학과
 - 문화재보존(문화재보존학·보존과학·문화재학·문화예술보존학 등) 관련학과,
 - 이학(화학·물리·생물 등)계열,
 - 공학(화공·임산·자원·재료·금속 등) 계열
 - 기타(도자공예 등) 보존과학 관련 학과

○ 응시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관련학과 및 관련계통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 석사학위 취득 후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담당업무분야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외국어 우수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외국어 능력(예시) : 국내외 외국어능력 검정 능력, 국외 석·박사 학위 여부 또는 국외 연구소 연구 경력 등
- 관련 자격증(예시) :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등

마. 미술관 전문직 운영인력 및 학예사 자격증 보유 현황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국·공립 및 사립미술관과 대학 미술관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미술관은 덕수궁미술관을 포함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유일하며 공립미술관은 18개관으로 서울시립미술관 등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 9개관, 수원미술전시관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 9개관이다. 사립미술관은 총 70개관으로 국내 전체 미술관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미술관은 3개관이다.

미술관 종사자 수는 총 845명이며, 국립 97명, 공립 283명, 사립465명이고 전체 종사자 가운데 학예직 240명, 학예직 이외의 전문직(별정직 등)165명, 일반직원이 440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학예직이 한명도 없는 미술관은 12개관이며 관장 1인이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전시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지역 미술관도 다수를 차지한다.

<표 24> 미술관 운영 인력의 학예사 자격증 보유 현황(2006.12.31 기준)

구 분	학예연구직		전문직	기타 직원	계	비율(%)
	자격증 보유	자격증 미보유				
국 립	9	9	39	40	97	9.3
공 립	33	30	33	187	283	11.7
사 립	77	82	93	213	465	16.6
계	119	121	165	440	845	14.1

4.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교부 현황

가.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 현황 및 자격증 교부 현황

<표 25> 준학예사 자격시험(필기) 접수인원/응시인원/합격자현황(2000~2008년)

구 분	1회 (2000)	2회 (2001)	3회 (2002)	4회 (2003)	5회 (2004)	6회 (2005)	7회 (2006)	8회 (2007)	9회 (2008)	합 계
접수인원	829	351	251	345	656	713	865	858	864	5,732
응시인원	383	167	134	142	298	331	442	385	376	2,658
합 격 자	80	37	43	48	118	108	93	89	71	687
합격률(%)	20.8	22.2	32.1	33.8	39.6	32.6	21.0	23.1	19	27.13

2000년 12월에 처음으로 실시한 준학예사 자격시험은 현재 9회째 진행되어 왔으며, 총 합격인원은 687명, 평균 합격률은 27.13%를 나타내고 있다.

준학예사 자격시험은 1년에 1차례 시행되는 필기시험으로서 선택과목의 주관식 2문항과 박물관학과 외국어의 객관식 50문항으로 이루어지는데, 연평균 합격률이 27%에 그친다는 것은 비교적 낮은 합격률이다. 그리고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현황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평균 47%에 달하는 결시율이다. 이는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자들 스스로도 준학예사 자격시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예사 자격증 교부는 실무경력을 근거로 심의가 연 2회(4/10월) 이루어지는데, 2009년 상반기까지 2,416명(2급 정학예사 154명, 3급 정학예사 1,984명, 준학예사 278명)이 자격증을 교부받았으며, 현재까지 1급 정학예사는 배출되지 않았다.

현재 학예사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할 수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학예사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은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포함)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707개관인데, 비해 자격증 소지자가 2,416명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심각한 수준으로 불균형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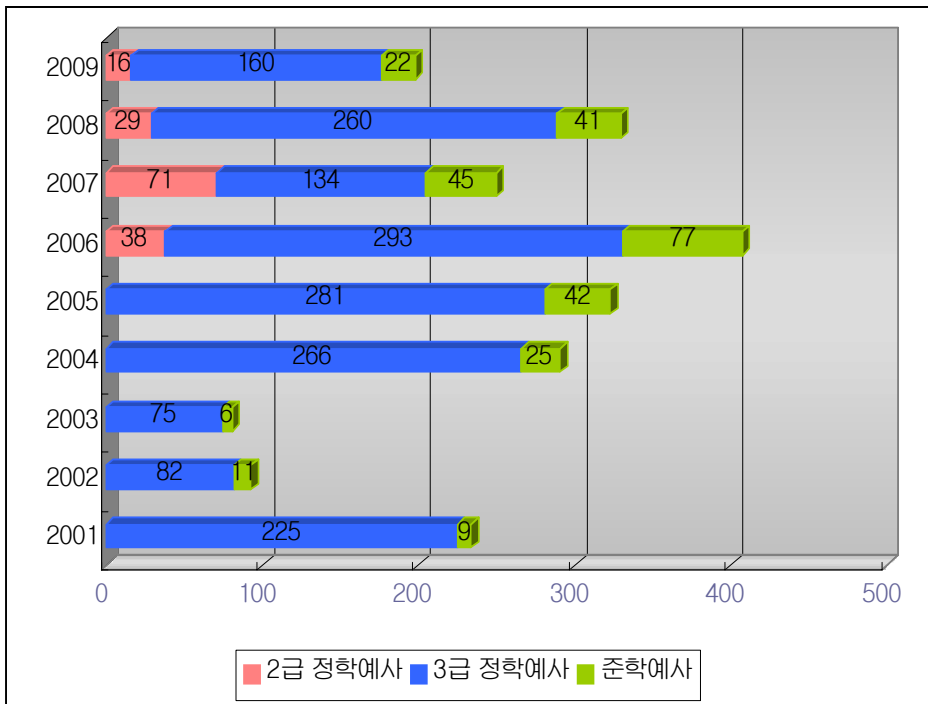
<표 26> 학예사 자격증 교부현황(2001년 상반기~2009년 상반기)

구 분	합 계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신청	발급	신청	발급	신청	발급	신청	발급
‘01 상반기	223	187			217	181	6	6
‘01 하반기	63	47			60	44	3	3
‘02 상반기	65	58			60	54	5	4
‘02 하반기	43	35			34	28	9	7
‘03 상반기	58	45			51	41	7	4
‘03 하반기	60	36			58	34	2	2
‘04 상반기	159	118			140	100	19	18
‘04 하반기	206	173			194	166	12	7
‘05 상반기	204	183			172	158	32	25
‘05 하반기	150	140			128	123	22	17
‘06 상반기	230	205			169	149	61	56
‘06 하반기	208	203	38	38	148	144	22	21
‘07 상반기	307	289	51	51	218	208	38	30
‘07 하반기	189	169	26	20	146	134	17	15
‘08 상반기	239	209	24	14	180	168	35	27
‘08 하반기	151	121	19	15	113	92	16	14
‘09 상반기	228	198	19	16	183	160	26	22
합 계	2,783	2,416	177	154	2,271	1,984	332	278

<표 27> 학예사 자격증 교부 증감현황(2001년 상반기~2009년 상반기)

구 분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증감비율(%)
2001		225	9	
2002		82	11	▼39
2003		75	6	▼13
2004		266	25	▲359
2005		281	42	▲11
2006	38	293	77	▲13
2007	71	134	45	▼49
2008	29	260	41	▲13
2009.4	16	160	22	▼40

<그림 5> 연도별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증가 현황



나. 경력인정기관의 선정

경력인정기관은 학예사자격증 취득 혹은 승급을 위해 경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관을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증하는 박물관으로서 학예사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적 경력인정대상기관이다.
- 사립·대학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심의하여 실무 경력을 인정한다.
- 사립일 경우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 실태 및 업무 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다.
- 인력은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관장 포함)이 2인 이상 있어야 한다. 단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이 1인 인 박물관의 경우 관장이 학예사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로 인정되면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급 정학예사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2명, 준학예사는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1명씩을 인정한다.
- 소장품 도록 또는 특별전시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 전시 여부를 확인한다.

경력인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2차례(4월과 10월)에 있는 학예사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기관심사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되고 있다.

경력인정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실습 및 실무연수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학예사자격증 취득 및 승급을 위한 실무경력에 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이 포함된다.

2000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 2009년 9월 기준으로 현재 경력 인정기관이 된 사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은 총 223개관에 달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체 등록사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 397개관의 약 56%이다.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28개,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282개, 사립 및 대학박물관 및 미술관 223개를 합해 총 533개관이다.

경력인정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학예사 자격증 획득의 필수요건이 됨에 따라 경력인정기관으로 지정된 박물관은 인턴십 등의 실무 경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또한 2004년 이후 정부의 청년인턴채용지원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립미술관들이 인턴을 채용하고 있어 실무경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다.⁶⁰⁾

다. 경력인정기관 관리 및 문제점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인정대상기관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외국 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 시설, 자료의 관리 실태 및 업무 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이다. 이는 해당 박물관의 근무자가 재직, 실습, 혹은 실무경력을 쌓았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기관임을 의미하며, 현행 경력인정기관의 자격 요건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립·대학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이 신청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선정되고 있다.

경력인정기관의 대상에 외국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각국의 박물관 협회나 국제박물관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60) 이 사업은 미술관련 전공 학부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 이상으로 또는 1년 이상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7개월 동안 급여를 제공하고 주 5일 상근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수습 직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등록박물관으로 인정되는 기관 등의 평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립 박물관의 경우,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 실적(소장품 도록 또는 특별전시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전시 여부의 확인)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다”라고 자격 요건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실습과 실무 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라는 부분은 경력인정기관의 평가 기준을 매우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제시해 놓았다.

특히 박물관에서 실습과 실무 연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인 동시에 박물관 조직 구조상 교육 담당부서 및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 직원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 인력의 경우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관장 포함)이 2인 이상으로 그 평가기준을 제시해 놓았다.

대부분의 국·공립 박물관의 경우를 제외한 대학 및 사립박물관의 경우에는 조직 구조상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력인정기관은 심사를 할 때 교육팀이나 교육담당자의 보유현황을 평가하지 않은 채, 학예사 자격증의 소지여부 및 등급의 구분만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자격증 취득 희망자가 받아야 할 교육의 내용 및 질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국·공립 박물관의 경우 비록 조직 구조상 교육팀 등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인턴 및 실무 연수생을 위한 교육 지침서나 인턴 운영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다.⁶¹⁾

61)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에서는 2008년부터 경력인정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인턴 운영 매뉴얼을 제작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 지침서(매뉴얼)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실무 습득 및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턴 및 실무 연수생 관점에서는 향후 박물관 근무하거나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얻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인턴 및 실무 연수 경력을 지닌 박물관 관련 전공자들이 심지어는 박물관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업무를 맡아서 실무 경력 습득에 불만족스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력인정기관의 심사는 학예사운영위원회에 의해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지원서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처음 인정받을 때만 진행하고 중간 평가나 최종 평가를 통한 보완사항 제시나 인정취소와 같은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력인정기관으로 인증된 후 보유 인력(학예사)의 이·전직 유무나 시설의 변동 등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 기관들의 인턴 등의 실무 연수생을 선발 방식, 박물관들이 이들에게 맡기는 업무의 특성 및 범위, 박물관들의 인턴 등의 실무 연수생 관리 방식, 선발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관 또는 협회등 유관기관 차원에서 경력인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력인정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실사와 서면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턴 및 실무 연수생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부서 및 담당 인력의 보유 현황을 평가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편입시키며 전반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기준의 변화와 함께 경력인정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총괄과는 인턴 및 실무 연수생을, 역으로 인턴 및 실무 연수생은 경력인정기관을 평가하는 쌍방향의 ‘실무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예사운영위원회에서 경력인정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후

지속적으로 경력인정기관으로 인증해 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또한 경력인정기관은 인턴 및 실무 연수생에 대한 평가와 그들이 평가한 박물관의 인턴 및 실무 연수생 관리에 대한 평가를 적어도 연 1회 학예사 운영위원회 및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기획총괄과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현재의 경력인정기관으로서의 자격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및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몇몇 경력인정기관에서는 인턴 및 실무 연수생들이 학예사 자격증을 신청하기 위해 실무경력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때 문서보존기간이 일용잡급직은 3년만 그 정보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이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실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관련 증빙자료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만들지 못하는 어려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력인정기관의 인턴 및 실무 연수생 관리와 관련된 문서 관리 시스템의 유지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바라본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학예사 자격제도와 관련 자격증의 효용성 문제 제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실무연수기관의 부족, 준학예사 자격시험(시험합격 및 실무연수 경력 1년에서 5년 요구) 등에 관련된 지속적인 민원과 함께 학예사 제도의 운영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에서 학예사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학예사 제도의 운영 및 정학예사 등급구분에 대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학예사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도 자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해야 한다’와 정학예사의 등급 구분과 관련해서는 ‘현행 정학예사 등급 구분을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설문조사 결과가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도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학예사 자격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현실성과 효용성 및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다.

학예사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들은 제도 자체의 효용성 증진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에 대해 지적했으며 이와 함께 제기된 기타 의견은 아래와 같다.

- 사립박물관의 운영상 재정적 문제의 해소 및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필요성
-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와 미취득자와의 차별성 제고를 위한 혜택 부여 및 자격증 부여 시 심사 기준의 강화
- 박물관의 자질 향상과 학예사의 채용 의무화를 위해 박물관 등록시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채용 등 등록자격요건 강화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 경력의 취득의 어려움
- 학예사 자격증 자체의 실제적 효용성의 문제점
- 경력인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실무 경력에 대한 성과 평가 필요성
- 학예사의 전문분야별 세분화(학예사의 개념 및 정의 재정립)
- 학예사자격증 취득자의 관리 및 재교육

정학예사의 등급 구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들이 등급 구분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개선 보완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상위 등급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현재는 실무경력기간만 명시되어 있으나 기간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무 경력의 성과 및 실적(연구 논문, 보고서, 전시기획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승급과 함께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실무경력기간의 연장 및 최소한의 실무평가 기준의 마련이 요구됨.
- 실무경력기간의 축소 또는 조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되어야 함.
- 실무경력기간의 현실적 대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 제기
- 학예사 자격제도가 현재 엄격한 능력관리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급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현재 등급 구분을 하는 것이 부적절함.
- 박물관 설립자의 경우, 박물관 운영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일정 연수를 거쳐 자격을 인증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석·박사에 준하는 경력(예컨대, 문화재 보수자격을 가진 기능자, 국가 지정 중요 무형 문화재 또는 지방문화재 기능 보유자)을 가진 자에 한해 일정 연수 과정 이수 후 자격을 인증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나. 박물관 등록 요건의 구조적 모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 2009. 6. 6] [법률 제9471호, 2009. 3. 5, 일부개정] 제10조에 의거한 등록요건을 살펴보면, 박물관은 소장품 분야별 1인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는 종합 박물관의 경우를 제외하고, 획일적으로 1인 이상으로 박물관 등록 요건을 규정해 놓았다.

이는 소장품이나 시설 및 규모에 관계없이 박물관 설립 및 운영주체가 학예사 1명 내지 2명만을 고용하더라도 박물관을 등록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시설이나 소장품의 규모에 따라 학예사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박물관 등록 요건에 반영한다면 고의적으로 현재의 보유 현황을 축소시켜 박물관을 편법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학예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시적으로는 학예사의 업무량 초과와 함께 근무 환경의 취약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조사·연구 기능 이외의 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 등의 공공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등 박물관 운영 전반에 문제가 발생하고 거시적으로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박물관 문화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학예사 1인 이상 채용에 대한 규정이 박물관 설립의 확산 및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학예사 자격제도라는 측면에서는 학예사의 고용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거나 기대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박물관 전문인력의 확보는 박물관의 기능 수행 및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박물관의 존재 이유와 이를 위해 공공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필요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박물관의 소프트웨어(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절한 규모의 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그러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박물관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 이용에 대한 관람객의 만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향후 박물관 소장품과 시설의 규모를 기준으로 학예사를 추가로 의무 채용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다. 국·공립박물관 학예연구직의 저조한 학예사 자격증 보유 현황

국·공립박물관의 설립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장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제10조(설립 및 운영(신설 20004. 9.23)와

제 11조(설립협약)에 있으며 국립박물관 제12조(설립 및 운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립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과는 달리 국·공립박물관은 공식적으로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 국·공립박물관들은 비록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이와 동등한 위치에서 안정된 공공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타 등록박물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학박물관이나 사립박물관에 비해 학예연구직의 학예사 자격증 취득 비율이 낮은 편이다.

2006년에 실시했던 공·사립·대학박물관의 직원현황에 의하면 직원 현황은 총 2,237명이며, 이 가운데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가 363명으로 16%를 차지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 국립박물관의 학예연구직 가운데 20~80%가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

비록 2005년에 비해 박물관의 수가 41개 기관 증가했으나 전체 직원 수는 2005년 대비 7.4% 감소했지만 다행히 직종별 인원수의 변동율을 살펴보면 학예직의 비율이 10% 증가했다. 하지만 국립박물관을 제외한 박물관 수가 369개 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1개 기관에 학예직의 수가 평균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 학예사 승급 제도에 요구되는 실무경력기간의 비현실성

현재 정학예사의 경우, 1,2,3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상위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요건이 단순히 연공서열식 방식이며, 능력 및 자질과는 무관함으로써 등급간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시행 2009. 6. 6] [법률 제9471호, 2009. 3. 5, 일부개정]에 의하면 준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1년에서 5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며, 준학예사 자격증 취득 후 3급 정학예사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4년, 3급 정학예사에서 2급 정학예사로의 승급은 5년, 2급 정학예사에서 1급 정학예사로의 승급은 7년의

실무경력이 요구된다.

이에 준하면, 학예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일반인이 1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는 총 20년의 실무경력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승급을 위한 실무 경력기간은 학예사 자격증을 관리·감독하는 문화관광부의 유사 자격증에 언급되어 있는 승급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준학예사의 경우 필기에 합격한 후 1년에서 5년의 실무경력이, 3급 정학예사의 경우 석사 학위소지 외에 2년의 실무경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의 교육기관(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 중인 학과의 교육과정 상 현장 실습이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몇몇 기관에 해당하며, 그나마 교육기관에 재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현장실습기회가 현실적 어렵다.

또한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적정 규모의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등록 사립박물관의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는 직원 채용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등록 박물관의 경우는 학예사 고용을 규정하는 법적 규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굳이 학예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박물관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는 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축적해서 승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므로 현실적 차원에서 실무 경력 기간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실무 경력을 습득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청년인턴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박물관들은 무급으로 인턴이나 실습생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예비 박물관 전문 인력에게 박물관 전문직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거나 업무나 전문직 종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적절

히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사)한국박물관협회 주체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을 운영에 요구되는 학예인력 교육 및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의 현장능력 강화 및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질적 수준 제고, 학예사 고용촉진을 위해 ‘등록사립박물관 운영 지원’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수혜자는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및 현장 경험 2년 이상 경력자 중 박물관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인자(단, 2년 후에는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이다. 지원 규모는 기본적으로 박물관 1관마다 신규인력 또는 경력자 1명의 인건비 월 120-140만원(4대 보험 및 세금 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신청 박물관 및 지원 인력 수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학예인력을 선발, 등록사립박물관(85관, 대학박물관 포함) 당 1인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며, 기본소양 및 실무교육, 워크숍 등을 통한 파견 학예인력의 능력을 배양한다.

박물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프로그램의 등장과 함께 유급으로 실무경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이 정규적으로 그리고 중장기 적으로 운영된다면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실무경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마. 실무경력취득을 위한 체계적 현장실습방안 및 교육담당인력의 부재

박물관에서 인턴이나 실습생을 대상으로 실무 연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인 동시에 박물관 조직 구조상 교육 담당부서 및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 직원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경력인정기관의 문제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공립 박물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 및 사립박물관의 경우에는 조직 구조상 교육 홍보팀이나 교육팀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력인정기관은 심사를 할 때 교육팀이나 교육담당자의 보유현황을 평가하지 않은 채, 학예사 자격증의 소지여부 및 등급의 구분만으로 인정해주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등록사립박물관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학예사 지원을 위한 박물관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등록사립 박물관 중 기업 지원관이 아닐 것, 공공성 등 평가를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박물관, 유사 사업에 대해 이중 지원을 받지 않을 것, 인력 활용 타당성과 계획이 분명한 곳, 사회 공헌도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신규 채용된 학예사를 관리할 수 있는 교육담당자이나 학예사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공립 박물관의 경우 비록 조직 구조상 교육 홍보팀이나 교육팀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인턴 및 실무 연수생을 위한 교육 지침서나 인턴 운영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다.

이러한 안내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실무 습득 및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턴 및 실무 연수생 관점에서는 향후 박물관 근무하거나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학습 효과나 실무 습득을 기대할 수 없다. 인턴 및 실무 연수 경력을 지닌 박물관 관련 전공자들이 심지어는 박물관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업무를 맡아서 실무 경력 습득에 불만족스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1978)는 박물관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몇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실무경력을 위한 인턴십 운영의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이 크다.

- 인턴은 상근 직원에 준하는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주 40시간 또는 박물관의 정규 근무시간)
- 인턴은 현재 진행 중인 업무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직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인턴은 전문적 수준의 책임을 수행해야 하며, 프로젝트를 완료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에 참여하여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 인턴은 그 의무와 기관의 인턴십 목표를 기술한 공식적인 문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문서는 인턴십 실행 기간 동안에 재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문서의 내용은 일부 또는 전면 수정될 수 있다.
- 인턴은 경험과 책임을 지닌 전문 인력의 세심한 지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 전문적 수준의 인턴십을 운영하고자 하는 박물관은 인턴을 관리하는 업무에 전문 인력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박물관이 인턴의 훈련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턴의 관리로 인해 박물관의 기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인턴십은 박물관과 인턴에게 상호 동등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 박물관은 인턴이 기관의 모든 부서, 프로그램, 기능에 숙련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인턴의 특정한 업무와 박물관의 전반적인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인턴십 종료 시, 인턴과 관리 또는 감독자가 각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턴의 실제 업무 경험을 기술하고 이를 안내 지침서

에 제시된 기준을 근거로 평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경력인정기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경력인정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인턴 및 실무 연수생을 위한 교육 지침서 및 인턴 운영 매뉴얼의 부재, 인턴 및 실무 연수생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교육담당자 또는 학예사)의 부재 등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인정기관과 인턴 및 실무연수생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이들 양자간의 질적 및 양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의 마련이 요구된다.

바. 실무경력인증의 제한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현재 학예사 자격증 취득 및 승급에 필요한 실무경력은 국·공립박물관 및 경력인정기관에서 습득한 실무 경력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박물관 이외의 유사경력(행정관청 및 문화재발굴법인, 기타 전시기획업체 포함)은 경력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어 유관경력의 불인정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학예사 자격제도 실행의 본질적인 취지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업무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인력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나 기준이 요구된다는 전제하에서 과연 전문인력의 평가 기준으로 실무경력이 필요 충분 요건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2000년에 채택한 ‘박물관 전문인력 개발 교육과정 안내 지침서(ICOM curricular guidelines for museum professional development, 2000)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박물관 전문인력은 일반 역량(general competencies), 박물관학 역량(museology competencies), 기능별 역량(functional competencies)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 역량은 박물관의

모든 직원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 지식과 기술, 박물관학 역량은 박물관 업무의 지적 토대와 업무 및 활동 실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이며, 마지막으로 기능별 역량은 경영역량, 공공 프로그래밍 역량, 정보 및 소장품 관리 역량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박물관 전문 인력 개발 교육 과정 측면에서 본다면, 실무경력은 기능별 역량에 해당되는데, 기타 일반 역량과 박물관학 역량은 전공 및 학위, 그리고 연구 경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유사 자격제도인 사서의 경우 등급을 1급, 2급, 준사서의 3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학력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석사학위소지자의 경우 2급,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1급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물론 학예사 자격제도의 구분상 학위와 실무경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실무경력에 대한 비중이 학위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유사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록 박물관이 아닐지라도 연구소 근무자나 전문 전시 기획업체에서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한 근무자나 실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그 전문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적인 탄력성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무 평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실무경력인정은 근무기간만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인정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근무기간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근무 내용에 대한 평가이다.

해당 실무경력자가 해당 박물관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떠한 태도로 업무에 임했는지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실무 경력자가 비단 학예사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향후 박물관에서 전문 인력으로 채용될 때에 실무 경력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러한 실무경력의 습득 과정에 대한 평가는 결여되어 있으므로 향후, 실무

경력 습득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사. 박물관 전문적 기능에 대한 간과한 학예사 자격제도의 명칭

국제박물관협회의 박물관 윤리강령(Code of Ethics for Museums)에 의하면, 박물관 전문 인력(박물관 전문직, museum professionals)은 “박물관 또는 ICOM 규정으로 박물관으로 인정받는 기관의 종사자로서 박물관 경영과 운영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인력, 그리고 ICOM의 박물관 윤리강령을 존중하며 박물관 또는 박물관으로 인정받는 기관을 위해 일하는 독립인력이다.

하지만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박물관 전문직 또는 박물관 전문 인력을 ‘학예사’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유형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 박물관과 미술관의 특성과 함께 박물관의 본질적인 다양한 기능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예사는 박물관의 등록 및 유물관리, 조사연구, 보존, 전시, 교육, 마케팅, 행정 및 경영 등의 업무 가운데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박물관 전문 인력이다.

이에 학예사 이외의 업무 예컨대 등록 및 유물관리, 보존, 전시, 교육, 마케팅, 행정 및 경영 등의 활동을 담당하는 박물관 전문 인력을 일컫는 적절한 용어 사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학예사 자격 제도’는 ‘박물관 전문직 또는 박물관 전문 인력 양성 제도’로 명칭이 수정되어야 하며, 각각의 전문 인력의 기능에 맞게 등록 담당자, 소장품 관리자, 보존처리사, 학예사, 교육담당자, 전시기획자, 마케터 등의 명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유사 자격증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우 그 소지자의 기술 종류에 따라 보수, 실측·설계, 단청, 조정, 보존과학, 식물보호의 6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에 학예사의 경우에도 유관 전공 영역으로 집단

화하여 세분화할 수 있다.

예컨대 학예사의 경우, 인문사회 학예사, 자연과학 학예사, 예술학 학예사 등으로 대별해서 분류하거나 좀 더 전공 영역을 세분화하여 고고학 학예사, 미술사 학예사, 예술학 학예사, 민속학 학예사, 인류학 학예사, 서지학 학예사, 자연사 학예사, 과학사 학예사, 박물관학 학예사, 역사학 학예사 등으로 세분화 하여 학예사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전문박물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학예사 전공 영역의 세분화에 현실적인 박물관 변화의 추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미술사분야를 전공하고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자연사박물관의 학예사로 채용되는 비합리적인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 학예사 자격증 활용방안의 부재

학예사 자격증은 현재 박물관을 등록할 때 박물관의 시설 및 소장품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학예사 1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등록사립박물관 운영 지원’사업 외에는 실제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험에 의해 자격증이 교부되는 준학예사와 함께 정학예사 자격증 교부는 실무 경력과 학력을 근거로 한 심의를 통해 연 2회(4, 10월)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 9월 현재까지 2,416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지금까지는 증감추이가 반복되고 있지만, 향후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는 분명히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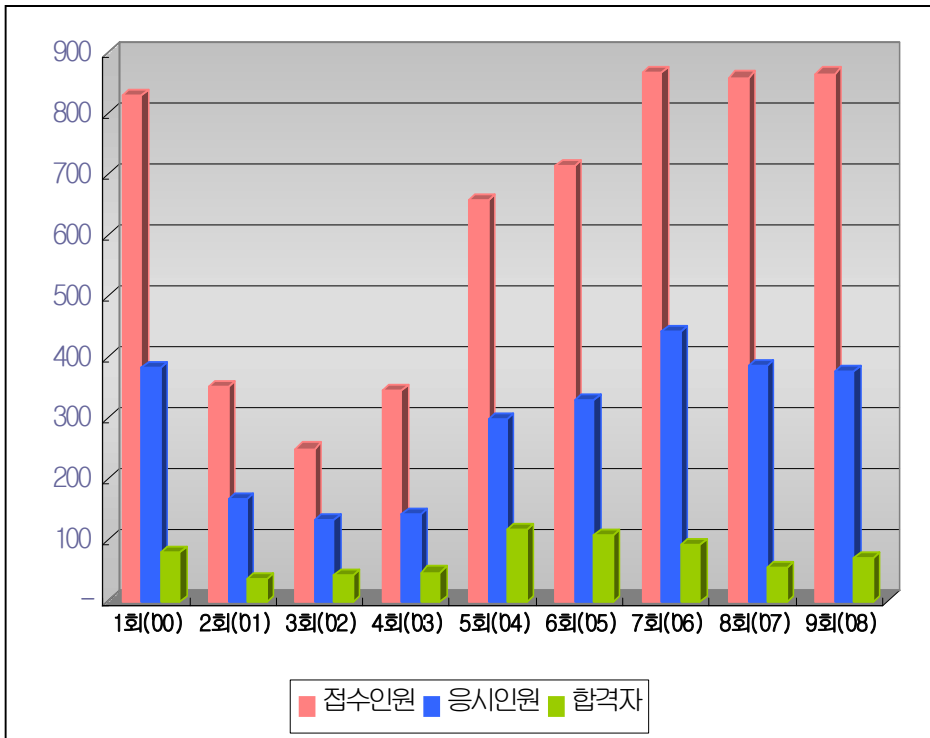
문제는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수의 증가와 함께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또한 동시에 증가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현재의 학예사 채용 현황을 근거로 살펴보면 극단의 정책적 조치나 제도적 지원이 취

해지지 않는 한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공급과 수요는 여전히 불균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활용 방안의 마련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분명하다.

공·사립·대학박물관의 직원의 학예사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국립박물관 순으로 보유비율이 높았고, 국립박물관의 학예직 공무원 학예사 보유현황에서도 학예연구직 비율상 40%에 달하는 인원이 학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국·공립박물관의 경우 향후 학예사 자격증 보유자의 채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대학박물관은 대학의 부속기관으로서 태생적으로 그 관리와 통제가 교육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립박물관 또한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학예사 채용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학이나 사립박물관의 경우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후속 조치로서 법적으로 의무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국·공립을 제외한 사립 및 대학박물관의 학예사 채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거나 주도적으로 지속적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채용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점은 본질적으로 2000년에 학예사 자격제도를 실행하기 시작하던 시기나 또는 그 이전에 학예사 자격제도를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반영하는 제도화 단계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 제도 실행의 타당성 검토, 타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활한 인력 수급이나 채용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부재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학예사 양성 제도가 부분적으로는 박물관 전문인력의 전문성 증진에는 기여하지만 정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실적 여건이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유사자격증인 사서와 문화재수리기술자, 무대예술전문인의 경우 국공립이나 사립기관을 막론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학예사의 경우에는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공립박물관의 연구직 공무원인 학예연구사 채용 시의 가산점 적용분야도 일반 사무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워드프로세서자격증에 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활용 방안 개발 및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의무화, 학예사 자격증 소지에 대한 가산점 적용에 대한 문제점은 향후 제도적 차원에서의 실행과 현실 적용간의 조화를 염두 해 두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Ⅲ. 학예사 자격제도 관련 사례

1. 프랑스의 학예사 자격제도

가. 프랑스의 학예사에 대한 정의

프랑스의 학예사 자격제도는 프랑스 정부가 정의하고 있는 학예사의 개념과 프랑스 문화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학예사에게 부여한 임무와 관련성이 있다.

1990년 5월 16일 문화성이 학예사 제도를 재정비해 법령을 발표하면서, 프랑스어로 ‘콩세르바바뛰르(conservateur, ‘관리인’, 동시에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뜻)’에 대한 정의를 현대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해 놓는다.

“그들은 문화재를 연구하고, 분류하고, 보존하고, 복원하고, 문화재에 가치를 부여하고, 알리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책임을 행사한다. 그들은 교육이나 출판을 통해 이와 같은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전문적인 경쟁력을 지닌 범위 안에서 문학적·예술적 창조물을 통해 대중들을 고무시킬 의무가 있다.”

또한 문화성은 학예사에게 학술적인 연구뿐 만 아니라, 자료 분석, 교육 프로그램, 관람객 서비스, 작품 복원, 행정과 세무 및 예산 집행, 소장품 관리 및 안전, 출판 등 박물관 안에서 벌어지는 ‘총체적인 관리인’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며, 이는 기업에서 경영인의 역할과 동일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예사가 연구원이라는 국한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박물관의 다양한 업무를 지휘하는 미션을 부여하면서, 문화성은 학예사 양성에 더욱 충력을 가하게 된다.

나. 프랑스의 학예사 선발과 양성

학예사는 박물관의 행정적 성격에 따라 선발 방법과 양성 체계가 달라진다. 정부에 소속된 박물관(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 베르사이유 등의 대표 박물관과, DMF(Direction des Musees de France, 프랑스 박물관 관리청)에 소속되어 있는 박물관)의 학예사는 국가 공무원으로, 자치 단체에 소속된 박물관(지방의 도립, 시립 박물관 등)의 학예사는 향토고용관리로 구분되며, 이 둘은 모두 공무원의 지위에 해당된다.

다. 정부 박물관 학예사(국가공무원)의 선발과 양성

프랑스의 학예사 자격증(DCP, Diplome de conserveur du Patrimoine) 시험은 국립문화유산학교(INP, Institut national de patrimoine)에서 주관한다. 국립문화유산학교(INP)는 1990년 학예사 제도가 정비되면서 문화성 산하 직속 기관으로 만들어졌다. INP는 크게 두 분야를 관할하는데, 하나는 학예사 (conservateur du Patrimoine) 이고, 다른 하나는 복원사(restaurateur)로서, 이 둘은 각각이 독립된 전문 분야의 직업이며, 복원사를 학예사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INP는 연간 1회씩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며, 시험에 합격한 이들에게 견습 학예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합격생들의 실무를 위한 18개월간의 연수를 담당한다. 연수를 마치고 일할 자리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 적절한 박물관을 연계해 준다.

내부고시와 외부고시로 구분된 3차 시험(concours) 전형으로 1차 시험에서는 고고학, 아카이브(고증 자료학), 도서관학, 문헌 정보학, 역사유적(문화재학), 박물관학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술형식으로 이루어진다. 2차 시험은 이미지 자료에 대한 분석, 3차 시험은 심사위원과의 언어 구술 시험을 함께 응시하게 된다.

내부고시 자격은 40세 이상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으로 소속부서에 관계없이 7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외부고시 자격은 공무원, 일반인 및 관련 분야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주어진다. 2006년부터 외부 고시 응시의 연령 제한은 폐지되었다.

라. 자치단체 박물관 학예사(고용관리)의 선발과 양성

자치단체의 학예사는 INP가 주관하는 시험의 합격생을 대상으로 국립향토고용관리센터(CNFPT, Centre national de la fonction publique territoriale)에서 연수와 고용을 별도로 담당하며, 그 방법은 INP와 동일하다. 지방 자치단체 소속의 박물관 관장을 임명할 시에는 공개채용 형식을 띄며, 심사위원은 해당 시의 시장과,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마. 프랑스의 학예사 직급

학예사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경력과 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나뉜다.

- 견습 학예사: 관련 분야 전공을 3년 이상의 공부하여 학위를 받은 자가 INP의 시험에 통과하는 수여되는 자격증이다.
- 2급 학예사: 견습 학예사가 18개월의 연수를 마치면 정식 학예사증이 수여된다.
- 1급 학예사: 박물관 경력이 5년 이상이나, 실적에 따라 2급으로 바로 임명될 수 있다. 1급 학예사부터는 박물관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와 문화성에서 관할하는 포고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예사에 한해, 정부가 부여한다.
- 수석 학예사: 10년 이상 박물관에서 일한 경력과 45세 이상이 되면 수석 학예사로 승격된다. 지방의 박물관 관장의 직급은 루브르박물관 등 국가 직속 박물관의 수석학예사와 동급이다.

바. 프랑스의 박물관 전문 인력 양성 기관

1) 에콜 뒤 루브르(Ecole du Louvre)

에콜 뒤 루브르는 1882년에 생긴 유럽 최초의 박물관 전문학교로서,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는 것을 학교의 설립목적으로 삼으며, 현재 문화부 소속기관이다. 이 학교는 박물관을 위한 ‘행정학교’이자 ‘실질적인 예술교육을 위한 학교’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에콜 뒤 루브르는 미술사를 전문으로 하는 1기 과정(3년), 박물관학을 전문으로 하는 2기 과정(2년)과 연구 과정(3년)을 두고 있으며, 2기를 마친 학생들 중에서 학예사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예사 준비반’을 마련해 놓았다. 프랑스에서 학예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에콜 뒤 루브르에 입학, 또는 편입하여 INP의 시험을 준비하는 정규 과정을 거치는 예가 대부분이다.

2) 국립고문서학교(Ecole National des Chartes)

1821년 왕명에 의해 중세시대를 재발견하려는 맥락에서 세워진 학교이나 오늘날에는 보다 폭넓게 공무원들을 위한 고급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공무원들 중에서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대상으로 3년간의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학교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도서관이나 고문서 관련 분야의 학예사를 양성하는데, 이는 여전히 고문서 부분이 국가의 독점적 관리 대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1996년부터는 ‘예술작품의 복원을 위한 교육기관(Institut de formation des restaurateurs d'oeuvres d'art, IFROA)’분야를 추가하여, 학예사 뿐만 아니라 복원 전문가를 위한 교육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예술작품의 복원을 위한 교육기관(IFROA)의 입학은 실기 및 필기의 선발 시험에

의하며, 4년간의 교육 기간을 통해 문화재의 보수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공 예술, 그래픽 예술, 섬유예술, 가구, 회화, 사진, 조각의 7개 전공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국가공무원, 중세 및 현대 미술사 전문 연구원, 사진 및 건축 등의 전문분야 복원가 등이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 과정은 총 3학기로 구성되는데, 1학기에는 박물관에 전반적인 이론을, 2학기는 박물관 경영에 대한 이론을, 마지막 3학기에는 파리와 지방, 해외의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실습을 한 후 논문을 제출해 심사받는다.

2007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각각의 전공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학예사로는 총 621명이 응시하였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적정수를 감안하여 합격된 인원은 총 52명이었다. 또한 2006년의 경우, 18개월의 연수를 마치고 박물관에 고용된 학예사의 수는 총 35명이다.

2. 영국의 박물관전문인 인증제도

영국은 한국과 같은 별도의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주로 직업검증(Vocational Qualifications)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에 박물관 미술관 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영국내의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재관련 전문직 인원들의 교육을 위해 1987년 박물관 연수위원회(Museum Training Council)와 박물관 연수원(Museum Training Institute)을 설립했다. 이 박물관 연수원은 1998년 더 광범위한 교육 정책과의 통합을 위해 국립 문화재 연수협회(The Cultural Heritage National Organization: CHNTO)로 개편되었다.

이 기관의 주요 기능은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관련직의 교육과 전문성 향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 분야의 직업 자격 인증제도,

NVQs(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와 SVQs(Scottish Vocational Qualifications)를 지원하며 이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립 문화재 연수협회는 그 자체로는 교육기관이 아니며, 직업 자격 인증을 위한 교육/직업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한다. 또한 국립 문화재 연수협회는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와 문화재 보존에 관련된 몇 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을 승인하고 있으며, 뉴캐슬 대학(박물관학, MA), 레체스터 대학(박물관학, MA), 런던 칼리지 대학(박물관학, MA), 세인트 앤드류 대학(박물관과 미술관학 학위), 런던 시티 대학(박물관과 미술관 경영, MA), 라인바르트 아카데미, 암스테르담(박물관학, MA), 노팅햄 트랜드 대학(문화재, MA), 아이런브리지 연구소(문화재 경영 MsocSc와 학위), 에섹스대학(미술관학, MA), 섬유보존과학 보존센터(섬유 보존과학 Conservation 학위) 등의 기관이 대표적이다.

3. 일본의 학예원 자격제도

일본에서 학예원(學藝員)자격인정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55년으로 일본박물관협회가 문부성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박물관법에 의하면 학예원은 박물관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및 조사연구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이며, 학예원보(學藝員補)는 학예원의 직무를 돕는 직원을 말한다. 이러한 학예원 및 학예원보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표 28> 일본의 학예원과 학예원보의 자격 요건

학예원의 자격	-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대학에서 문부성령이 정하는 박물관에 관한 학점을 이수한 자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재학하고 전호의 박물관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합하여 6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학예원보의 직에 있었던 자
--------------------	--

제 2 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 학예사제도 관련 법제

	-문부대신이 문부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앞의 각 호에서 제시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위 및 경력을 가진 자로 인정된 자 -전항 제2호의 학예원보 직에는 박물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학예원보의 직에 상당하는 직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의 직으로서 문부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학예원보의 자격	학교교육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예원보가 될 자격을 갖는다.

학예원의 자격에서 말하는 대학에서 문부성령이 정하는 박물관에 관한 과목의 학점은 박물관학(4학점), 교육원론(1학점), 사회교육개론(1학점), 시청각교육(1학점), 박물관실습(3학점)의 총 10학점이다.

학예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은 시험 인정과 무시험 인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시험 인정

수험자격	-학사학위 소지자 -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6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학예원보의 직에 있었던 자 -교육직원의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5년 이상 교육직원의 직에 있었던 자 -6년 이상 학예원보의 직에 있었던 자 -기타 문부대신이 전 각호에 제시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고 인정한 자
-------------	---

<표 29> 일본의 학예원의 수험자격 및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필수과목	박물관학, 교육원리, 사회교육개론, 시청각교육 전과목
선택과목	문화사, 미술사, 고고학, 민속학, 자연과학사, 물리, 화학, 생물학, 지학 중 수험자가 선택하는 2과목

시험면제	대학 또는 문부대신이 지정하는 강습 등에서 시험과목에 상당하는 과목의 학점을 1학점(박물관학에 있어서는 4학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강습 등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출원할 경우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	---

- 무시험 인정

<표 30> 일본의 학예원 무시험 인정 방법 및 수험 자격

수험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위규칙에 의한 학위를 갖고 있는 자 -대학에서 박물관에 관한 과목에 대해 2년 이상 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의 직에 있었던 자 -10년 이상 학예원보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각 지자체의 교육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기타 문부대신이 전 각호에 제시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다고 인정한 자
무시험 인정방법	수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박물관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명시하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박물관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심사하여 시행한다.
무시험 인정 합격자	박물관 학력 및 경력 심사에서 합격한 자

IV. 국내 유관분야 자격제도 분석

1. 사서 자격증

사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정사서(1급/2급)와 준사서로 구분되며, 사서의 등급 및 자격 요건은 아래의 표의 내용과 같다.

<표 31> 사서의 등급 및 자격 요건

등급	자격 요건
1급 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 경력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 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고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2급 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사서 자격증 보유자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 (면적 330제곱미터이하) 사서직원 3인
- (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30제곱미터) 1인을 추가
- (장서가 6천권이상일 경우) 초과하는 6천권마다 1인을 추가

사서 자격의 경우 대학원 학위소지자는 준사서자격증 보유 및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1급(박사) 혹은 2급(석사)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특기사항이다.

2. 무대예술전문인

무대예술전문인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고 국립중앙극장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1,2,3급으로 나뉘며 3종의 전문분야(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기계)로 구분된다.

무대예술전문인의 취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1급 무대예술전문인

- ①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 2급 무대예술전문인

- ① 해당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직무 분야의 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급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3) 3급 무대예술전문인

-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②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직무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 보유자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 (객석 500석이상 800석미만)급수: 3급이상/자격종류별 1인
- (객석 800석이상 1천석미만)급수: 2급이상/자격종류별 1인 이상
- (객석 1천석이상)급수: 1급/자격종류별 1인 이상

3.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등급은 없으며 6종의 전문분야(보수, 실측·설계,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로 구분된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청을 대신하여 수리현장을 감독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연1회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보유자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시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채용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4.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등급은 없으며 18종의 전문분야(한식목공(대목수, 소목수), 한식석공(가공석공, 쌓기석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공, 철물공, 조각공(목조각공, 석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훈증공, 보존처리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박제 및 표본제작공)로 구분된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연 1회 실시하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보유자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시에 반드시 해당분야 2인 이상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채용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5.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이다.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뉜다.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보면 먼저 1급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필수 10, 선택 4)을 이수한 후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이다.

2급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과 사회복지 관련교과목(필수 10, 선택 4)을 이수한 자 이다.

3급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즉, 현행 제도에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은 국가공인시험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 2급과 3급의 경우 학력별로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양성교육기관에서 6주에서 24주 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05년에는 약 20,000명(이중 1급이 5,000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사라는 직종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전문성 없는 직종’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 과잉 공급에 대한 지적은 학예사 제도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현재에도 수요량의 약 5배에 달하는 학예사의 과잉 공급을 조절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와 같이 학예사도 ‘전문성 없는 직종’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며, 자격 제도의 본래의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6. 교 사

교원자격증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고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등급의 구분은 없으며, 그 학력과 전공에 따라 실기교사, 양호교사, 사서교사 등으로 종류가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제도는 초등교원양성과 중등교사양성이 중심으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초등교원양성은 국립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목적형 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중등교사 양성은 목적형의 사범대학과 개방형의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절충형 체제를 가지고 있다. 즉, 중등교사는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사범계 학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에서 양성되고 있다.

최근 교사양성기관의 지나친 다원화는 개방형 양성체제의 장점을 살린다고보다는 교직의 전문성과 교사양성기관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예비교사를 양산하여 교사 수급상의 차질을 빚게 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교사양성기관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양한 교사양성기관 졸업생들에게 교사자격증이 자동적으로 수여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양성기관간의 질적 격차는 동일한 자격을 갖는 교사들 중에도 그들의 자질과 능력에 있어 심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3 장 학예사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I. 규범론적 분석

1. 규범의 연혁적 분석

1998년 12월 3일에 발의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처음 도입되었는 바, 당시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21세기 文化의 時代 도래에 效果的으로 대처하고 博物館 및 美術館을 核心的인 文化 基盤施設로 育成하기 위해 博物館·美術館의 登錄對象 擴大, 運營의 效率化 및 經營合理化 與件을 마련하고 從前의 規制 條項을 緩和하는 등 既存 法律上의 未備點을 補完함으로써 博物館, 美術館 文化의 暢達에 寄與하고자 全面 改正하는 것임”

그리고 주요 골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 개정안에서 “博物館 및 美術館 專門職員 資格制를 일정한 經歷과 資格要件을 갖출 경우, 소정의 節次에 따라 “博物館(美術館) 學藝士”資格證을 교부(案 第6條)”하고자 하였다.

당시 개정안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고,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는데 현행 규정과 큰 차이가 없다.

[시행 2000. 2. 9] [법률 제5928호, 1999. 2. 8, 전부개정]	[시행 2010.3.10] [법률 제9763호, 2009.6.9, 타법개정]
제 6 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제 6 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

[시행 2000. 2. 9] [법률 제5928호, 1999. 2. 8, 전부개정]	[시행 2010.3.10] [법률 제9763호, 2009.6.9, 타법개정]
<p>“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학예사는 1급정학예사, 2급정학예사, 3급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회의 윤리강령과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p>

또한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²⁾

“개정안 제6조에서는 博物館 및 美術館에 專門職으로서 새로이 博物館·美術館 學藝士를 두도록 하고 學藝士의 구분, 資格制度의 시행 방법·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學藝士制度和 유사한 制度로서는 현재 研究職 및 指導職 公務員의任用 등에 관한 규정(大統領令 제15131호, '96. 7.31)에 의하여 公務員으로 임용하는 學藝職(學藝研究館 및 學藝研究士)制度가 있으며, 이와 별개로 현행법 제6조에서는 “專門職員”制度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국가에서 전문성을 인정하여 資格을 부여하는 制度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專門人으로서 學藝士의 양성과 資格制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박물관 및 미술관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에 이를 반영한 것은 바람직한 제도의 도입으로 사료된다.

62)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5090

현행법상의 “專門職”은 425명(國立博物館 및 美術館 146명, 公立博物館 및 美術館 97명, 私立博物館 및 美術館 182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시행령(제6조)상의 요건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博物館등의 근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전문대학졸업자로서 博物館등의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者” 등의 경우에도 專門職으로 등록할 수 있어,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문 “學藝士”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博物館, 美術館의 學藝士는 단순한 資料의 蒐集, 保存, 管理뿐만 아니라, 資料에 대한 가치판단의 업무를 맡게 되고 이는 국민의 문화 수준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상응한 교육과정의 이수 등 資格要件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에게 資格試驗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미국의 博物館·美術館들은 대부분 學藝士는 박사학위 소지자, 準學藝士는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文化行政이 체계화되어 學藝職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인 바, 中央行政機關 및 각 地方自治團體의 文化藝術 및 文化財 相關분야는 물론 사회의 각종 文化施設 분야에도 學藝士 資格을 가진 專門人力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博物館 및 미술관계에서는 國·公立 博物館 및 美術館의 館長은 學藝職으로 보임하도록 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館長의 직위는 專門分野 能力에 더하여 經營管理 能力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特定分野出身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제도의 운영 현황

현행 학예사 제도와 그 운영은 제2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관련규정

법률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9. 2. 8 공포)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규정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 규정과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있다.

학예사자격증 교부는 1년에 2차례(4월, 10월)에 신청서 접수후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발급된다.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총 10명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국·공·사립 및 대학박물관 관장 또는 실장, 관련분야학회장 그리고 구성비율로서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여성위원이 34%이상, 시민단체 추천위원 20%이상, 지방거주 위원이 20%이상 위촉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5기 운영위원회가 운영중이다.

역할은 매년 시행하는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학예사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와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이 있다. 준학예사자격시험은 1년에 1차례(12월 첫째주 일요일) 시행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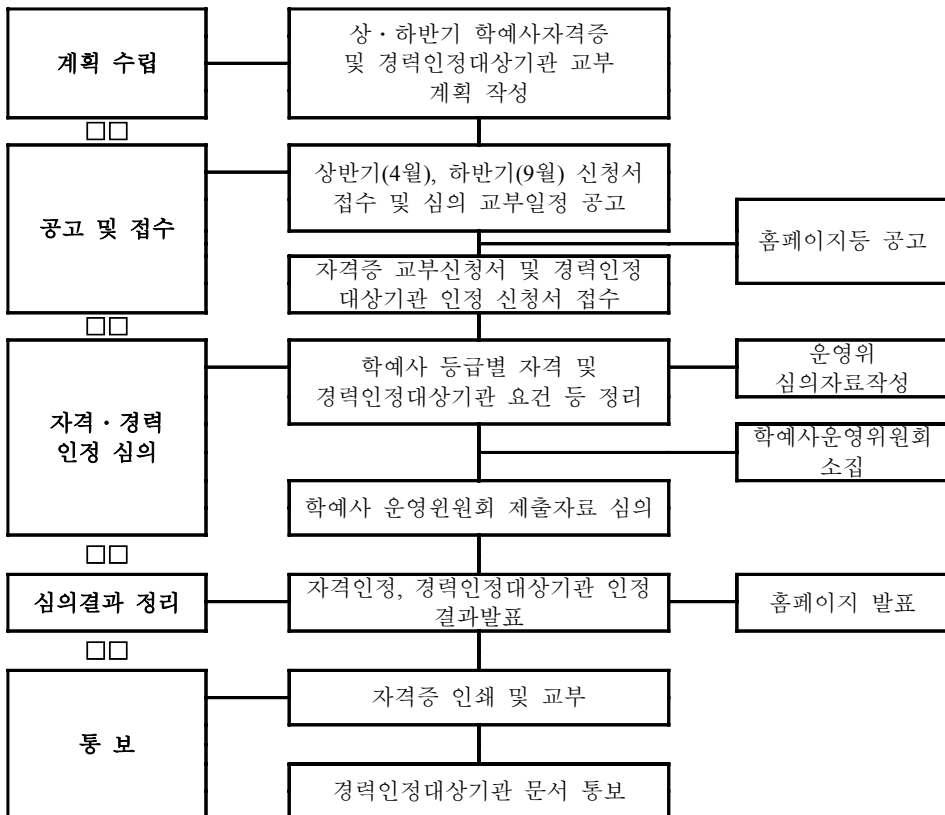
정학예사는 1급 : 2급 자격취득 후 경력인정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이며, 2급은 : 3급 자격취득 후 재직경력 5년 이상인 자, 3급 :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이다. 마지막으로 준학예사는 자격취득 후 재직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준학예사 자격증 취득은 준학예사자격시험 합격 및 경력인정기관실무경력(1~5년)으로 실무경력은 학사 1년, 전문학사 3년, 고졸이하 5년으로 차등해서 발급하고 있다.

준학예사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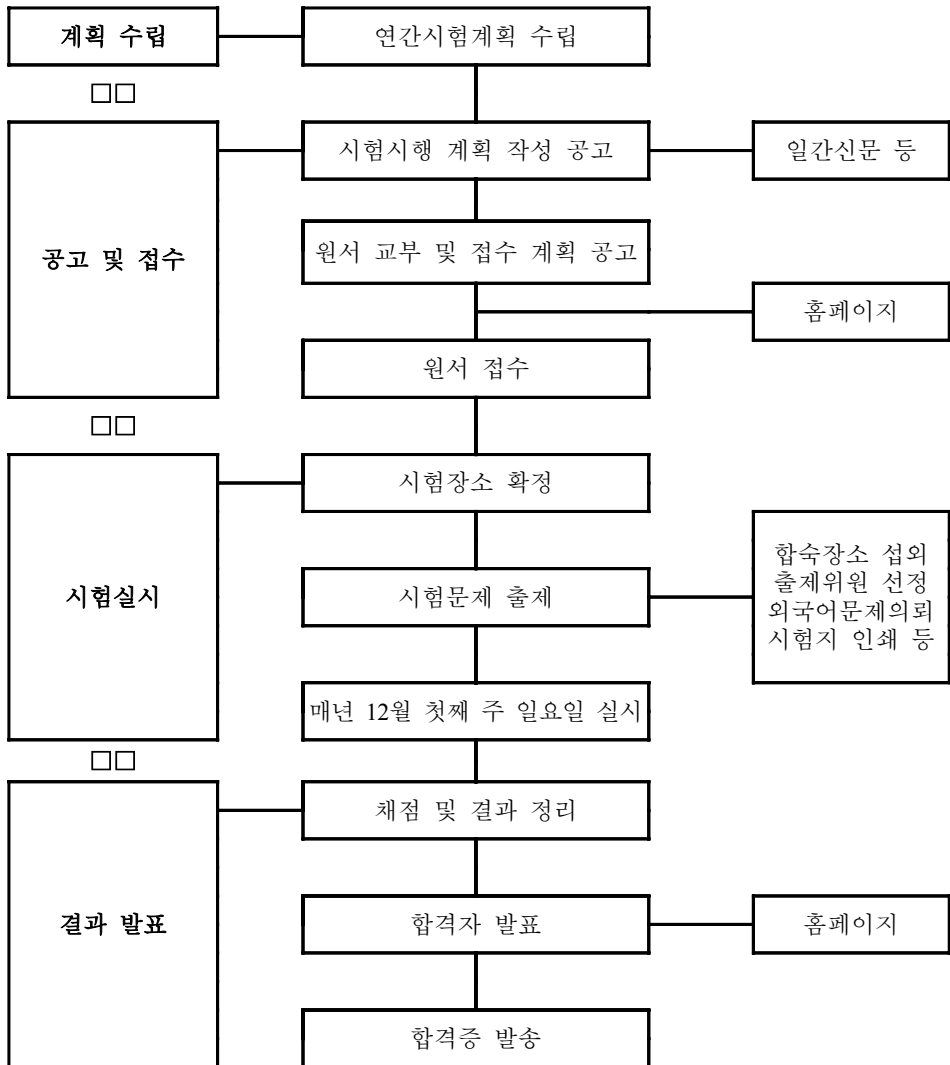
- 공통과목(객관식/2과목) : 박물관학, 외국어(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한문,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 선택과목(주관식/2과목) :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서지학, 한국사, 인류학, 자연사, 과학사, 문화사, 보존과학, 전시기획론
- 합격기준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다. 자격제도 업무 처리절차 및 흐름도

1) 학예사자격증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인정 흐름도



2) 준학예사 자격시험 흐름도



3. 평 가

규범의 연혁 분석과 운영 결과는 문화적 영역의 특성상 단순히 계량화 하여 비교 검토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도의 도입 근거와 그 운

영 경과를 보았을 때 적어도 도입 당시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지 않은가 판단된다. 물론 달성의 정도나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비판적 인식, 보다 나은 입법 대안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판단 지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규범론적 분석에 있어 체계 정합성의 문제는 학예사 제도가 사실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단행법에만 존재하고 있고 마땅히 비교 대상이 될만한 자격제도가 없어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입법 형식에 있어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들이 타당하게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에서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자격 종류나 자격 요건은 정책적 고려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자격증 제도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에 관한 제도와 결부가 된다면 체계 정합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II. 전문가 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 조사 필요성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시행중인 학예사 자격제도의 규범적 내용과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의 목적

조사의 목적은 학예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및 문제점 파악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예사 자격제도가 박물관·미술관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를 두도록 하였으나, 그 제도 내용이 학예사자격증 취득자와 현 박물관·미술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와 맞지 않는 등 체계적이지 못하여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예사 자격제도의 개정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제도의 수범자인 관련 전문가 및 인력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실효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장 적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3) 조사 방법

박물관·미술관장 등 전문직과 학예사 자격소지자들에 대한 설문은 질문양이 많고 보다 심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으로 응답자들의 신중한 설명을 이끌어 낼 필요 있으므로 전화조사와 Web survey 방식을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양이 비교적 적은 관련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전화조사를 채택, 조사 편의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표본 추출 대상은 할당 추출로 총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룹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사 관련 리스트를 활용, 조사대상자별 비례로 총 150명의 표본 추출
 - 그룹 1 : 박물관·미술관장 및 전문직. 박물관 협력망 회원가 입자 대상 (50명)
 - 그룹 2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및 준학예사자격시험 합격자 (50명)

- 그룹 3 : 박물관·미술관 관련분야 대학 및 대학원생 (50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3.1% 이며 조사 기간 : 2009. 7. 7.
 ~ 2009. 7. `11. (총 5일 간)이다.

4) 조사 내용

구 분	조사내용	조사대상
학예사 자격 취득 현황 및 의향	1) 학예사 자격증 보유 현황 - 자격증 보유 비율 - 자격증 보유 유형	Group 1 Group 2
	2) 학예사 자격 취득 의향 및 이유 - 향후 학예사 자격 취득 의향 - 자격 취득 의향/ 거부 이유	Group 1 Group 3
인턴 등 실무 경험	1) 인턴 경험 전반에 대한 의견 - 인턴 경험 유무 - 인턴 경험한 기관 및 담당 업무	Group 2 Group 3
	2) 실무 경험 내용 - 박물관 실무 이해와 관련한 인턴 경험의 유용성 - 인턴 경험 만족도 - 향후 원하는 실무 경력 유형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1)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 학예사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및 주요 문제점 - 학예사 명칭 규정에 대한 인식 - 학예사 자격 구분에 대한 인식 -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에 대한 인식 - 학예사 자격증 관리 기관에 대한 인식	ALL
	2) 학예사 승급제도 인식 및 개선안 - 현행 학예사 승급제도의 문제점 - 현행 학예사 승급제도의 변화 필요성 - 각 학예사 승급제도 개선 방향	Group 2

제 3 장 학예사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구 분	조사내용	조사대상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개선	1) 전문학예사 제도 - 도입 필요성 및 이유 - 제도 도입 시 주요 평가 요인	Group 1 Group 2
	2) 인증학예사 제도 - 도입 필요성 및 이유 - 자격 부여 방식 및 검증 요인 - 명칭 및 등급 구분 - 경력 인정 기관 및 기간에 대한 기준 - 관리 및 재교육 방식 및 관리 기관	
	3) 박물관 인력 교육에 대한 인식 - 참가 경험 및 개선 방향	ALL
	4) 학예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5) 응답자 구성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성별	남성	39.3 (59)	52.0 (26)	46.0 (23)	20.0 (10)
	여성	60.7 (91)	48.0 (24)	54.0 (27)	80.0 (40)
연령	20 ~ 29세	40.0 (60)	16.0 (8)	12.0 (6)	92.0 (46)
	30 ~ 39세	38.0 (57)	52.0 (26)	56.0 (28)	6.0 (3)
	40 ~ 49세	15.3 (23)	20.0 (10)	26.0 (13)	0.0 (0)
	50 ~ 59세	6.0 (9)	10.0 (5)	6.0 (3)	2.0 (1)
	60세 이상	0.7 (1)	2.0 (1)	0.0 (0)	0.0 (0)
전공	박물관학 일반	10.7 (16)	14.0 (7)	14.0 (7)	4.0 (2)
	박물관 경영 및 마케팅	7.3 (11)	8.0 (4)	4.0 (2)	10.0 (5)
	학예 연구 분야 (미술사, 역사학, 자연사, 과학사, 고고학, 문화사, 인류학, 민속학, 미술학, 서지학 등)	68.0 (102)	70.0 (35)	76.0 (38)	58.0 (29)
	박물관 전시 기획	3.3 (5)	4.0 (2)	0.0 (0)	6.0 (3)
	박물관 교육	1.3 (2)	4.0 (2)	0.0 (0)	0.0 (0)
	보존 과학 및 재질학	9.3 (14)	0.0 (0)	6.0 (3)	22.0 (11)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관련				

2. 학예사 자격 취득 여부 및 의향

가. 학예사 자격 취득 여부 및 의향

1) 학예사 자격 취득 여부

조사 대상자들의 약 53%가 정학예사 또는 준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 소지의 경우, 학예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79명 중 3급 정학예사 소지자들이 58명, 준학예사가 17명으로 대다수가 하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2급 정학예사로 상위 자격증 소지자의 설문 참여 비중 매우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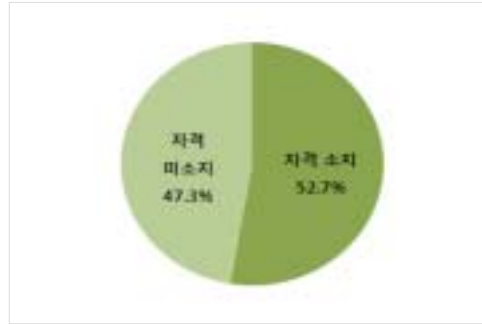
<표 32> 학예사 자격증 소지 여부

단위: % / (명)

		사례수	자격증 소지	
전 체		(150)	52.7	(79)
그룹별	그룹 1	(50)	58.0	(29)
	그룹 2	(50)	100.0	(50)
	그룹 3	(50)	0.0	(0)

<그림 6> 학예사 자격증 소지 여부

N= 150



<표 33> 학예사 자격증 보유 유형

단위: % / (명)

		사례수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전 체		(150)	5.1	(4)	73.4	(58)	21.5	(17)
그룹별	그룹 1	(50)	13.8	(4)	75.9	(22)	10.3	(3)
	그룹 2	(50)	0.0	(0)	72.0	(36)	28.0	(14)
	그룹 3	(50)	0.0	(0)	0.0	(0)	0.0	(0)

2) 학예사 자격증 취득 의향 및 이유

현재 학예사 자격증이 없는 71명 중 약 78%인 55명이 향후 학예사 자격증 취득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인 취득 의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예사 자격 취득의 이유로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것은 향후 박물관 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관련 분야 대학/ 대학원생 집단인 그룹 3에서 박물관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희망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 학예사 자격증 취득 의향

단위: % / (명)

		사례수	취득 의향 있음		취득 의향 없음	
전 체		(71)	77.5	(55)	22.5	(16)
그룹별	그룹 1	(21)	71.4	(15)	28.6	(6)
	그룹 3	(50)	80.0	(40)	20.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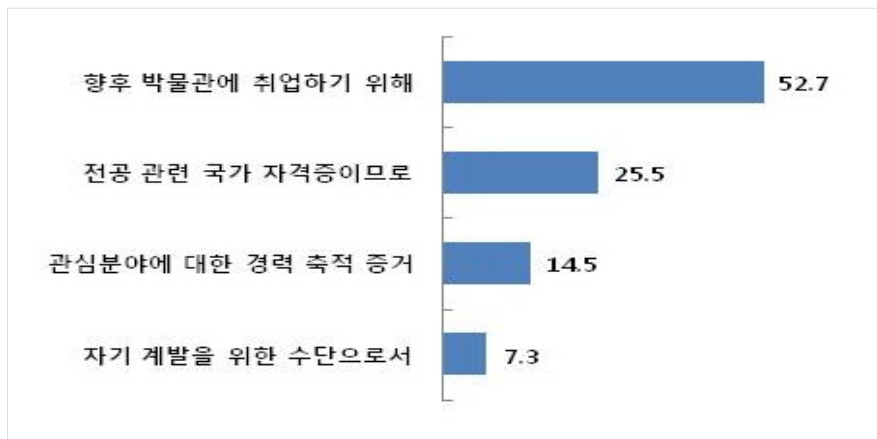
<표 35> 자격증 취득 의향 이유

단위: % / (명)

	전체 (55)	그룹 1 (15)	그룹 3 (40)
향후 박물관에 취업하기 위해	52.7 (29)	33.3 (5)	60.0 (24)
전공 관련 국가 자격증이므로	25.5 (14)	33.3 (5)	22.5 (9)
관심분야에 대한 경력 축적의 증거	14.5 (8)	20.0 (3)	12.5 (5)
자기 계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7.3 (4)	13.3 (2)	5.0 (2)

<그림 7> 자격증 취득 의향 이유 (%)

N= 55



향후에 박물관에 근무하는데 학예사 자격 취득이 없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 중 그룹 1에 속한 응답자 대부분은 박물관에서 일하는데 있어 자격증이 없어도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관련 전공 대학·대학원생 중 자격증 취득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박물관 취업 계획이 없거나(5명), 자격증이 없어도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다(3명)고 밝혔다. 자격증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 중 22%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6> 자격증 취득 거부 이유

단위: % / (명)

	전체 (16)	그룹 1 (6)	그룹 3 (10)
박물관 취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37.5 (6)	16.7 (1)	50.0 (5)
박물관 취업 시 자격증 유무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12.5 (2)	0.0 (0)	20.0 (2)
자격증이 없어도 현재 박물관에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50.0 (8)	83.3 (5)	30.0 (3)

3. 인턴 등 실무경험

가. 실무 경험 일반 정보

학예사 자격증 소지 집단인 그룹 2와 관련 전공 학생 집단 그룹 3의 응답자 총 100명 중 62%가 인턴 등 실무 경력을 쌓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그룹 2의 응답자 전원이 실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습 경력이 있는 응답자들의 약 35%가 대학 박물관에서 실무 경

험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는 사립박물관(24%), 국립박물관(19.4%)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박물관의 현황과 일치하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학생시절에 미리 실무경력을 습득하여 대학원 졸업 또는 준학예사자격시험 합격과 동시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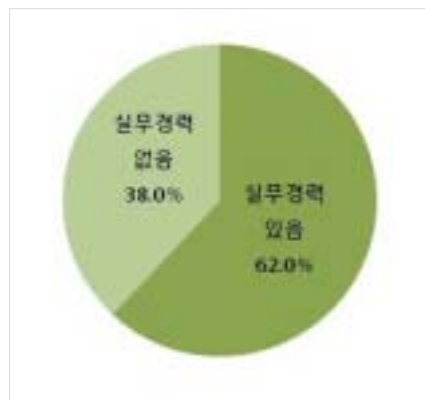
<표 37> 인턴 등 실무 경험

단위: % / (명)

		사례수	실무 경험 있음		실무 경험 없음	
전 체		(100)	62.0	(62)	38.0	(38)
그룹별	그룹 2	(50)	100.0	(50)	0.0	(0)
	그룹 3	(50)	24.0	(12)	76.0	(38)

<그림 8> 인턴 등 실무 경험

N= 100



<표 38> 인턴 실습 기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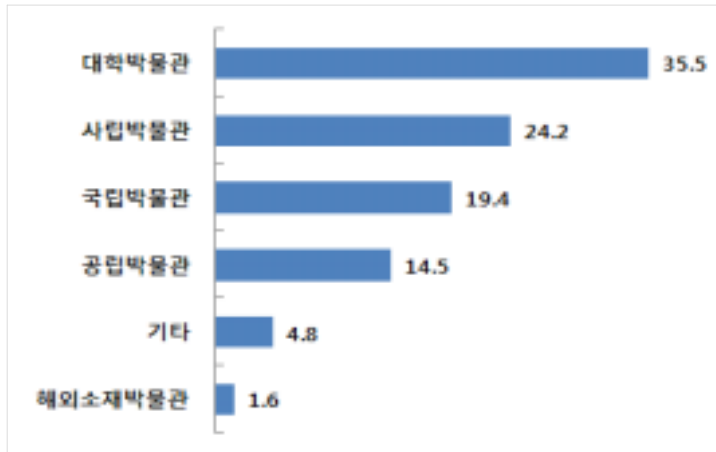
단위: % / (명)

제 3 장 학예사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전체 (62)	그룹 2 (50)	그룹 3 (12)
국립박물관	19.4 (12)	18.0 (9)	25.0 (3)
공립박물관	14.5 (9)	16.0 (8)	8.3 (1)
사립박물관	24.2 (15)	28.0 (14)	8.3 (1)
대학박물관	35.5 (22)	34.0 (17)	41.7 (5)
해외소재박물관	1.6 (1)	2.0 (1)	0.0 (0)
기타	4.8 (3)	2.0 (1)	16.7 (2)

<그림 9> 인턴 실습 기관 유형 (%)

N= 62



인턴 등 실무 경력을 쌓은 응답자들이 인턴 활동 등을 하면서 담당
한 업무는 주로 조사연구(18명), 등록 및 유물 관리(17명), 전시(13명)
순으로 나타난 바, 실제 학예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근무내용에 입각
하여 경험을 쌓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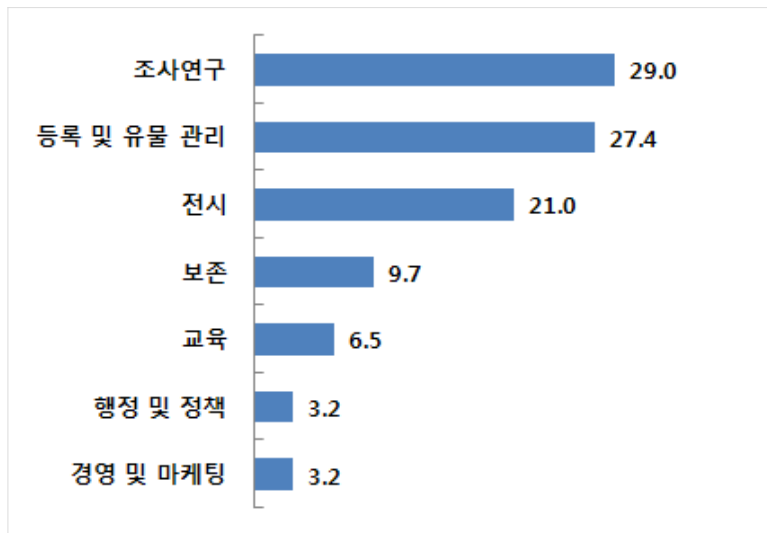
<표 39> 실무 경험 유형

단위: % / (명)

	전체 (62)	그룹 2 (50)	그룹 3 (12)
등록 및 유물관리	27.4 (17)	28.0 (14)	25.0 (3)
조사연구	29.0 (18)	32.0 (16)	16.7 (2)
보존	9.7 (6)	8.0 (4)	16.7 (2)
전시	21.0 (13)	20.0 (10)	25.0 (3)
교육	6.5 (4)	4.0 (2)	16.7 (2)
행정 및 정책	3.2 (2)	4.0 (2)	0.0 (0)
경영 및 마케팅	3.2 (2)	4.0 (2)	0.0 (0)

<그림 10> 실무 경험 유형 (%)

N= 62



나. 실습 경험 유용성 및 만족도

인턴 등 실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실무 경력이 박물관 업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5점 척도로 실무 경험의 유용성을 평가했을 때 평균 4.4점으로 인턴 실습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실무경험이 필요하다는데 예는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0> 실무 경험 유용성

단위: % / (명)

	전체 (62)	그룹 2 (50)	그룹 3 (12)
평균(점)	4.4	4.4	4.3
Top 2%	88.7 (55)	90.0 (45)	83.3 (10)

* Top 2%: 도움이 되었다 4 + 매우 도움이 되었다 5의 합

인턴 실습의 유용도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턴 실습의 만족도 또한 응답자의 약 73%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무 경험 유용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만족도 지표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론과 실제 박물관을 운영하는 실제부분이 다른데서 오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항을 조사해본 결과 실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자신의 인턴 경험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것으로 주어진 업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었으며(64.5%), 뒤를 이어 인턴 운영 매뉴얼의 부재 등 체계적인 관리 부족의 문제 및 적절한 편의 제공이나 처우 부족을 주요한 불만 사항으로 들고 있어 인턴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41> 실무 경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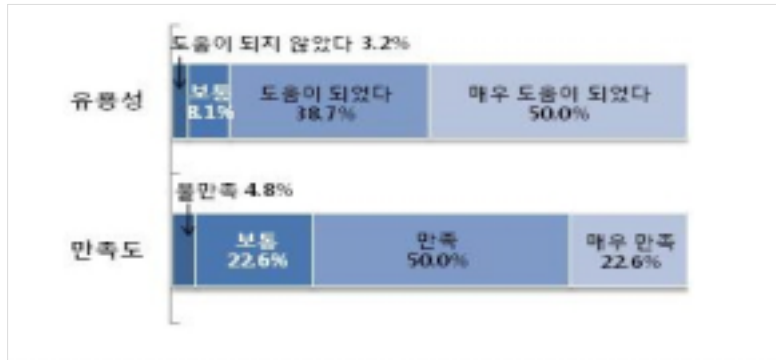
단위: % / (명)

	전체 (62)	그룹 2 (50)	그룹 3 (12)
평균(점)	3.9	4.0	3.7
Top 2%	72.6 (45)	76.0 (38)	58.3 (7)

* Top 2%: 만족스럽다 4 + 매우 만족스럽다 5의 합

<그림 11> 인턴 실습의 유용성 및 만족도 (%)

N= 62



<표 42> 실무 경험 불만족 요인 (복수응답)

단위: MA% / (명)

	전체 (62)	그룹 2 (50)	그룹 3 (12)
인턴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음	24.2 (15)	30.0 (15)	0.0 (0)
인턴 운영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음	59.7 (37)	70.0 (35)	16.7 (2)
맡겨진 업무가 명확하지 않았음	64.5 (40)	62.0 (31)	75.0 (9)
기존 인턴과 신입 인턴들 간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음	16.1 (10)	18.0 (9)	8.3 (1)
인턴 운영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	17.7 (11)	22.0 (11)	0.0 (0)
주차, 식사, 폐찰 착용 등 편의 제공이나 적절한 처우 부족	40.3 (25)	44.0 (22)	25.0 (3)
기대했던 것보다 인턴과정을 통해 얻는 실무경험 습득이 미흡	21.0 (13)	18.0 (9)	33.3 (4)
인턴 실습 시간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었음	29.0 (18)	36.0 (18)	0.0 (0)

<그림 12> 실무 경험 불만족 요인 (MA%)

N= 62



인턴실무실습자가 실무경험시 급여를 받은경우를 보면 실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약 61%가 실무 경험 시 급여를 받고 경력을 축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 급여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알 수 가없어 특히 사립박물관의 경우 박물관장의 재량에 의해 책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3> 유급 실무경험 여부

단위: % / (명)

	전체 (62)		그룹 2 (50)		그룹 3 (12)	
유급	61.3	(38)	68.0	(34)	33.3	(4)
무급	38.7	(24)	32.0	(16)	66.7	(8)

<그림 13> 유급 실무경험 여부

N= 62



다. 인턴 실습 의향

그룹 3 응답자 중에서 인턴 실습 경험이 없는 38명의 향후 희망 실무기관을 조사한 결과, 국립박물관에서 인턴 실습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63.2%(24명)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립박물관에서 학예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국립박물관에서 실무경험을 쌓는다면 어떤 분야에서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서는 전시, 등록 및 유물관리, 조사 연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4> 인턴 실습 희망 기관

단위: % / (명)

	그룹 3 (38)	
국립박물관	63.2	(24)
공립박물관	0.0	(0)
사립박물관	25.3	(2)
대학박물관	0.0	(0)
해외소재박물관	10.5	(4)
기타/ 무응답	21.1	(8)

<표 45> 희망 실무 경험 유형

단위: % / (명)

	그룹 3 (38)	
등록 및 유물관리	21.1	(8)
조사연구	21.1	(8)
보존	13.2	(5)
전시	23.7	(9)
교육	13.2	(5)
행정 및 정책	5.3	(2)
경영 및 마케팅	2.6	(1)

4. 현행 학예사 제도에 대한 인식

가.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 문. 현행 학예사 자격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 현행 학예사 자격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두 가지 골라주십시오.

현행 학예사 자격 제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72%가 현행 학예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 그룹에서 현 제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물관 현직에 종사하는 그룹 1과 학예사 자격 소지자들인 그룹 2에서 현재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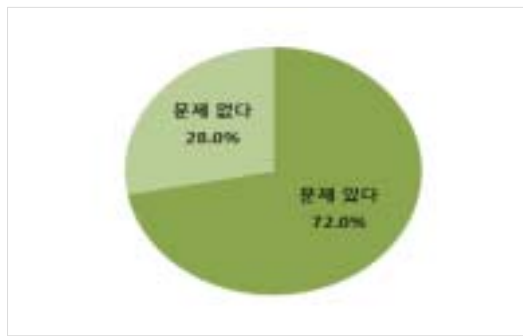
<표 46> 현행 학예사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

단위: % / (명)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문제 있다	72.0 (108)	84.0 (42)	72.0 (36)	60.0 (30)
문제 없다	28.0 (42)	16.0 (8)	28.0 (14)	40.0 (20)

<그림 14> 현행 학예사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

N= 150



현행 학예사 자격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학예사 자격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실제 박물관 등에서의 수요가 고려되지 않은 채 시험 등 자격제도를 통해서 대책 없이 자격증 소지자만을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룹 1 응답자는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적 비대 문제 외에 학예사라는 명칭의 제한으로 인해 실제로 박물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고려되지 않으며, 그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집단인 그룹 2 응답자들은 타 집단에 비해 현재 제도가 실수요에 비해 학예사들을 너무 많이 배출한다는 점에 가장 널리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외에도 실제 학예사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채용 의무화나 가산점이 부여 등 실제적인 이점이 없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관련 전공 대학/대학원생 집단인 그룹 3 응답자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실무 경력의 취득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정학예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박물관에서의 경력만 인정될 뿐, 연구소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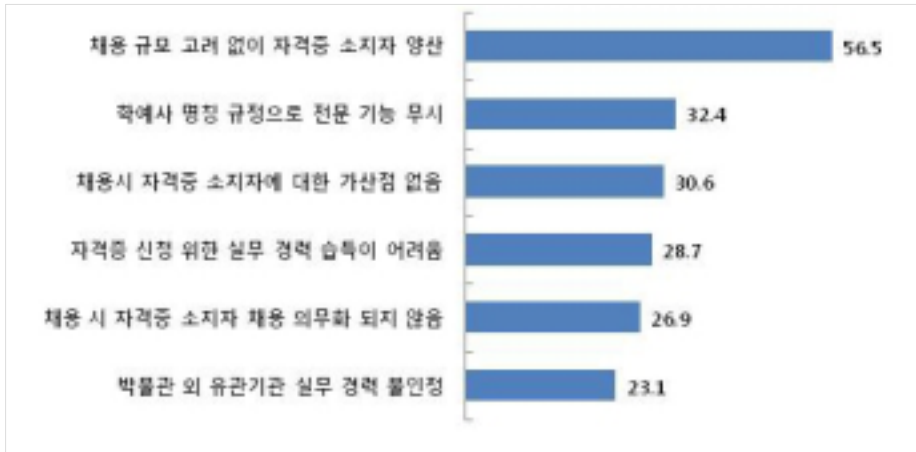
<표 47>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 문제점

단위: MA% / (명)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정학예사 취득 자격 요건으로 박물관 이외 유관 기관의 실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23.1 (25)	21.4 (9)	11.1 (4)	40.0 (12)
자격증 신청을 위한 실무 경력 습득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28.7 (31)	28.6 (12)	19.4 (7)	40.0 (12)
학예사 채용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격증 소지자만을 양산함	56.5 (61)	50.0 (21)	66.7 (24)	53.3 (16)
학예사라는 명칭 규정 때문에 학예 연구 기능 외 박물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기능 및 인력의 전문성 무시	32.4 (35)	50.0 (21)	22.2 (8)	20.0 (6)
학예사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26.9 (29)	21.4 (9)	41.7 (15)	16.7 (5)
학예사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가되지 않음	30.6 (33)	28.6 (12)	38.9 (14)	23.3 (7)

<그림 15> 현행 학예사 자격 제도 문제점 (MA%)

N= 150



나. 학예사 명칭 규정에 대한 인식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의 ‘학예사’라는 명칭 변경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의 ‘학예사’ 명칭 규정에 대해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룹 1에서는 학예사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예사 명칭을 변경할 경우, 전체 학예사에 대해 구분 없이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 통칭하는 방향보다는, 학예 연구직에 제한하여 “학예사” 명칭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명명하는 방향을 선호하였다.

<표 48> 학예사 명칭 변경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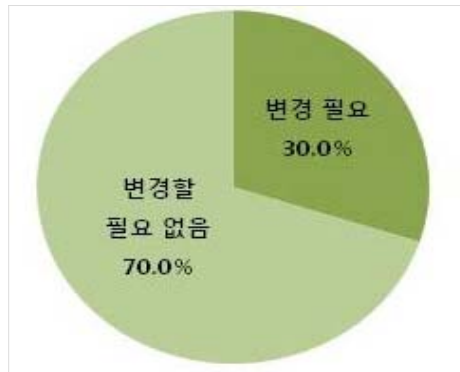
단위: % / (명)

제 3 장 학예사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변경해야 한다	30.0 (45)	44.0 (22)	22.0 (11)	24.0 (12)
변경할 필요 없다	70.0 (105)	56.0 (28)	78.0 (39)	76.0 (38)

<그림 16> 학예사 명칭 변경 필요성

N= 150



<표 49> 학예사 명칭 변경 방향

단위: % / (명)

	전체 (45)	그룹 1 (22)	그룹 2 (11)	그룹 3 (12)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 통칭	17.8 (8)	27.3 (6)	9.1 (1)	8.3 (1)
학예 연구직에 한해서 ‘학예사’ 명칭을 쓰고, 나머지 전문 학예사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명명	82.2 (37)	72.7 (16)	90.9 (10)	91.7 (11)

다. 학예사 자격 구분

현행 학예사 자격 구분이 바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1·2·3급 정학예사/준학예사로 구분되어 있는 자격 등급에 대해 응답자들의 약 67%가 현행 학예사 등급 구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박물관 현업에 종사하는 그룹 1과 2에 속한 응답자들이 각각 83%, 70% 비중으로 현행 등급 구분의 변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관련 대학·대학원생 집단인 그룹 3에서는 현재의 등급 제도를 유지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등급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공감하고 등급제 폐지 또는 존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른 설문결과를 보면 현행 학예사 등급 구분의 개선책으로서,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현재처럼 준학예사와 정학예사를 구분하되 정학예사 간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박물관 기능에 따른 주제 전문 학예사를 신설하는 방향에 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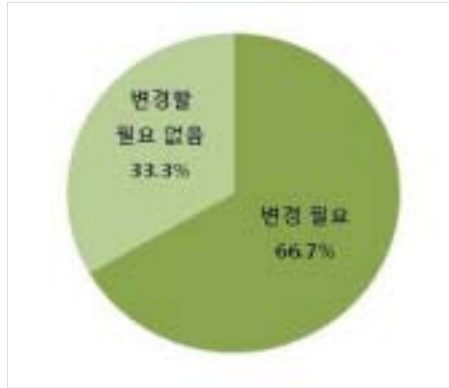
<표 50> 현행 학예사 자격 구분 변화 필요성

단위: % / (명)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변화해야 한다	66.7 (100)	86.0 (43)	70.0 (35)	44.0 (22)
변화할 필요 없다	33.3 (50)	14.0 (7)	30.0 (15)	56.0 (28)

<그림 17> 학예사 자격 구분 변화 필요성

N= 150



<표 51> 학예사 자격 구분 변화 방향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43)	그룹 2 (35)	그룹 3 (22)
구분 없이 “학예사”로 통칭	20.0 (20)	18.6 (8)	28.5 (10)	9.1 (2)
준학예사/정학예사/기능 별 전문 학예사를 구분하되 정 학예사 등급 구분을 폐지	77.0 (77)	81.4 (35)	62.9 (22)	90.9 (20)
준학예사 제도를 폐지하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	1.0 (1)	0.0 (0)	2.9 (1)	0.0 (0)
모름/ 무응답	2.0 (2)	0.0 (0)	5.7 (2)	0.0 (0)

라.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

문. 현행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학예사자격증 부여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71%가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답변집단을 분석해 보면 그룹 1 응답자들의 변화 필요 긍정 응답이 96%로, 현행

자격 부여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널리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 그룹 3의 응답자들은 현 자격 부여 방식에 대해 변화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58%로 다소 우세한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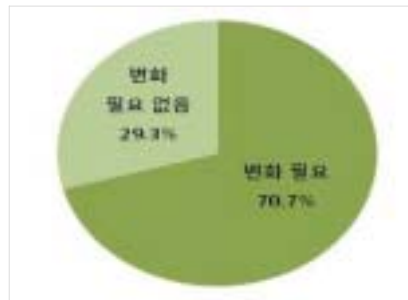
<표 52>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 변화 필요성

단위: % / (명)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변화 필요하다	70.7 (106)	96.0 (48)	74.0 (37)	42.0 (21)
변화 필요 없다	29.3 (44)	4.0 (2)	26.0 (13)	58.0 (29)

<그림 18>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 변화 필요성

N= 150



구체적으로 부여방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학예사 자격을 부여할 때, 그룹 1과 2의 응답자들은 학력을 기준으로 우선 구분 후, 각각에 실무 경력을 요구하여 심사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그룹 3의 응답자들은 학력을 기준으로 우선 구분하는 안에는 동의하지만,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 경력 습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우선 자격을 취득한 뒤 추후 실무 경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응답 결과와 일치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자격증 취득시 선결조건인 실무경력을 자격증 부여 후에 실무 경력기간을 축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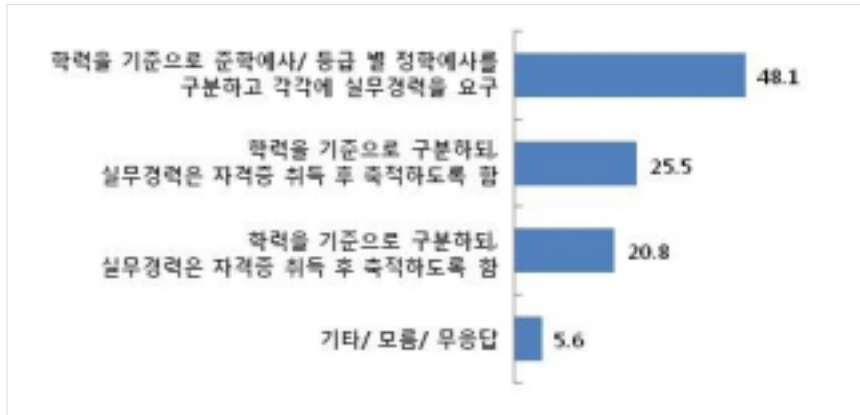
<표 53>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 변화 방향

단위: % / (명)

	전체 (106)	그룹 1 (48)	그룹 2 (37)	그룹 3 (21)
학력을 기준으로 준학예사는 전문 학사 소지자, 3급 정학예사는 학사 소지자, 2급 정학예사는 석사 소지자, 1급 정학예사는 박사 소지자로 구분하고 각각에 실무 경력 요구하여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	48.1 (51)	54.2 (26)	48.6 (18)	33.3 (7)
학력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실무 경력 습득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자격증을 우선 부여한 뒤 실무 경력을 축적하도록 함	25.5 (27)	16.7 (8)	21.6 (8)	52.4 (11)
준학예사의 경우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학점 은행제 등을 활용하여 필수과목 이수 시 자격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	20.8 (22)	27.1 (13)	16.2 (6)	14.3 (3)
기타	4.7 (5)	2.1 (1)	10.8 (4)	0.0 (0)
모름/ 무응답	0.9 (1)	0.0 (0)	2.7 (1)	0.0 (0)

<그림 19>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 변화 방향

N= 106



마. 학예사 자격증 관리 업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예사 자격증 관리 업무를 향후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하는 질문에서는 학예사 자격증을 담당하는 데 적절한 부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재 담당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 응답자 비율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며, 기타 응답 비율과도 큰 차이 없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예사 자격증 소지 집단인 그룹 2에서 상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자격증 관리 업무를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발급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 부서활용 부분에서는 정책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부서인 국립중앙박물관이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4> 학예사 자격 관리 담당 기관

단위: % / (명)

제 3 장 학예사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현재 담당기관 유지	26.7 (40)	22.0 (11)	28.0 (14)	30.0 (15)
한국박물관협회	22.0 (33)	30.0 (15)	8.0 (4)	28.0 (14)
문화재청	23.3 (35)	20.0 (10)	20.0 (10)	30.0 (15)
문화체육관광부	28.0 (42)	28.0 (14)	44.0 (22)	12.0 (6)

바. 학예사 승급제도에 대한 인식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이루어진 그룹 2를 대상으로 승급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다. 그룹 2 응답자들은 현행 학예사 승급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승급을 위해 필요한 실무 경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실무 경력을 심사할 때 근무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기간만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행 학예사 승급제도에 대해 그룹 2 응답자들의 7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학예사 승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승급에 필요한 실무경력이 내용의 질과 함께 의미도 역시 평가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단순 특별전 기간만을 평가하여 정성적인 평가가 아닌 정량적인 평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실무경력을 쌓을 경우에 업무내용에 따른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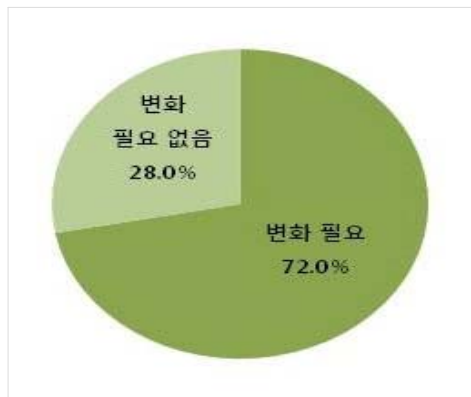
<표 55> 학예사 승급제도 변화 필요성

단위: % / (명)

	그룹 2 (50)	
변화 필요하다	72.0	(36)
변화 필요 없다	28.0	(14)

<그림 20> 학예사 승급제도 변화 필요성

N=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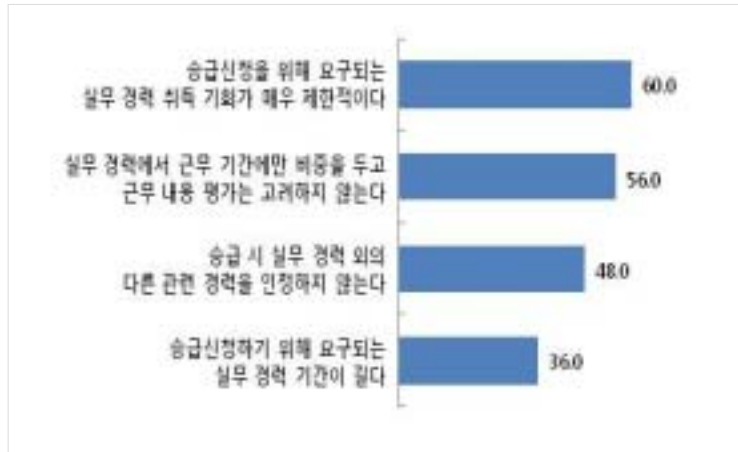
<표 56> 학예사 승급제도의 문제점 (복수응답)

단위: MA% / (명)

	그룹 2 (50)
승급신청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무 경력 기간이 길다	36.0 (18)
승급 시 실무 경력만 고려할 뿐 다른 관련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48.0 (24)
승급신청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무 경력의 취득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60.0 (30)
실무경력 인정 시, 근무 기간에만 비중을 두고 근무 내용 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56.0 (28)

<그림 21> 학예사 승급제도의 문제점 (MA%)

N= 50



전반적으로 승급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은 한 쪽으로 수렴되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준학예사 승급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경력인정대상 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다소 비중이 높으나, 기타 응답과 큰 차이 없었으며

3급 정학예사 승급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 또한 준학예사 제도 개선 방향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이 고루 나타났다.

한편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시험을 통해 준학예사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서 3급 정학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타나, 승급을 위한 실무 경력 축적이 제한되어 있다는 어려움과 통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7> 준학예사 승급제도 변화 방향

단위: % / (명)

	그룹 2 (36)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교부	25.0	(9)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 경력 2년 이상일 때 심사를 통해 교부	30.6	(11)
학사/전문학사학위 취득과 관계없이 국립박물관 주관 학점은행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 심사를 통해 교부	25.0	(9)
현행 준학예사 승급제도 유지	19.4	(7)

또한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시험을 통해 준학예사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서 3급 정학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타나, 승급을 위한 실무 경력 축적이 제한되어 있다는 어려움과 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58> 3급 정학예사 승급제도 변화 방향

단위: % / (명)

	그룹 2 (36)	
준학예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교부	5.6	(2)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교부	25.0	(9)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 경력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교부	22.2	(8)
해당분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실무 경력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교부	22.2	(8)
현행 3급 정학예사 승급제도 유지	25.0	(9)

2급 정학예사 승급제도의 적절한 개선 방향으로서,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정도의 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1급 정학예사 승급제도의 적절한 개선 방향으

로서, 2급 정학예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학력보다는 실무 경력 축적을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소한의 학력과 함께 체계적으로 실무경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표 59> 2급 정학예사 승급제도 변화 방향

단위: % / (명)

	그룹 2 (36)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을 교부	5.6	(2)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을 교부	44.4	(16)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수료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을 교부	27.8	(10)
현행 2급 정학예사 승급제도 유지	22.2	(8)

<표 60> 1급 정학예사 승급제도 변화 방향

단위: % / (명)

	그룹 2 (36)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을 교부	5.6	(2)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하고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을 교부	16.7	(6)
2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을 교부	47.2	(17)
현행 1급 정학예사 승급제도 유지	30.6	(11)

5.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개선

가. 전문학예사 제도

전문학예사 제도에 대해 약 70%의 응답자들이 도입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그룹 1 응답자들의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예사자격증 취득시 전문분야에 대한 명시를 일반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학예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취득하기를 원하는 분야로서는 조사·연구와 교육부분의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 전문학예사 제도 도입

(): 사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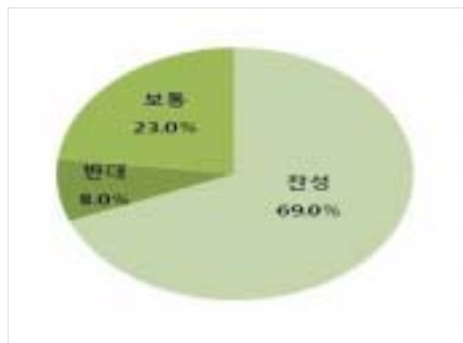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찬성(Top 2%)	69.0 (69)	74.0 (37)	64.0 (32)
반대(Bottom 2%)	8.0 (8)	4.0 (2)	12.0 (6)
평균(점)	3.9	4.0	3.7

* Top 2%: 찬성한다 4 + 매우 찬성한다 5의 합

Bottom 2%: 반대한다 2 + 매우 반대한다 1의 합

<그림 22> 전문학예사 제도 도입

N=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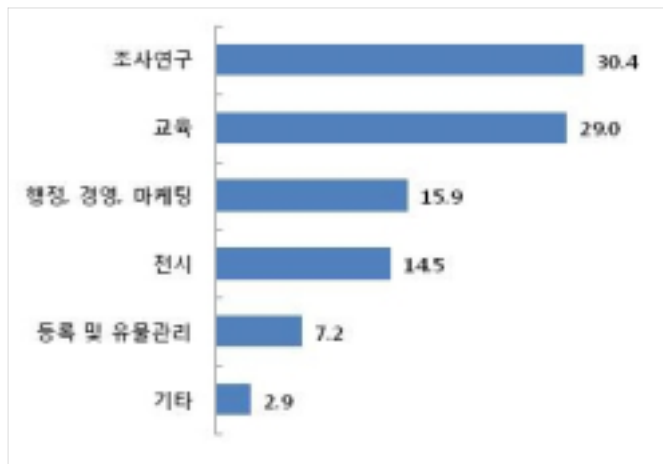
<표 62> 전문학예사 취득 의향 분야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조사연구	30.4	(21)	21.6	(8)	40.6	(13)
교육	29.0	(20)	29.7	(11)	28.1	(9)
전시	14.5	(10)	16.2	(6)	12.5	(4)
등록 및 유물 관리	7.2	(5)	5.4	(2)	9.4	(3)
행정, 경영, 마케팅	15.9	(11)	21.6	(8)	9.4	(3)
기타	2.9	(2)	5.4	(2)	0.0	(0)

<그림 23> 전문학예사 취득 의향 분야

N= 100



전문학예사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박물관 인력 채용 시 각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8개 요인을 놓고 5점 척도로 중요도 응답하는 과정에서 전문학예사 채용에 있어 박물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 능력과 소장품에 대한 이해, 관련 전공 여부 및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능력으로 평가되었다.

박물관 협력망 가입 대상자 집단인 그룹 1에서는 특히 박물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능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96%로 매우 높

으며, 기관의 특성 및 행정 이해도와 보고서 작성 능력도 채용 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예사 자격증 소지 집단인 그룹 2 응답자들은 전문학예사 채용 시 박물관 관련분야를 전공했는지 여부 등 전문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86%로 그룹 1에 비해 10%p 높게 나타나며, 행정 프로세스 등에 대한 이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표 63> 전문학예사 제도 도입 시 각 능력별 중요도

(): 사례 수

		박물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관련 소장품에 대한 이해	박물관 관련분야 전공 여부 등 전문성	박물관 실무 경력	외국어 능력	기관 특성 및 행정에 대한 이해	기획서/보고서 작성 능력	프리젠테이션 능력
전체 (100)	중요도 (Top 2%)	93.0(93)	91.0(91)	81.0(81)	79.0(79)	30.0(30)	70.0(70)	75.0(75)	48.0(48)
	평균(점)	4.5	4.4	4.2	4.1	3.2	3.9	3.9	3.5
그룹 1 (50)	중요도 (Top 2%)	96.0(48)	92.0(46)	76.0(38)	78.0(39)	40.0(20)	82.0(41)	80.0(40)	52.0(26)
	평균(점)	4.5	4.4	4.1	4.1	3.3	4.0	4.0	3.5
그룹 2 (50)	중요도 (Top 2%)	90.0(45)	90.0(45)	86.0(43)	80.0(40)	20.0(10)	58.0(29)	70.0(35)	44.0(22)
	평균(점)	4.4	4.4	4.24	4.1	3.1	3.7	3.8	3.5

* Top 2%: 중요하다 4 + 매우 중요하다 5의 합

<그림 24> 전문학예사 제도 도입 시 각 능력별 중요도



나. 인증학예사 제도

1)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찬반 의견

준학예사 또는 정학예사 취득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학예사 자격증을 갖지 못한 전문 인력을 위해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수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학예사 자격증 소지 집단인 그룹 2 응답자들이 인증학예사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비중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인증학예사 제도를 통해서 기존 학예사 자격 조건의 주요 요인인 학력 조건 등 보다는 박물관 실무 경력 및 유사 경력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표 64> 인증학예사 도입 찬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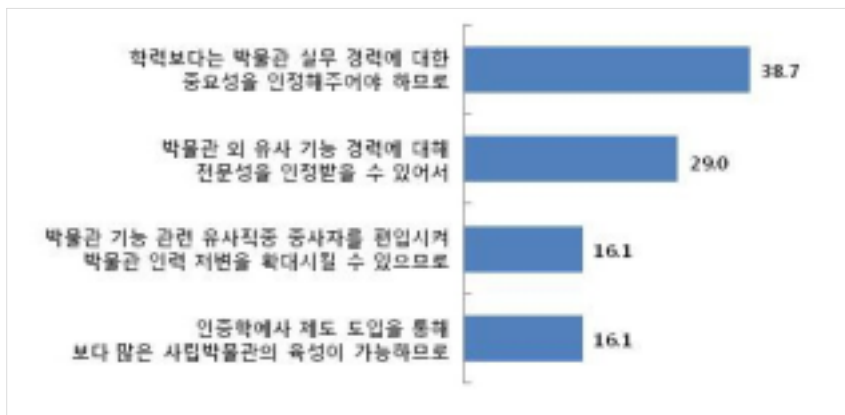
II. 전문가 조사

단위: % / (명)

	전체 (31)	그룹 1 (23)	그룹 2 (8)
박물관 외 유사 기능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29.0 (9)	21.7 (5)	50.0 (4)
학력보다는 박물관 실무경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므로	38.7 (12)	43.5 (10)	25.0 (2)
박물관 기능과 관련된 유사 직종 종사자를 편입시켜 박물관 인력 저변을 확대할 수 있어서	16.1 (5)	17.4 (4)	12.5 (1)
인증학예사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립박물관을 육성할 수 있으므로	16.1 (5)	17.4 (4)	12.5 (1)

<그림 25> 인증학예사 도입 찬성 이유 (%)

N= 31



<표 65>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 사례 수

제 3 장 학예사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찬성(Top 2%)	31.0 (31)	46.0 (23)	16.0 (8)
반대(Bottom 2%)	50.0 (50)	38.0 (19)	62.0 (31)
평균(점)	2.8	3.1	2.4

* Top 2%: 찬성한다 4 + 매우 찬성한다 5의 합

Bottom 2%: 반대한다 2 + 매우 반대한다 1의 합

<그림 26>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N= 100



반면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인증학예사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기존 학예사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무 인력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었을 때, 학예사 고유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인증학예사 제도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66> 인증학예사 도입 반대 이유

단위: % / (명)

	전체 (50)	그룹 1 (19)	그룹 2 (31)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14.0 (7)	21.1 (4)	9.7 (3)
인증학예사 제도의 남발로 인해 학예사 본래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64.0 (32)	63.2 (21)	64.5 (20)
기존 제도를 통과해서 자격을 부여받은 학예사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10.0 (5)	5.3 (1)	12.9 (4)
인증학예사 제도의 유지 및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4.0 (2)	5.3 (1)	3.2 (1)
박물관 실무경력이 없기 때문에	2.0 (1)	5.3 (1)	0.0 (0)
기타	6.0 (3)	0.0 (0)	9.7 (3)

<그림 27> 인증학예사 도입 반대 이유 (%)

N= 50



2) 인증학예사 자격 부여 및 검증 요인

인증학예사 제도에도 준학예사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시험이 필요한지 등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검증되어야 할 부분을 고르는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시 기존 준학예사 제도와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

지하였다.

<표 67> 인증학예사 자격시험 필요성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시험 필요하다	53.0 (53)	50.0 (25)	56.0 (28)
시험 필요 없다	30.0 (30)	38.0 (16)	22.0 (11)
잘 모르겠다	17.0 (17)	12.0 (6)	22.0 (11)

<그림 28> 인증학예사 자격시험 필요성

N= 100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시 가장 중요하게 검증되어야 할 요인으로서, 응답자들의 60%가 박물관 관련 분야 전공 여부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학예사 자격 소지 집단인 그룹 2에서 전문성 요인에 대한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로 그룹 1의 46%에 대비되며,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으로 인해 학예사 본연의 전문성 훼손을 우려하는 집단 전반의 태도와 일치하는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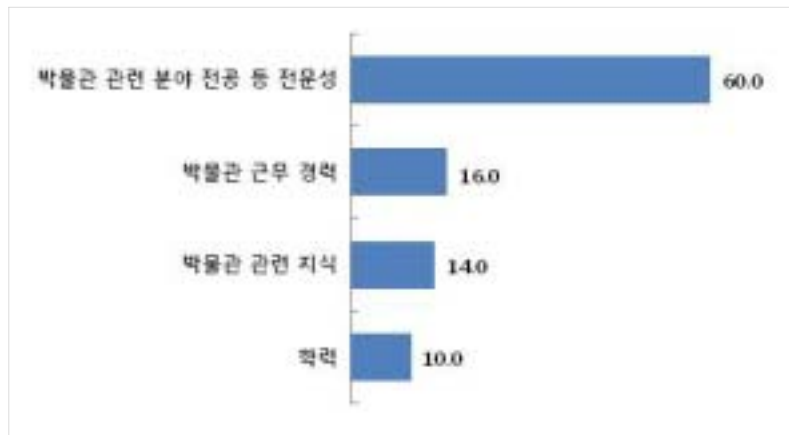
<표 68> 인증학예사 검증 요인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학력	10.0 (10)	14.0 (7)	6.0 (3)
박물관 관련 지식	14.0 (14)	20.0 (10)	8.0 (4)
박물관 근무 경력	16.0 (16)	20.0 (10)	12.0 (6)
박물관 관련 분야 전공 등 전문성	60.0 (60)	46.0 (23)	74.0 (37)

<그림 29> 인증학예사 검증 요인 (%)

N= 100



3) 인증학예사 명칭 및 등급 구분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1~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라는 자격 명칭 외에 별도로 “인증학예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학예사들과 별도의 명칭인 “인증학예사”로 명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인증학예사 제도에 대해 등급 구분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표 69> 인증학예사 별도 명칭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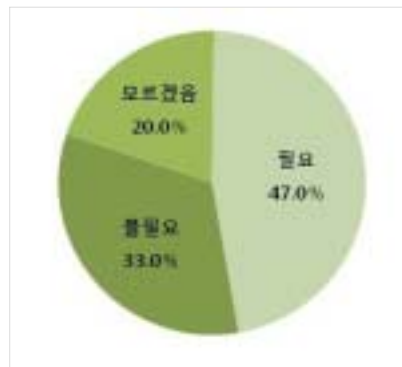
단위: % / (명)

제 3 장 학예사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인증학예사” 명칭 사용	47.0 (47)	48.0 (24)	46.0 (23)
“인증학예사” 명칭 불필요	33.0 (33)	34.0 (17)	32.0 (16)
잘 모르겠다	20.0 (20)	18.0 (9)	22.0 (11)

<그림 30> 인증학예사 별도 명칭 사용

N= 100



<표 70> 인증학예사 등급 구분 필요성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등급 구분 필요	31.0 (31)	28.0 (14)	34.0 (17)
등급 구분 불필요	51.0 (51)	56.0 (28)	46.0 (23)
잘 모르겠다	18.0 (18)	16.0 (8)	20.0 (10)

<그림 31> 인증학예사 등급 구분 필요성

N= 100



4) 인증학예사 경력 인정 기준

인증학예사 자격 부여 시 유사 경력 인정 기관으로서 적절한 곳으로 박물관 기능 관련 연구소 및 박물관 및 미술관과 유사한 문화예술 기관이라는 응답 비중 매우 높게 나왔으며, 특히 학예사 자격 소지 집단인 그룹 2의 응답자들은 박물관·미술관과 유사한 문화예술기관이 경력 인정 기관으로서 적절하다는 응답 비중이 그룹 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71> 인증학예사 근무 경력 인정 대상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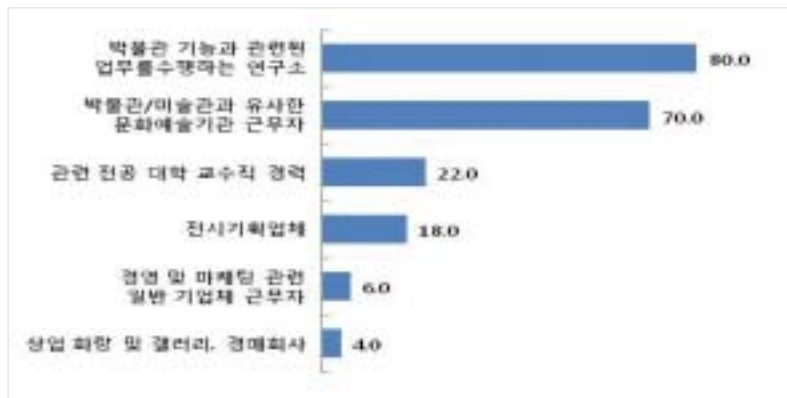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전시기획업체	18.0 (18)	22.0 (11)	14.0 (7)
박물관 및 미술관과 유사한 문화예술기관 근무자	70.0 (70)	64.0 (32)	76.0 (38)
관련 전공 대학 교수직 경력	22.0 (22)	24.0 (12)	20.0 (10)
경영 및 마케팅 관련 일반 기업체 근무자	6.0 (6)	8.0 (4)	4.0 (2)
박물관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	80.0 (80)	80.0 (40)	80.0 (40)

제 3 장 학예사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하는 연구소			
상업 화랑 및 갤러리, 경매회사	4.0 (4)	2.0 (1)	6.0 (3)

<그림 32> 인증학예사 근무 경력 인정 대상 (MA%)



인증학예사 자격 부여 시 관련 경력 인정 기간으로 응답자의 80%가 10년 정도의 실무 경력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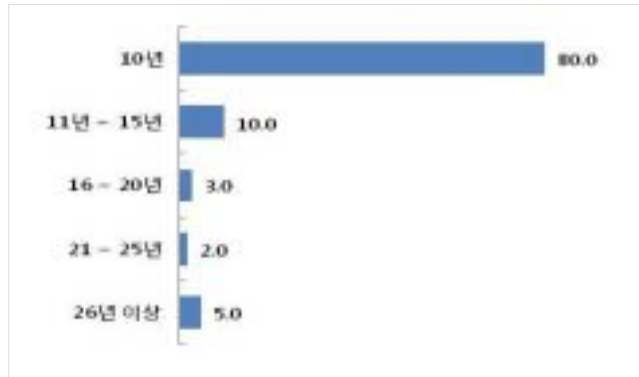
<표 72> 인증학예사 경력 인정 기간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10년	80.0 (80)	84.0 (42)	76.0 (38)
11 ~ 15년	10.0 (10)	6.0 (3)	14.0 (7)
16 ~ 20년	3.0 (3)	2.0 (1)	4.0 (2)
21 ~ 25년	2.0 (2)	2.0 (1)	2.0 (1)
26년 이상	5.0 (5)	6.0 (3)	4.0 (2)

<그림 33> 인증학예사 경력 인정 기간 (%)

N= 100



5) 인증학예사 관리/재교육 및 관리 기관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시 이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응답자들의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인증학예사 관리 및 재교육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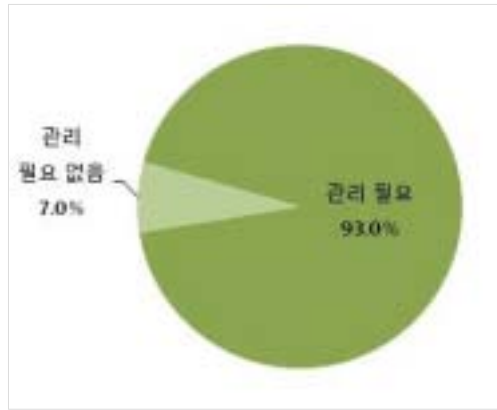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재교육 필요	93.0 (93)	92.0 (46)	94.0 (47)
재교육 불필요	7.0 (7)	8.0 (4)	6.0 (3)

적절한 관리/재교육 방식으로는 현재 국공립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 2회 오프라인 재교육 및 평가 방식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인다.

<그림 34> 인증학예사 관리 및 재교육 필요성

N= 100



<표 74> 인증학예사 관리 및 재교육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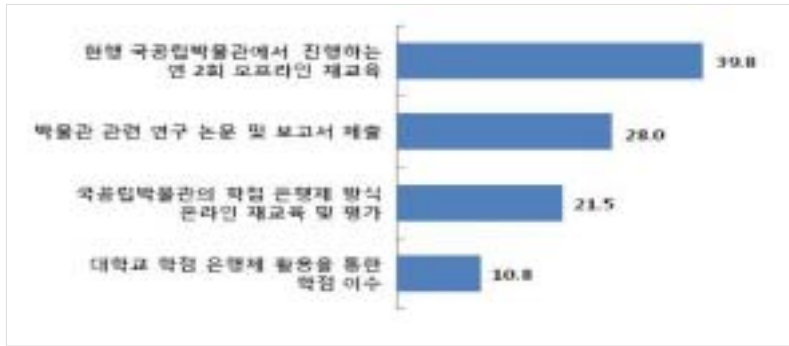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현행 국공립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 2회 오프라인 재교육 및 평가	37.0 (37)	36.0 (18)	38.0 (19)
국공립박물관의 학점 은행제 방식 온라인 재교육 및 평가	20.0 (20)	20.0 (10)	20.0 (10)
대학교 학점 은행제 활용을 통한 학점 이수	10.0 (10)	8.0 (4)	12.0 (6)
박물관과 관련된 연구 논문 및 보고서 제출	26.0 (26)	28.0 (14)	24.0 (12)
모름/ 무응답	7.0 (7)	8.0 (4)	6.0 (3)

인증학예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행 박물관 전문 인력 재교육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의 약 70%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재교육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5> 인증학예사 관리 및 재교육 방식 (%)

N= 100



<표 75>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시 기존 인력 재교육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오프라인 재교육	27.0 (27)	26.0 (13)	28.0 (14)
온라인 재교육	4.0 (4)	4.0 (2)	4.0 (2)
오프라인과 온라인 재교육 병행	68.0 (68)	70.0 (35)	66.0 (33)
모름/ 무응답	1.0 (1)	0.0 (0)	2.0 (1)

<그림 36>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시 기존 인력 재교육 (%)

N= 100



인증학예사 제도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48%가 국립중앙박물관을 들고 있으며, 특히 그룹 2 응답자들 중 62%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인증학예사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물관 협력망 가입자 집단인 그룹 1에서는 한국박물관협회가 인증학예사 제도 관리 기관으로서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42%로 국립중앙박물관 응답자의 34%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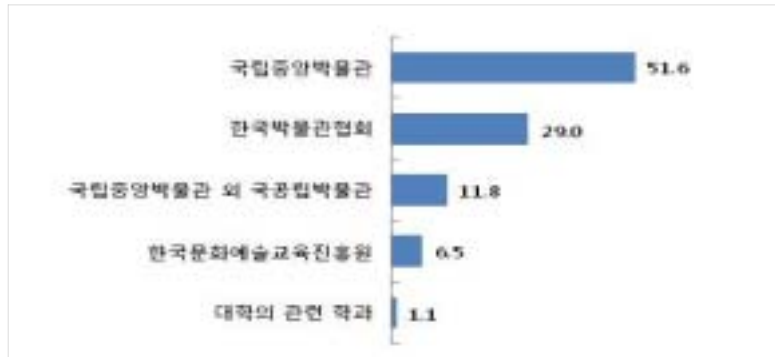
<표 76> 인증학예사 제도 관리 기관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국립중앙박물관	48.0 (48)	34.0 (17)	62.0 (31)
국립중앙박물관 이외의 국공립박물관	11.0 (11)	8.0 (4)	14.0 (7)
한국박물관협회	27.0 (27)	42.0 (21)	12.0 (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6.0 (6)	6.0 (3)	6.0 (3)
대학의 관련 학과	1.0 (1)	2.0 (1)	0.0 (0)
모름/ 무응답	7.0 (7)	8.0 (4)	6.0 (3)

<그림 37> 인증학예사 제도 관리 기관 (%)

N= 100



다. 기존 인력 교육 및 제도 개선 방향

전체 응답자들의 약 37%가 현재 진행 중인 인력 교육·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물관 협력망 가입자들인 그룹 1에서 교육 참가 비중이 52%로 가장 높고, 관련 전공 대학·대학원생 집단인 그룹 3의 교육 참가 경험 비율은 20%로 낮은 편으로 향후 잠재적 인력 풀(pool)인 관련 학과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참가 기회 및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련 교육에 대한 홍보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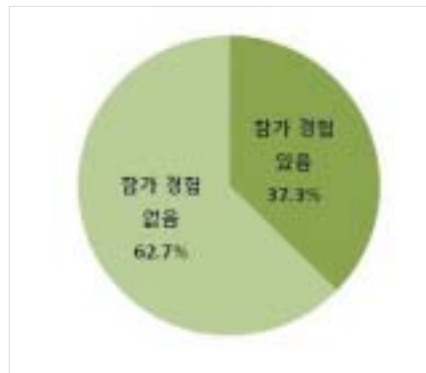
<표 77> 교육 참가 경험

단위: % / (명)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참가 경험 있음	37.3 (56)	52.0 (26)	40.0 (20)	20.0 (10)
참가 경험 없음	62.7 (94)	48.0 (24)	60.0 (30)	80.0 (40)

<그림 38> 교육 참가 경험 (%)

N= 150



교육 참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인력 교육이 일회성을 벗어나 박물관의 각 기능별로 심화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이론 외에도

실제 사례에 대한 연구 및 실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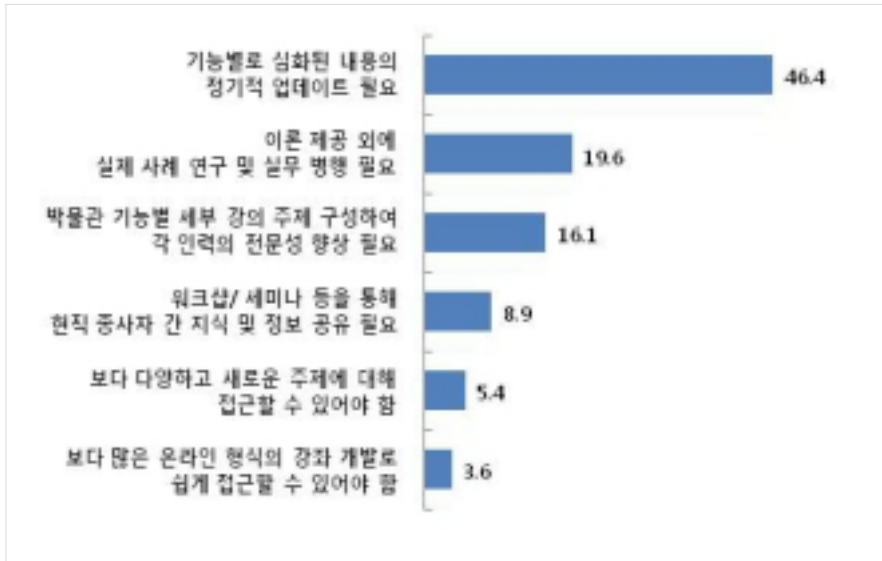
<표 78>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향

단위: % / (명)

	전체 (56)	그룹 1 (26)	그룹 2 (20)	그룹 3 (10)
일회성 교육이 아닌 기능별로 심화된 내용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함	46.4 (26)	53.8 (14)	45.0 (9)	30.0 (3)
보다 많은 온라인 형식의 강좌 가 개발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3.6 (2)	0.0 (0)	5.0 (1)	10.0 (1)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함	5.4 (3)	3.8 (1)	10.0 (2)	0.0 (0)
이론 제공 외에 실제 사례 연구 및 실무가 병행되어야 함	19.6 (11)	23.1 (6)	15.0 (3)	20.0 (2)
일방향식 강의가 아닌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현직 종사자 간 지식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함	8.9 (5)	3.8 (1)	10.0 (2)	20.0 (2)
박물관 기능에 따라 세부 강의 주제를 구성하여 각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해야 함	16.1 (9)	15.4 (4)	15.0 (3)	20.0 (2)

<그림 39>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향 (%)

N= 56



향후 학예사 자격제도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학예직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지위 안정성 보장이 전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룹 2의 경우 학예직의 처우 개선 문제 외에도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학예직 채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나 타 집단에 비해 학예사 자격증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잠재적 박물관 전문 인력인 그룹 3의 경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인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실습 제도가 체계화 되어야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79> 학예사 자격제도 선결 과제 (복수응답)

단위: MA% / (명)

제 3 장 학예사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박물관의 규모에 따라 학예사 수가 결정되어야 함	24.0 (36)	32.0 (16)	18.0 (9)	22.0 (11)
학예직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안정성 보장 및 처우 개선 필요	69.3 (104)	80.0 (40)	70.0 (35)	58.0 (29)
박물관 학예사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의무화	34.0 (51)	26.0 (13)	56.0 (28)	20.0 (10)
학예사 지원 사업의 내용, 범위, 기간의 확대 필요	22.0 (33)	24.0 (12)	14.0 (7)	28.0 (14)
인턴으로서 실무경력 습득 시 유급제도, 운영매뉴얼, 담당관리 인력 배치 등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34.0 (51)	28.0 (14)	26.0 (13)	48.0 (24)
경력인정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 마련 및 지속적 관리 필요	16.7 (25)	10.0 (5)	16.0 (8)	24.0 (12)

<그림 40> 학예사 자격제도 선결 과제 (MA%)



제 4 장 대안 및 권고

I. 대안 A: 정학예사 승급제도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1. 근거 및 의견

2장에서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박물관 등록 요건의 구조적 모순, 국·공립박물관 학예직의 낮은 자격증 취득 현황, 학예사 승급 제도에 요구되는 실무 경력 기간의 비현실성, 실무경력실무경력취득을 위한 체계적 현장실습방안 및 교육담당인력의 부재, 실무경력인증의 제한성, 박물관 전문적 기능에 대한 간과한 학예사 자격제도의 명칭, 학예사 자격증 활용방안의 부재, 연구논문발표가 요구되는 3급 정학예사 자격 요건 등에 대해 다루었다.

이 가운데 ‘학예사 승급 제도에 요구되는 실무 경력 기간의 비현실성’에 대한 문제점은 설문조사 결과 ‘실무경력 습득기회의 제한적이다’는 의견과 함께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또한 이외에도 실무 습득과 관련된 국내 박물관 현황에서도 국내 박물관의 저조한 인턴 활용도, 무급제 원칙의 인턴 운영, 실무경력 습득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정학예사 승급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정학예사 자격부여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학력(학위)과 실무경력의 비중을 조정하여 도출해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현행 학예사 자격 제도는 3급 정학예사의 경우에만 자격 부여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2급과 1급에 한해서는 승급방식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급과 1급 정학예사의 자격 부여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근거는 일반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학제상 학사의 경우, 4

년, 석사의 경우 2년-2년 반, 박사의 경우 3년-4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현재 실무 경력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연구 경력의 반영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3급 정학예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석사논문 이외에 연구 논문을 학술지, 학회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없는 자는 자격증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003년 하반기 학예사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학예사자격증이 학위와 같이 소지자의 학술적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박물관이라는 문화예술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무 또는 재직경력과 학위를 기준으로 승급제도의 기본적 틀이 마련되어 있으며, 2급과 1급에는 연구 논문 발표 실적이 적용되지 않는데 반해 3급에만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명확히 제시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연구실적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해 재교육 차원에서 지정교육기관에서의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부분을 승급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며 현실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내용 및 분석

가. 3급 정학예사

	승급 방법	자격 부여 방법
현행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 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석사

I. 대안 A: 정학예사 승급제도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승급 방법	자격 부여 방법
		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개선방안	준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해당분야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나. 2급 정학예사

	승급 방법	자격 부여 방법
현행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없음
개선방안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 ⁶³⁾	-해당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해당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해당분야의 박사 과정을 수료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해당분야의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63) 한국 사서직원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준사서에서 2급 정사서로 승급하는 경우,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관

다. 1급 정학예사

	승급 방법	자격 부여 방법
현 행	2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없음
개선방안	-2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2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 ⁶⁴⁾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해당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 경력인정대상기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국·공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과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미술관 및 외국 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임.

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음.

64) 한국 사서직원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2급 정사서에서 1급 정사서로 승급하는 경우,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II. 대안 B: 전문학예사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1. 근거 및 의견

학예직의 전문성 내지 전문직성(professionalism)⁶⁵에 대한 논의는 박물관이 사회적 제도로 등장하여 관람객들에게 자료(소장품 및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또한 박물관 학예직은 ‘전문직(profession)’인가 또는 ‘일반직(occupation)’인가, 아니면 준전문직(semi-profession)인가, 혹은 현재 전문직화 과정(professionalization)에 놓여 있는 직업인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장기간의 집중화된 학문적 준비과정을 거쳐 전문화된 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한 직업’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속성과 요건을 구비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현실사회에서 그 직업이 전문직인지를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직업의 전문직성은 표준 직업 분류상의 위치를 비롯하여 전문직 이론에 입각한 접근, 전문직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판별하는 방법, 사회적 평판과 인식도 등의 척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의 결과도 상이할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보편적인 평가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예컨대, 전문직이 충족시켜야 할 자격 요건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전문지식이나 고도의 기술 습득, 자격인정제도의 확립, 직무의 자율성과 봉사의 공공성,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가능한 전문단체의 구성, 행동 규범을 명

65) 전문직성은 그것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사회로부터 합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내포하지만,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상태이다. 따라서 일종의 이념적인 것이며, 전문직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집단적으로 인정되는 믿음이나 가치의 체계이다. 반면에 전문직은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구조 및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의 객체이다. 하나의 법칙이 아니라 전문직 자체에서 사회적 실체성이 주어지는 행위이다. 따라서 전문직은 존재를 수긍하고 합법성을 믿으며 그것에 준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시한 윤리강령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인정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학예사가 전문직을 충족시키기 위한 앞서 기술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대학에서 박물관 관련학과(박물관학 일반, 박물관 경영 및 마케팅, 미술사, 역사학, 자연사, 과학사, 고고학, 미술학(예술학), 민속학, 서지학, 인류학, 문화사 등 학예 연구 분야, 박물관 전시 기획, 박물관 교육, 보존 과학 및 재질학 관련)가 존재하고 있으며, 학예사 자격증제도도 존재한다. 또한 (사)한국박물관협회, (사)사립미술관협회, (사)대학박물관협회 등의 전문 단체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위한 다수의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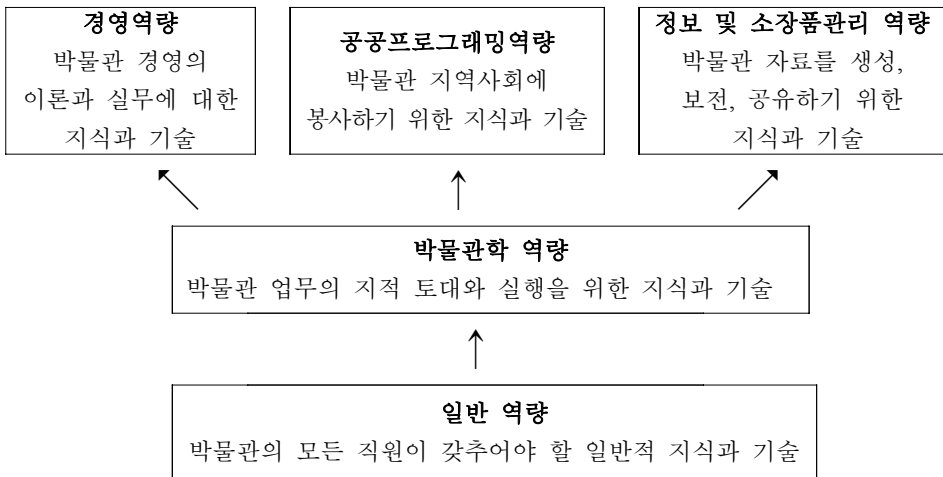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은 비영리기관으로서 공익을 제공하며 그 내부 구성원인 학예사가 이러한 공익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의 법규 및 정책, 국제박물관협회의 박물관 윤리강령과 박물관 전문직 윤리강령 등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박물관 학예사가 전문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만큼 명확하다.

박물관 학예사가 전문직이라는 전제하에, 학예사를 비롯한 박물관 전문 인력의 전문성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competency)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 최근에 대표적인 박물관/박물관 협의회들이 제시한 전문 인력 교육훈련 기준은 이전과 달리 ‘교과목’이 아닌 지식과 기술, 태도를 포함한 포괄적 능력을 의미하는 ‘역량’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어, 현장성 높은 교육훈련 체계를 고안하는 데 유용성이 크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이 2000년에 채택한 ‘박물관 전문 인력 개발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은 박물관 전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는 박물관 전

문인력의 훈련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박물관 종사자들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공통 역량으로서 “일반 역량”(general competencies)과 “박물관학 역량(museology competencies)”을 습득하고, 그 위에 각 세부 “기능별 역량”(functional competencies)을 갖추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41> 박물관 전문 인력의 역량 모델



(출처: ICOM curricular guidelines for museum professional development, 2000, <http://museumstudies.si.edu/ICOM-ICTOP/index.htm> 재구성)

‘일반 역량’에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적 영향, 평가방법, 재정관리, 정보 기술, 대인관계, 박물관과 사회, 업무의 성격, 전문가 마인드, 프로젝트관리, 연구 조사, 박물관 분야의 자원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포함된다. ‘박물관학 역량’은 지역사회와 박물관, 박물관 직업 전문성 개발, 박물관의 역할 및 기능과 비전, 거버넌스, 박물관 실무의 이슈, 법적 환경, 연구 활동을 들고 있다.

반면 ‘기능별 역량’은 다시 ‘경영 역량’과 ‘공공프로그래밍 역량’, ‘정보 및 소장품관리 역량’으로 구분되는데, 경영 역량에는 박물관 인

증, 건축, 사업 운영 관리, 지역사회 관계, 재정계획과 관리, 운영 구조, 재원조성, 인력계획과 관리, 수익 창출 활동, 정보관리, 보험, 법률, 마케팅, 회원제, 시설/건물 관리, 언론 홍보, 조직이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제시된다. 공공프로그래밍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전시, 교육과 해석, 출판물, 관객 서비스, 섭외에 대한 역량이다. 정보 및 소장품관리 역량에는 아카이브 관리와 소장품 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40여 개에 이르는 이들 각 영역에는 다시 다수의 하위 단위의 지식과 기술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모델은 박물관 종사자이자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역량을 토대로 하여 세부 전문영역의 핵심역량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기능별 영역은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는 시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박물관 전문 인력이 ‘박물관’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맥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박물관에 대한 기본 이해가 중요하고 박물관이 여타 기능간의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접근방식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편, 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는 박물관 박물관의 신입직원(entry-level employees)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제시했다. 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의 14개 소위원회의 하나인 박물관 전문 인력 훈련위원회(The Committee on Museum Professional Training)는 나머지 소위원회들에 의뢰하여 각각의 직종 분야에서 현직자들이 신규 채용 인력에게 기대하는 자질을 기본적 지식 및 기술, 전문성, 개인적 기술면에서 기술하도록 했다.

박물관 전문 인력훈련위원회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 교육의 적합성 향상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직종 간 공통 자질과 각 전문 영역별로 요구되는 특수 자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박물관학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설계 방향 및 내용을 제안했다.

<표 80> 현직자가 요구하는 박물관 신입인력의 자질

영역 구분		박물관 신입인력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공통 영역	핵심 지식과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내의 다양한 전문 업무 영역과 이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지식 • 구두(보고)/문서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기술 • 박물관 윤리에 대한 지식 • 박물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에 대한 지식 • 컴퓨터 활용 지식과 기술 • 박물관의 교육적 미션에 대한 지식 • 관객 중심적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 • 인간관계와 팀워크에 대한 지식과 기술 • 소장품 관리와 보전에 대한 지식 • 박물관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지식 • 재정관리와 예산편성 지식 • 지원금 신청서 작성과 재원조성 지식 • 연구조사에 대한 지식과 기술 • 사회의 다양한 계층 및 단체에 대한 지식 • 박물관 거버넌스와 조직에 대한 지식 • 역사나 미술사와 같은 전통적인 소장품과 관련된 학술적 영역에 관한 지식 • 박물관의 테크놀로지 활용 지식 • 학습 장소로서의 박물관과 여가 위락 장소로서의 박물관에 대한 이슈에 대한 지식
	개인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전문인으로서의 적절한 행동 (적절한 복장, 박물관 대변자로서의 적절한 행동, 유연성, 박물관과 지역사회에서의 적절한 행동과 에티켓 준수) • 지속적인 학습 의욕과 동기 • 업무의 정확성 추구 •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
전문 영역	관객연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및 전시 개발과 평가 • 사회과학 연구설계와 방법 • 기초 수학 및 통계 • 학습 이론 • 관객 연구의 이론과 문헌

제 4 장 대안 및 권고

영역 구분	박물관 신입인력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큐레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텍스트와 라벨 작성을 위한 해석적 작문 능력 • 박물관 소장품과 관련된 감식안 • 박물관 소장품 관련 시장 지식 • 사진 촬영 기술
재원조성 및 멤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기술과 기법 • 고객 서비스 기법 • 재원조성 기술
미디어/테크놀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픽 디자인 • HTML 또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섭외/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픽 디자인 • 티켓팅 시스템 • 미디어 운영 • 홍보 기법 • 광고 제작 및 탑재
레지스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기록 기입과 정보관리 • 박물관 등록 절차 • 박물관 보험과 대여 • 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소규모 박물관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박물관 운영과 활동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박물관 경영

(출처: Terry R. Reynolds(2000), Training for entry-level museum professionals,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http://education.nyu.edu/art/entrylevelprotrain.html> 재구성)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와 미국박물관협회(AAM)가 제시한 전문인력의 역량을 분석한 틀을 종합적으로 보면,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초 능력과 태도·윤리를 바탕으로 박물관 업무 영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질과 전문 영역별로 특수하게 요구되는 자질로 구분한다는 점이 다. 또한 박물관 전문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매우 포괄적이며, 이

러한 역량에는 형식적 교육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부분과, 개인적 성향과 자질에 주로 좌우되는 부분 및 경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되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는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설문조사결과, 예비 또는 현직 박물관 전문 인력의 시각에서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의 양산’과 ‘학예 연구 이외의 다양한 박물관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간과’가 가장 시급해야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총체적인 박물관 경영 관점에서 보면, 이용자(관람객)중심의 사고로의 전환, 소장품의 보존 중심에서 보존과 활용의 조화, 종합 박물관에서 특화된 전문 박물관으로의 지향점 변화, 학예연구원 중심에서 학예연구원을 포함한 박물관 전문직종간의 협업체제의 비중 확대 등 최근의 박물관 변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박물관 활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효율적 조직체계의 구축 등이 전문학예사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는 논지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학예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전문학예사 도입에 대해 설문 응답자 8.6.1%가 찬성하고 있으며, 신청 영역으로는 전시> 교육> 조사연구(학예연구)> 보존처리> 행정·경영·마케팅> 등록 및 유물 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학예사 다음으로 교육 부문에 대한 응답이 높다는 사실은 주지할 만한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박물관의 사회 교육적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교육기관의 박물관 이용율이 상승했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교육담당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학예사 제도 실행 시 전문 인력의 능력 검증에 대해서는 박물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 박물관 기능적 측면에서의 개인의 전

문성>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이해> 박물관 실무경력> 기관의 업무적 특성이나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외국어 능력> 기획서(보고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능력 순으로 그 우선순위가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 결과, 전문 학예사 제도 도입에 대한 호응도나 이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검증되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 즉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박물관의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과 전반적인 운영 활성화라는 기대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나 실행에 앞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첫 번째는 어떻게 전문학예사 제도를 현행 학예사 제도에 조화롭게 접목할 것인지 이며,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하여 학예사라는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세 번째는 전문학예사의 영역 설정 및 자격 요건에 대한 마련이며, 다섯 번째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학예사의 효과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마지막으로 현행 국내 박물관 조직 구조와 관련, 전문학예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 등의 활용방안이다.

전문학예사 제도 도입시 현행 학예사 제도에서는 학예사라는 명칭으로 통칭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학예사의 명칭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학예사 명칭에 대한 질문에서는 80%가 넘는 응답자가 ‘학예 연구직에 한해 ‘학예사’라고 부르고, 나머지 전문성과 기능에 따라 달리 다른 방식으로 명칭을 구분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에 국제박물관협회(ICOM)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인 ‘박물관 전문인력(museum professionals)’에 대한 의견은 8.4%, 그리고 현행처럼 ‘학예사’라는 명칭을 유지한다는 의견은 10%정도로 그다지 높은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학예사 제도 도입 시 학예사의 명칭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법규 개정안 포함).

2. 내용 및 분석

가. 대안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학예사’ 라는 명칭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학예연구직을 ‘일반학예사,’ 이외의 유물 등록 및 관리, 보존, 전시, 교육, 행정(정책), 경영, 마케팅 또는 기획 및 마케팅(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 전문 인력을 ‘전문학예사’라고 통칭하여 일반학예사와 구분한다.

법 령	현 행	개 정	비 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p>제 6 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p> <p>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학예사는 1급 정(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p>	<p>제 6 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p> <p>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학예사는 <u>전문학예사, 일반정(正)학예사, 일반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③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p>	<p>○ 학예사를 3단계(전문, 정, 준 학예사)로 구분</p>

제 4 장 대안 및 권고

법 령	현 행	개 정	비 고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p>	<p>제 3 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 3 조 (학예사 구분 및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구분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학예사 : 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 교육, 전시, 보존처리, 등록 및 유물관리, 행정·경영·마케팅의 기능을 담당하는 자 2. 일반정학예사 : 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자 3. 일반준학예사 : 전문학예사 및 정학예사가 되기를 희망하여 학습 및 실무실습을 진행할 자격을 갖춘 자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p>	<p>○ 전문 학예사, 정학예사, 준학예사 구분</p>

II. 대안 B: 전문학예사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법 령	현 행	개 정	비 고
		<p>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④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7.9.19/ 문화관광부령 제169호)</p>	<p>제 2 조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p> <p>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합판 사진 2장을</p>	<p>변동없음</p>	

제 4 장 대안 및 권고

법 령	현 행	개 정	비 고
	<p>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p>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③영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나. 대안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학예사’ 라는 명칭을 유지하면서, 전문영역(유물 등록 및 관리, 보존, 조사연구, 전시, 교육, 행정(정책), 경영, 마케팅 또는 기획 및 마케팅(홍보))을 표기한다. 예컨대, 유물 등록(또는 관리)학예사, 보존학예사, 연구학예사, 전시학예사, 교육학예사, 행정(정책)학예사, 관람객 개발(마케팅 및 홍보) 학예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II. 대안 B: 전문학예사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법 령	현 행	개 정	비 고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p>	<p>제 6 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p> <p>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학예사는 1급 정(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협약을 지켜야 한다.</p>	<p>제 6 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p> <p>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학예사는 1급 정(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준)학예사의 등급을 가지며, 각 전문영역에 따라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협약을 지켜야 한다</p>	<p>○ 학예사의 전문분야에 따라 명칭을 구분</p>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p>	<p>제 3 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p> <p>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p>	<p>제 3 조 (학예사 구분 및 자격요건 등)</p> <p>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구분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정학예사의 전문영역은 다음과 같다. <u>조사연구, 교육, 전시, 보존처리, 등록 및 유물관리, 행정·경영·마케팅</u></p> <p>2. 1호의 전문영역 가운데 <u>조사연구는 전문박물관의 변화에 따라 다시 세</u></p>	<p>○ 정 학예사의 전문영역 명시</p> <p>○ 조사연구 분야의 세분화규정 마련</p>

제 4 장 대안 및 권고

법 령	현 행	개 정	비 고
	<p>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③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u>분화할 수 있으며, 그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u></p> <p>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④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p>	<p>제 2 조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p> <p>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p>	<p>변동없음</p>	

II. 대안 B: 전문학예사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법 령	현 행	개 정	비 고
	<p>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p>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③영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단, 조사 연구의 경우, 인문사회 학예사, 자연과학 학예사, 예술학 학예사 등으로 대별해서 분류하거나 좀 더 전공 영역을 세분해서 고고학 학예사, 미술사 학예사, 예술학 학예사, 민속학 학예사, 인류학 학예사, 서지학 학예사, 자연사 학예사, 과학사 학예사, 박물관학 학예사, 역사학 학예사 등으로 세분화 하여 학예사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학예사의 영역을 전공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전문박물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학예사 전공 영역의 세분화에 현실적인 박물관 변화의 추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 대안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학예사’ 라는 명칭을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 수정하고, 소장품 관련 전문인력, 공공 프로그램 기획(전시 및 교육영역)전문인력, 행정 전문인력, 관람객 개발 및 마케팅 기획 전문인력으로 구분한다(이탈리아식 직렬 구분 방식 차용).

법 령	현 행	개 정	비 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p>제 6 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p> <p>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학예사는 1급 정(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협약을 지켜야 한다.</p>	<p>제 6 조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p> <p>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② <u>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구분과 자격제도의 시행방법과 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u>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u>은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협약을 지켜야 한다.</p>	<p>○ 학예사라는 명칭을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으로 대체</p>

II. 대안 B: 전문학예사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법 령	현 행	개 정	비 고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p>	<p>제 3 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 3 조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구분 및 자격요건 등) ① <u>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소장품, 공공프로그램(전시및 교육), 행정, 관람객 개발 및 마케팅기획으로 구분한다.</u> ② <u>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u>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박물관·미술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u>전문인력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u> ⑤ <u>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법제3조의 박물관·미술관 및 령제2조의 문화시설의 해당분야 채용과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과할 수 있다.</u></p>	<p>○ 학예사라는 명칭을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으로 대체 ○ 박물관 전문인력의 구분 ○ 준학예사 시험을 폐지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과</p>

제 4 장 대안 및 권고

법 령	현 행	개 정	비 고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p>	<p>제 2 조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합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p>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③영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제 2 조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합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삭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p>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③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라. 대안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학예사’ 라는 명칭을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 수정하고, 유물 등록 담당원, 소장품 관리자, 학예연구사, 보존처리사, 전시기획자, 교육담당자, 마케터 등으로 그 명칭을 세분화(미국, 프랑스, 스위스식 직렬 구분 방식 차용).

법 령	현 행	개 정	비 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p>제 6 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p> <p>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학예사는 1급 정(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협약을 지켜야 한다.</p>	<p>제 6 조 (박물관·미술관 <u>전문인력</u>)</p> <p>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u>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u>을 둘 수 있다.</p> <p>② <u>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구분과 자격제도의 시행방법과 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u>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u>은 국제박물관협의회 윤리 강령과 국제협약을 지켜야 한다.</p>	<p>○ 학예사라는 명칭을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으로 대체</p>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p>제 3 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p> <p>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p>	<p>제 3 조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구분 및 자격요건 등)</p> <p>① <u>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u>은 유물 등록 담당원,</p>	<p>○ 학예사라는 명칭을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으로 대체</p> <p>○ 박물관</p>

제 4 장 대안 및 권고

법 령	현 행	개 정	비 고
	<p>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③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소장품 관리자, 학예연구사, 보존처리사, 전시기획자, 교육담당자, 마케터으로 구분한다.</p> <p>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u>전문인력</u>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박물관·미술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④ <u>전문인력</u>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⑤ <u>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법제3조의 박물관·미술관 및 령제2조의 문화시설의 해당 분야 채용과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과할 수 있다.</u></p>	<p>전문인력의 구분 ○준학예사 시험을 폐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과</p>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p>	<p>제 2 조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p>	<p>제 2 조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p>	

II. 대안 B: 전문학예사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법 령	현 행	개 정	비 고
	<p>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합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p>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③영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합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삭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p>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③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전문학예사 제도를 실행하는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하고 있는 ‘박물관 사이버 교육 코스웨어 개발(2007)’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경쟁력 있는 박물관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공동 활용 기관과의 상호 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 증진으로 박물관 전문 인력을 위한 사이버 교육 활성화 및 예산 절감 효과 극대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지식을 수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로 최적의 학습 효과 및 현업 적용도 극대화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통해 박물관 전문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 환경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아울러 실무 활용도가 높은 교육 콘텐츠가 최신 교수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제공될 예정이므로,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실무 경력 습득과 함께 실무에 대한 적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Ⅲ. 기타의견

1. 인증학예사 제도

인증학예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민원이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에 빈번하게 요청된 바 있는데, 대학박물관의 경우 실무경력확인서에 총장 직인이 요구되었던 것이 관장 직인으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고, 전문박물관의 경우에도 그 영역 구분이 없어짐으로써 이 문제점 또한 해소되었다.

단, 경력인정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습득한 실무경력에 대한 부분과 함께 실무경력은 충분하더라도 학력상 자격 요건이 불충분한 상태의 자격증 신청자(예컨대 등록박물관이나 국·공립박물관 관장의 경우, 실무 경력은 10년이 넘더라도 석사학위를 취득한 상태가 아니면 3급 정학예사를 신청할 수 없음)에 대한 학예사 자격증 취득이 아직까지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에서는 인증학예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은 유의미하게 검증할 수 없었지만,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설문 조사 결과, 전문학예사 도입에 대해 80%이상의 지지율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인증학예사 도입에 대한 찬성 지지율은 44.4%에 머물렀다. 찬성 의견으로는 ‘학력보다는 박물관 실무 경력에 대한 중요성 인정’과 ‘학력 또는 박물관 이외의 유사 기능을 수행한 경력에 대한 전문성 인정’이 가장 지배적인 의견으로 제시되었던, 반면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이유로는 ‘인증학예사 자격증의 남발로 인해 학예사 본래의 전문성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33.1%에 달하는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해 본질적으로 인증학예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인증학예사’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나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찬성의견에 비해 반대 비율이 높은 것은 비록 전문성과 실무경력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학예사 자격 요건으로는 불충분한 자격을 갖춘 종사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나 현재 자격요건을 갖춘 잠재적인 학예사 자격증 신청자의 시각에는 분명히 앞서 지적했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과 학예사 자격제도 본래의 취지나 전문성 훼손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또한 인증학예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나 취득 희망자에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나 유익함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인증학예사제도의 실행을 원하는 잠재 신청자의 욕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분석 내용,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증학예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는 상황, 현재 국내의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해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신분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부 소수 집단을 위해 새로이 인증학예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마치 대학에서 예우차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주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본다면, 학예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학예사와 유사한 권한을 가지는 자격을 부여한다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학예사의 역할을 대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와 인증학예사 소지자간의 위화감만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증학예사 자격제도를 시행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은 실무경력만을 척도로 자격증 신청요청자의 전문성을 평가할 것인가, 이들의 전문성 평가 지표를 만드는 주체는 누가 맡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누가 그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전문성 평가를 학예사 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정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맡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비록 학예사운영위원회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자 또는 국·공립·사립 및 대학박물관 관장 또는 실장, 관련 분야 학회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면, 인증학예사제도의 실행을 원하는 신청자 수, 그들이 갖추고 있는 자격 요건 등을 조사하여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에 반영, 학예사 자격 요건을 수정·보완하여 기회를 개방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다.

오히려 인증학예사제도를 실행하기 보다는 이들이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원함으로써 학예사 자격제도라는 제도권으로 편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경력인정대상기관의 관리

현행 경력인정기관의 범주에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립 및 대학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이다. 또한 사립 및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그 선정 기준은 인력, 시설, 자료의 관리 실태 및 업무 실적(소장품 도록 또는 특별전시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 전시 여부)이 학예사운영위원회가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하는 자의 실습 및 실무 연수에 대한 적합성이 주요 고려 사항이다. 선정 평가 기준에서 인력의 경우에는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관장포함)2인 이어야 하며, 3급 정학예사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2명, 준학예사는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1명씩을 인정하고 있다.

향후 인턴 등의 실무 경력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력인정기관의 선정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현행 경력인정기관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력인정기관의 선정하고 이들 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 지표 구축이 요구된다. 경력인정기관의 선정과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의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경영, 시설, 전시, 사업기획, 교육, 인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가중치를 달리하고 세부 평가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81> 경력인정기관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의 예시

평가영역	세 부 항 목	점수	비 고
경영부문 (10)	박물관 역사 및 설립취지의 유무	1	
	향후 3년간 중장기계획	1	

제 4 장 대안 및 권고

평가영역	세 부 항 목	점수	비 고
	조직 구조 및 전문 인력(학예사) 확보현황(총 직원수 대비 전문인력 확보 비율 및 전년대비 직원 수 변동율 표기)	2	조직구성도 및 업무분장규정 사본, 직원현황표 및 이력서 첨부, 이사회나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상세설명 첨부
	지난 3년간 예산 및 지출 현황	1	당해연도 예산(인건비 포함) 포함
	지난 3년간 외부 지원금 수혜현황	1	
	지난 3년간 관람객 조사 실시의 유무 및 관람객 유입 현황	3	관람객 조사 결과 첨부
	연례보고서(연보)발간 유무	1	연보 첨부
소계			
시설부문 (5)	전체면적에서 전시실과 수장고가 차지하는 비율(상설/기획 전시실)	1	
	전시실과 수장고의 보존환경	2	
	전시실 및 수장고 점검 시기	2	
소계			
전시부문 (6)	소장품 현황	1	
	지난 3년간 기획된 전시 내용	2	보도자료 및 기사 첨부
	지난 3년간 상설 전시 교체 유무	2	교체내용 첨부
	지난 3년간 관외 전시 활동 내용	1	해외 전시 참가 경력 포함
	소장품 도록 또는 특별전시도록 발간 현황	2	
소계			
사업기획 부문 (18)	전시 개최의 목적 및 중요성	2	
	외부참여기관(공동주최, 후원, 협찬 기관)	1	
	목표관람객 및 전시의 기대효과	2	

III. 기타의견

평가영역	세 부 항 목	점수	비 고
	유사 전시와의 차별성	1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상세 설명	1	
	전시기획자의 전문성	1	
	전시물 확충 방법(자체소장품/대여/기증/교환의 비율)	1	
	전시기획 일정(time frame), 기간 및 장소	1	
	전시 효과 평가 방법 및 평가내용	3	
	해석 매체(레이블/텍스트) 샘플	1	
	전시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부	1	
	추천서(전시관련 외부전문가)	1	
	전시 홍보 방법	2	
소계			
교육부문 (9)	지난 3년간 운영한 교육프로그램 내용	2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첨부
	지난 3년간 운영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2	만족도 조사결과 첨부
	직원 재교육 현황	2	재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 및 참여한 재교육 프로그램
	직원 교육비, 연수비, 교육연수 목 적의 출장비등을 포함한 직원 교육비에 대한 총지출액	1	금액 및 총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직원교육비의 비율 표기
	관외교육프로그램의 유무	2	
소계			
인턴 프로그램 운영부문 (52)	경력인정기관 자격 취득 유무	4	경력인정기관 관련서류 증빙
	인턴 프로그램 운영의 유무	3	인턴프로그램 기획서 첨부
	3년간 인턴프로그램 운영 실적	4	
	인턴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2	담당자의 이력서 첨부

제 4 장 대안 및 권고

평가영역	세 부 항 목	점수	비 고
	인턴 채용 선발 방법, 기준, 시기	3	선발공고에 대한 상세 정보
	인턴 채용시 학예사 자격증소지자 채용 비율	3	
	인턴프로그램운동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유무	3	대학과 체결한 협정서 첨부
	인턴 활용 시간	3	
	분기별 인턴 채용 규모	2	인턴 명부 및 발급된 실무경력확인서 첨부
	인턴 프로그램을 위한 매뉴얼(안내지침서)의 존재 유무	3	인턴 매뉴얼(안내지침서)첨부
	인턴에게 제공되는 혜택	3	
	인턴 프로그램 운영 소요 경비	2	예산 및 지출 현황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급여 유무	2	원천징수세 발급 내용 첨부
	외부에서 지원받은 인턴프로그램에 대한 재원 확보 유무	2	기관 및 수혜액 첨부
	인턴 담당 업무	3	단순 업무와 전문 업무로 분류해서 작성, 인턴일지 첨부
	인턴 프로그램 소요 경비	2	
	인턴에 대한 평가 활동의 유무	3	인턴평가보고서 첨부
	인턴의 박물관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3	결과보고서 첨부
	향후 3년간 인턴 프로그램 계획	2	인턴 프로그램 계획서 첨부
소 계			
합 계			

본 연구에서 실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가 실무경력을 습득한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박물관은 사립박물관> 국립박물관> 기타> 공립 및 대학 박물관> 해외박물관> 이인 반면 향후 실무

경력 습득을 원하는 박물관은 국립박물관> 해외박물관> 기타> 공립 및 사립 박물관> 대학박물관 순으로 나타나 현재는 사립박물관의 실무경력습득 상황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사립박물관보다는 국립박물관에서의 실무 경력 습득에 대한 욕구 및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립 및 대학박물관에 대한 실무 경험 습득에 대한 욕구가 국립박물관보다 낮게 나타난 요인은 이들 기관의 인턴 운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향후에는 박물관 유형별로 실무 경력 습득이 고른 분포를 보일 수 있도록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뢰도 및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박물관 실무유경험자가 담당했던 업무는 전시> 교육> 등록 및 유물관리> 조사연구> 행정 및 경영> 보존,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희망분야는 전시> 보존> 등록 및 유물관리 > 조사연구(학예)> 경영 및 마케팅(홍보)> 교육 순으로 나타났고 이와 함께 행정 및 정책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박물관 실무 습득이 박물관의 특정 기능이나 업무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박물관 업무 영역별 측면에서 본다면, 소장품 관련 영역(등록 및 유물관리, 조사연구, 보존, 전시)이 행정, 교육, 경영 등 박물관 서비스 관련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실무경력 희망자들의 전공이나 관심 영역이 주로 학예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관람객 서비스 봉사에 대한 비중이 급상승하고 최근의 박물관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는 실무경력 희망자들에게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전반적인 박물관 문화의 발전 및 박물관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직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물관 실무 경력 습득의 박물관 업무 이해 향상에 대한 유익성에 대해서는 82.1%, 만족도도 과반수이상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

면에 실무경력축적에 대한 기대 불일치 요인으로는 ‘인턴 운영 매뉴얼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제시된 불만족 요인으로는 불명확한 인턴업무> 편의시설 및 처우부족> 인턴 업무와 실무 경력 축적간의 관련성 부재> 인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 문제 및 실무경험 습득의 미흡> 기존인턴과 신입인턴과의 갈등> 실무 경력기간의 문제> 인턴 담당자 부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4장에서 경력인정기관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처럼, 이는 경력인정기관에 대한 인턴 관리 및 교육 인력의 보유현황이 경력인정 기관의 선정에 평가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실무 및 실무 연수 프로그램 운영 상 교육 지침서나 인턴 운영 매뉴얼의 개발이 현실적으로 최우선 선결 과제라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인턴 운영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효과성 있는 실무 경력 습득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경력인정기관 관리상 정기적인 평가에 대한 필요성, 현행 경력 인정기관의 실무 연수생 선발 방식 및 선발 인원, 실무 연수 업무의 범위 및 특성, 인턴 등의 실무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이에 대한 성과 등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어 그 내용이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박물관과 인턴 등의 실무 연수생간의 쌍방향의 ‘실무 성과 평가 시스템’ 및 전반적인 경력인정기관 관리 및 평가를 위한 ‘경력인정기관 평가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인턴 등의 실무 연수와 관련된 경력인정기관의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이에 대한 유지 의무화 등의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V. 종합결론

본 연구는 현행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서 채택한 학예사제도가 원래 디자인한 목적에 합당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문제

가 발견된 경우에 그 해결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입법평가에서 사후적 입법평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평가는 입법을 한 후에 법이 실제에 얼마나 실효적이고 규범적인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법률의 변경을 도모할 수 있다.

현행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에서 채택한 학예사제도도 이러한 목적에 실현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학예사자격제도에 대해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규제가 된다고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학예사자격제도를 둠으로써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기 어렵게 하고 운영상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원래의 취지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자유롭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지만, 그 질적인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것이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단순히 설립하는 것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전문적인 인력이 양성되어 이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함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할 필요성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현행법이 학예사자격제도를 디자인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문제는 현행의 학예사제도가 그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는 법 시행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본문에서 실시한 바와 같다.

현행 제도는 학예사의 자격을 획득하는데 비합리적인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학계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키는 방법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학예사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준학예사, 정학예사로 분류하되, 준학예사의 경우에 자격시험 합격이라는 요건이외에 경력만을 요구하던 것을 변경하여 자격시험합격과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 분야의 변화하는 지식을 계속 습득하게 하고 경력만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의 현실상 제도의 부실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학예사의 경우는 현재의 자격 취득요건은 업무에 비추어 너무 과다하므로 이를 완화시키고 현행의 대학교육과정의 학위시스템과 연동시켜 합리적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제시한 대안이 대안A이다.

현행 제도는 3급 정학예사의 경우에만 자격 부여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2급과 1급에 대해서는 승급방식만 있다. 본 연구에서는 2급과 1급 정학예사에 대해서 자격 부여 방법을 고안하였다. 현행 대학교육의 학사과정에 비추어 보건대, 학사는 4년, 석사는 2-2년 반, 박사는 3-4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의 연구 경력을 자격부여에 반영하였다. 이로써 1급과 2급 정학예사 자격의 취득을 보다 용하게 할 수 있고 질적 수준도 유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현행 3급 정학예사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석사논문 이외에 연구 논문을 학술지, 학회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없는 자는 자격증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003년 하반기 학예사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바 있는데, 이는 학예사제도의 취지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정학예사의 경우에 1, 2, 3급으로 급수를 구분하는 방식을 통하여 학예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하되, 각급의 학예사의 경우에는 모두 승급방식과 자격부여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두어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상위 급의 학예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 대학이상의 과정에서 해당분

야의 학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분야는 가능한한 연관되는 전공으로 개방하여야 하고 축소하여 폐쇄적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이를 폐쇄적으로 정하면 학예사제도는 해당 학문 분야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만다. 학예사는 여러 전공을 통하여 이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개방적이어야 하고, 승급방식이든 자격부여방식이든 최소한의 요건만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적용한 것이 대안A이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본 바와 같다.

본 연구는 대안A를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시하되, 전문학예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지 않고 이를 제도화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의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는 본 입법평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향후 이 모델은 전문학예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일정한 방향 제시로 역할을 할 것이다.

인정학예사제도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법에서 채택하는 학예사제도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문학예사제도를 채택하여 이 분야를 발전시키는 경우에 이러한 것과 시스템적으로 합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입법평가로서 그에 합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된다. 입법평가의 목적이 규범과 현실간의 규범력을 측정하고 이 양자간의 간극을 해소하는데 있는 만큼 학예사제도의 경우에 이를 보면, 규범과 현실간에 간극이 발생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간극이 현실에 비추어 규범이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는 이를 발굴해낸 것이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있다. 이 학예사자격제도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정책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와도 연관이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 학예사를 두되, 학예사를 두는 목적이 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예사를 통하여 이 분야의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관련학문이 발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I. 국 내

【단행본】

-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 원리와 방법 -, 2006.12.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06.
-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금준,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5.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 최윤철/홍완식,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정책
과제보고서 2005.11.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이론연구(I) - 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 1991.
- _____, 입법이론연구(IV) - 입법심사의 체계와 방법론 -, 1996.
- _____, 법령입안기준개발연구(III) - 오스트리아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 2005.
- 홍준형, 입법평가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정책과제보고서 2006.12.
- Carl Böhret/Götz Konzendorf, 박영도/장병일 역, 입법평가입문-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한국법제연구원 2007.
- 박영도 역, 오스트리아와 인접국가에서의 법률평가와 입법평가-오스
트리아 입법학회 2003년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 2008.
- 문화관광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규제순응도 조사, 2007.
- _____,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04-2008.
- 한국법제연구원, 학예사 자격제도 입법평가에 대한 조사 보고서, 2009.

참 고 문 헌

- 게리 에드슨·데이비드 딘/이보아 역, **21세기 박물관 경영**, 시공사, 2001.
-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연보 2004~2008**.
- _____, **국립박물관-비전 2020**, 2006.
- _____, **2005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 운영현황총람**, 2005.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박물관·미술관 증장기 발전방안 연구**, 2002.
- _____, **국립중앙박물관 증장기 발전방안 연구**, 2001.
- 대전보건대학 박물관학 연구소, **박물관 전문직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1999.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연구**, 1999.
- _____, **전국문화기반시설운영평가 개선방안 연구**, 2003.
- 김혜경역, **박물관·미술관이란 무엇인가?** 화산문화, 1996.

【논 문】

-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월간법제 2002.3.
- 최윤철, **입법평가의 제도화방안**, 월간법제 2006.5.
- _____, **법률(입법)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국회개혁연속토론(입법의 책임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한 모색) 자료집 2004.10.
-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통권 제258호) 2006.

II. 국 외

【일 본】

- 規制に関する政策評價の手法に関する研究會, **規制に関する政策評價の手法に関する調査研究 報告書**, 2005.7.

山田 晟, 立法學序説 -體系論の試み, 有斐閣 1994.

龍 慶昭 外, 政策評價の理論と技法, 多賀出版 2001.

中島誠, 立法學: 序論.立法過程論, 法律文化社 2007.

【E U】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European Governance : Better lawmaking**, COM (2002) 275 final.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SEC(2005), 791.

【OECD】

OECD :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ynthesis, Paris 1997.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improving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 Including the OECD Reference Checklist for Regulatory Decision making**, Paris 1995.

_____, **Regulatory Impact Analysis : Best Practices in OECD Countries**, Paris 1997.

【영 국】

Cabinet Office Better Regulation Executive : **Impact Assessment Guidance**, 2007.

_____ : **Review of the Regulatory Reform Act 2001**.

참 고 문 헌

【미 국】

Keefe, William J./Ogul Morris S. : **The American Legislation Process**, Prentice-Hall, Inc. 1997.

Lubbers, Jeffrey S. : **A Guide to Federal Agency Rulemaking**, 4rd. ed., American Bar Association 2006.

Weiss, Carol H. : **Evaluation. Methods for studying programmes and policies**, 2nd ed., Prentice Hall NJ 1998.

【웹사이트】

이 나라 지표 : <http://www.index.go.kr>

국립중앙박물관 : <http://www.museum.go.kr>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부 록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9471호 (일부개정 '09.03.0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3.5>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 3 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 4 조 (사업)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제 5 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3.5>

제 6 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제 7 조 (운영 위원회)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재산의 기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다.

제 9 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제10조 (설립과 운영) ①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②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③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 ⑤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 ⑥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박물관”으로 본다.
- ⑦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1조 (설립 협의) ①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제12조 (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4 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제13조 (설립과 육성)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③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제 5 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제14조 (설립과 운영) ①「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

③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어야 한다.

제15조 (업무)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정리·관리·보존 및 전시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3.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
4. 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협조
6.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7. 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 6 장 등 록

제16조 (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3.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등록증과 등록 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박물관 등록증이나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준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

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 (유휴 공간 활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 공간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도지사가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

(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 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 ②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③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 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그 허가·인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제 7 장 관 리 운 영

제21조 (개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22조 (폐관 신고) ①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제23조 (자료의 양여 등)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경비 보조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3.5>

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8 장 지도·감독

제26조 (시정 요구와 정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5>

②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3.5>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5>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제27조 (등록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한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28조 (보고)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②시·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1.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2.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3.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제 9 장 자문 · 협력 등

제30조 (중요 사항의 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 (박물관 · 미술관 협력망)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 · 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 · 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

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②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협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
-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9471호, 2009.3.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법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로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서도 등록한 박

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보며,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경비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22호 (일부개정 '09.06.04.)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의2 (박물관자료의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6.4>

1.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법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일 것
2. 무형적 증거물의 경우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제 2 조 (문화시설의 인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 3 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학예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4 조 (준학예사 시험) ①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4>

②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 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한다.

③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과목 : 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2. 선택과목 :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 중 2과목 선택

④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⑤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5 조 (학예사 운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 6 조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 7 조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29>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 8 조 (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6.4>

제 9 조 (변경등록)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변경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6.4>

제10조 (등록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 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등록표시)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옥외간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제12조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①법 제 18조제1항에 따라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4. 위치도
5. 개략설계도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제13조 (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승인된 해당 설립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유형
2.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3.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수장고) 시설의 위치 및 면적

4.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면적 (해당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사업시행기간(해당 사업시행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대관 및 편의시설) 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대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일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연간 개방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폐관신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제18조 (시정요구 및 정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려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과 시정기한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정관(정관)을 명하려면 그 사유와 정관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4>

제19조 (공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취소

제20조 (협력망 구성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으로 구분한다.

②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21522호, 2009.6.4>

이 영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호 (일부개정 '09.06.03.)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 3 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 4 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2.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3. 영 별표 1에 따른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인정
4. 삭제 <2009.6.3>

제 5 조 (등록 신청서 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 6 조 (변경등록 신청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등록증(박물관·미술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

명·주소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제 7 조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① 영 제12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립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 8 조 (개방일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폐관신고)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35호, 2009.6.3>

이 규칙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서식 1 학예사자격요건심사및자격증발급신청서
- 서식 2 재직경력증명서
- 서식 3 실무경력확인서
- 서식 4 박물관·미술관학예사자격증
- 서식 5 응시원서

- 서식 6 박물관등록[변경등록]·미술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서식 7 박물관·미술관시설명세서
- 서식 8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의목록
- 서식 9 학예사명단
- 서식10 관람료및자료의이용료
- 서식11 박물관[미술관]등록증
- 서식12 사립박물관설립계획·사립미술관설립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 서식13 박물관·미술관폐관신고서
- 서식14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운영현황보고

[별표 1] <개정 2009.1.14>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등 급	자 격 요 건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경력 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 국립중앙박물관 2. 국공립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공립미술관 5. 국립민속박물관 6.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급 정학예사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비 고

1. 삭제<2009.1.14>
2. 실무경력은 재직경력·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한다.
3.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10조 관련)

1.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학 예 사	시 설
종합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미술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부 록

유 형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학 예 사	시 설
식물원	1. 실내: 100 종 이상 2. 야외: 200 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 4. 묘포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2.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학 예 사	시 설
자료관 · 사료관 · 유물관 · 전시장 · 전시관 · 향토관 · 교육관 · 문서관 · 기념관 · 보존소 · 민속관 · 민속촌 · 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자료실 · 도 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화재 ·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 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 · 비디 오 테 이 프 및 CD 각 300점 이상		1.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으로 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인터넷 부스(PC 4대 이상) 나. 비디오 부스(VTR 2대 이상) 다. CD 부스(CD플레이어 4대 이상)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마. 문화창작실(공방)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2. 화재 · 도난 방지시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6.3>

(제1쪽)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3cm×4cm) (3개월 이내의 촬영 사진)	신청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학력	출신학교명		학제	4년제, 2년제(3년제 포함)		
	학과명		전공분야		졸업연도	
	학위종별					
재직 경력	기관명					
	기간					
	담당업무					
실무 경력	기관명					
	기간					
	실무분야					
취득희망 학예사 등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예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div>						

접수번호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득희망 학예사 등급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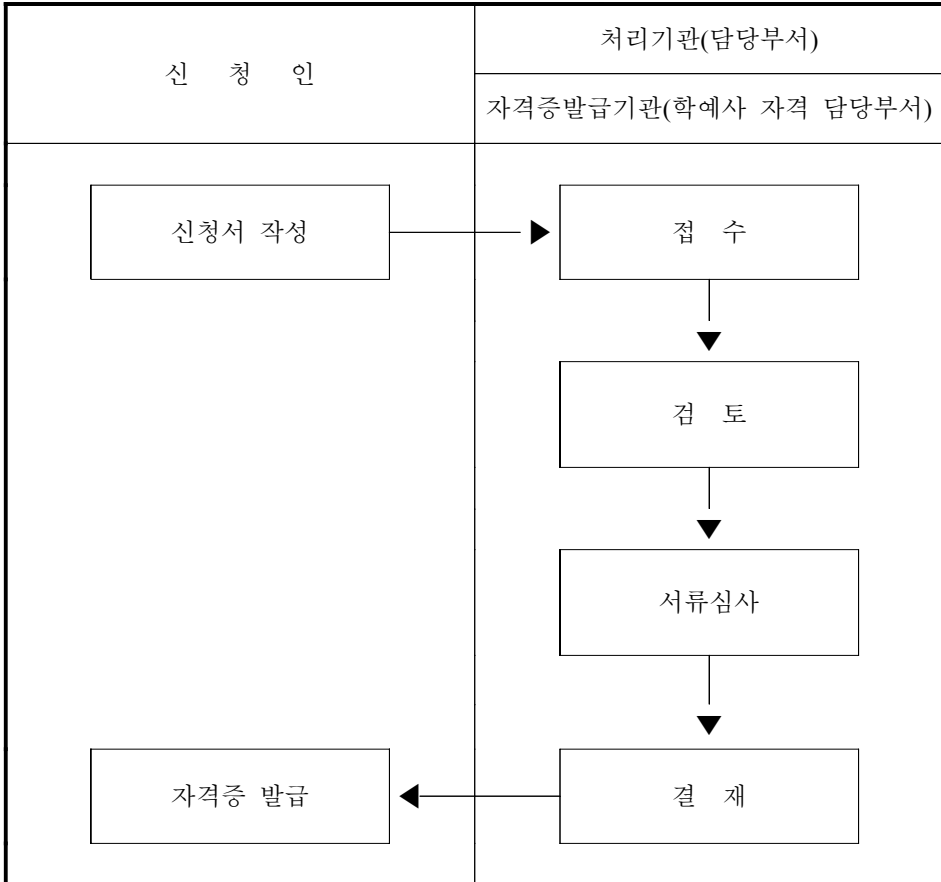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구비서류	
【정학예사】	【준학예사】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3.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반명함판(3cm×4cm) 사진 2장	4. 반명함판(3cm×4cm) 사진 2장

작성요령
1. 성명 : 한글과 한자로 적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의 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응시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적습니다.
4. 학력 : 출신학교명·학과명·전공분야·졸업연도를 적고, 학제의 해당되는 곳에 ○표 하고, 학위종별에는 ○○박사, ○○석사, ○○학사, 없음을 적습니다.
5. 삭제 <2009.6.3>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별지 제2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신청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직위 · 직급
재직경력	기 간 업무분야
위와 같이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기관의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실무경력확인서		
신청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직위·직급 (재직자의 경우에만 적음)	
실무경력	기 간	실무분야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실무경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발급 기관의 장 인 </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3.6>

제 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전문분야 :
위 사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input type="checkbox"/>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8.27>

(앞쪽)

응 시 원 서			
사진 (3cm×4cm) (3개월 이내의 촬영 사진)	지원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학 력	출신학교명	학제	4년제, 2년제(3년제 포함)
	학과명	(전공분야 :)	
	졸업연도		
	학위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응시번호		수수료	원

응시번호	준학예사 시험 응시표		사진 (3cm×4cm) (3개월 이내의 촬영 사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응시자 주의사항

1.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진(응시원서 첨부 사진과 동일 원판의 것) 1장을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2. 시험 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 위 오른편 상단에 수험표와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필기시험 중 객관식 필기시험의 답안 작성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4. 이미 낸 응시수수료는 결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6.3>

(제1쪽)

<input type="checkbox"/> 박물관 등록(변경등록) <input type="checkbox"/> 미술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등록 45일 변경등록 5일 (다만, 명칭 또는 종류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20일)	
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박물관· 미술관	②명 칭			③종 류	<input type="checkbox"/> 1종 <input type="checkbox"/> 2종	④유 형	
	⑤소재지			⑥개관연월일			
	⑦설립자	성명(명칭)		주 소			
	⑧대표자 (관장)	성명(명칭)		주 소			
	⑨등록번호				제 호	⑩등록연월일	
⑪ 변경 사항	당 초			변 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제2쪽 참조						수수료	
※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①⑨⑩⑪란만 적습니다.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구비서류

1. 등록 신청시

가.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명세서 2부

나.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자료의 사진 첨부) 1부

다. 별지 제9호서식의 학예사 명단 2부 및 학예사의 이력서 1부

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 2부

2. 변경등록 신청시

가. 등록증(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작성요령

①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③④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⑥ :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설립 및 개관한 일자를 적습니다.

⑦⑧ :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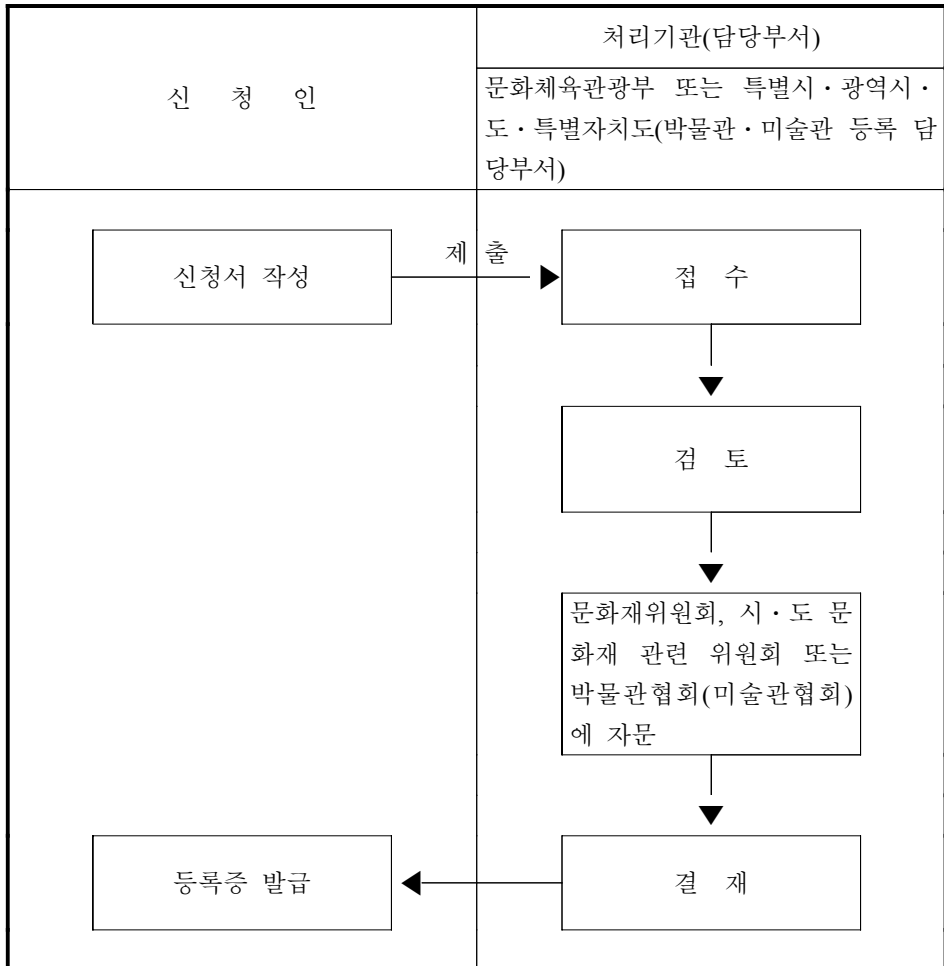
⑨⑩ : 기존 박물관·미술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부 록

[별지 제7호서식]

<input type="checkbox"/> 박물관 시설명세서 <input type="checkbox"/> 미술관			
1. 명칭			
2. 종류	<input type="checkbox"/> 1종 <input type="checkbox"/> 2종	3. 유형	
4. 부지면적			m ²
5. 전시실	실		m ²
6. 수장고	실		m ²
7. 작업실·준비실	실		m ²
8. 사무실·연구실	실		m ²
9. 자료실·도서실	실		m ²
10. 시청각실·강당	실		m ²
11. 화재방지시설			
12. 도난방지시설			
13. 온습도조절장치			
14. 사육·수용시설	실		m ²
15. 진료·검역시설	실		m ²
16. 사료창고	실		m ²
17. 오물·오수처리시설			
18. 육종실	실		m ²
19. 묘포장	실		m ²
20. 식물병리시설	실		m ²
21. 비료저장시설	실		m ²
22. 수족치료시설	실		m ²
23. 순환장치			
24. 예비수조			
25. 기타시설			

작성요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란의 시설 중 해당되는 시설만 쓰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번호	자료명	수량	물질	시대	소장 연월일	소장경위	출처	크기	구조·특징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부 록

(뒤쪽)

사 진 첨 부 란

1	2	3	4	5
(5cm×7cm)				
6	7	8	9	10

[별지 제9호서식]

학예사 명단			
①명 칭			
②종 류	<input type="checkbox"/> 1종	<input type="checkbox"/> 2종	③유 형
④등 급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학력(전공학과) 및 경력

작성요령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순으로 쓰십시오.

부 록

[별지 제10호서식]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1. 관람료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어린이	원	원	세 이하
청소년·군인	원	원	세 ~ 세
어 른	원	원	세 ~ 세
노 인	원	원	세 이상

2. 자료의 이용료

구 분	수 량	금 액
사진촬영	1점	원
사진원판이용	1장	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6.3>

(앞쪽)

제	호		
박물관(미술관) 등록증			
명 칭 :			
종류(유형) :			
소재지 :			
설립자 성명(명칭) :			
(주소) :			
대표자 성명(명칭) :			
(주소) :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인</div>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부 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6.3>

(제1쪽)

<input type="checkbox"/>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처리기간
							승인 30일
							변경승인 10일
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설립 예정	②명 칭			③종 류	<input type="checkbox"/> 1종 <input type="checkbox"/> 2종	④유 형	
	⑤위 치						
	⑥규 모	부지			m ²	건평	m ²
	⑦소장자료				점	⑧소요예산	천원
	⑨착공예정	년 월 일			⑩준공예정	년 월 일	
⑪ 변경 사항	당 초						변 경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설립계획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div>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제2쪽 참조 ※ 변경승인 신청시에는 ①⑪란만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

(제2쪽)

구비서류

1.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다.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라. 위치도 1부

마. 개략설계도 1부

바.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각 1부

2.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설립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작성요령

①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③④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미술관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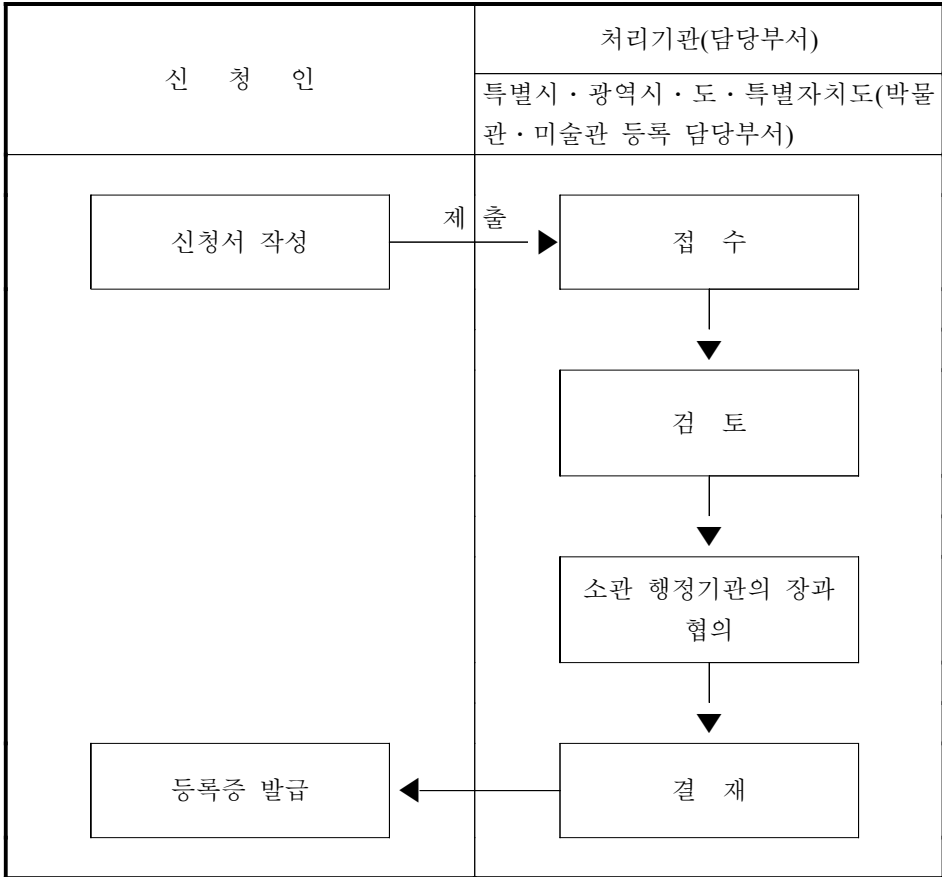
⑤ : 설립 예정지를 적습니다.

⑦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로서 박물관·미술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설립계획 당시 소장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⑩ : 설립계획 승인 당시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사항을 적습니다.
(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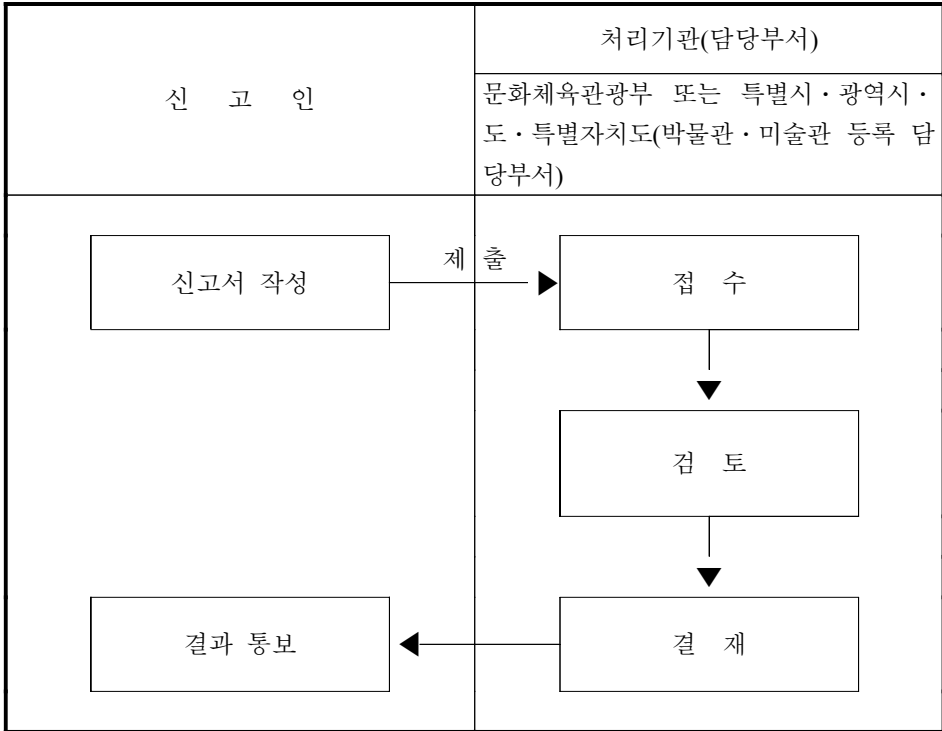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6.3> (앞쪽)

박물관 · 미술관 폐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등록번호	제 호	②등록연월일	
신고인	③(박물관 · 미술관) 명칭		
	④소재지	(전화 :)	
	⑤설립자(대표자) 명칭	(전화 :)	
⑥사 유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p>			
구비서류 : 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3.6>

(제1쪽)

행정기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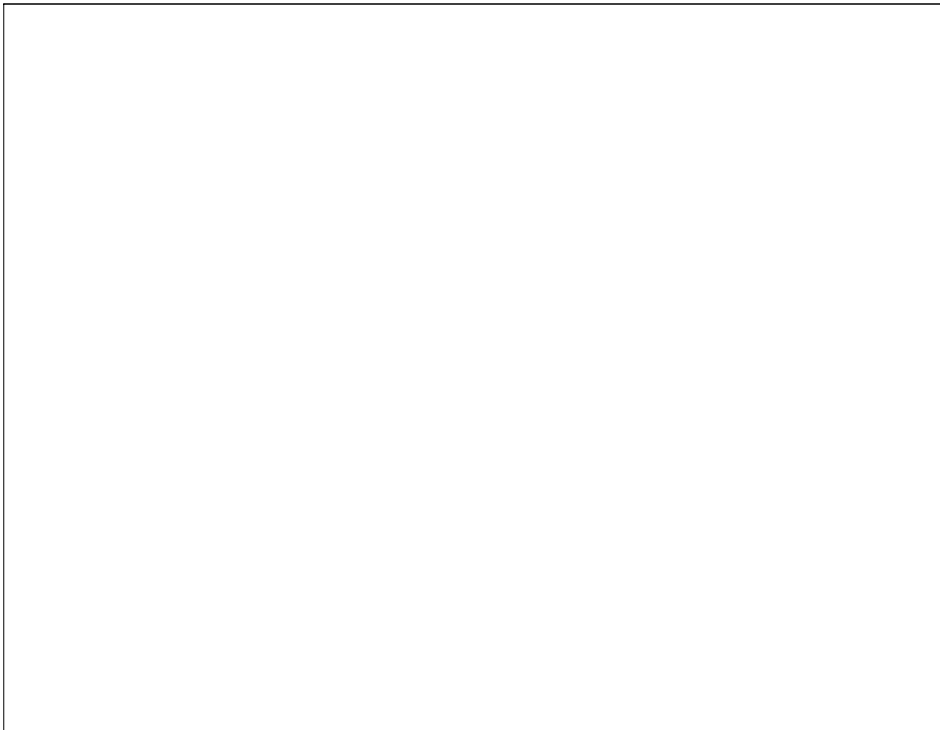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물관 업무 담당과장)

(경유)

제목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운영현황 보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의 운영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①(박물관·미술관) 명칭								
②소재지		(전화 :)						
③설립자 주소		(전화 :)						
④등록번호		제 호(. . .)			⑤개관일 . . .			
구분	직업	성명	생년월일	전공	구분			
⑥설립자					유급	자원봉사		
⑦ 직원현황	관장 (원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학예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직원				명	명	명	
총인원(⑥+⑦)				명	명	명		
⑧소장 자료현황	구분 (류)					기타	계	
	수량							
⑨ 시설현황	구분	시설수/총면적		비고	구분	시설수/총면적		비고
	대지	m ²			도서실	실 m ²		
	건평	m ²			시청각실	실 m ²		
	전시실	실	m ²		강당	실	m ²	
	작업실	실	m ²					
	준비실	실	m ²					
	사무실	실	m ²					
	연구실	실	m ²					
	자료실	실	m ²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

(제3쪽)

⑩수지 현황	총수입	천원	⑫ 관람료	개 인		원	
	총비용	천원				원	
⑪관람인원	총인원	명		단 체			원
	단체관람인원	명					원
⑬휴관일						무료	
⑭개관시간				⑮관람소요시간	시간 분		
⑯편의시설	주차장	평 대	식 당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사진촬영	<input type="checkbox"/> 허가 <input type="checkbox"/> 비허가	매 점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장애자시설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그 밖의 시설				
⑰문화 교육현황 (특별전 등)	프로그램명		참석인원	기 간	그 밖의 사항		
⑱자료 발간현황	자 료 명		종 류	비 고			
⑲박물관 주요 특징							
⑳앞으로의 사업계획							

작성요령

1. 작성시 유의사항

이 자료는 앞으로 박물관 육성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현황은 박물관(미술관)의 기초자료이며 앞으로 문화시설의 통계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정확히 적어 주십시오.

나. 이 자료를 보내실 때 가능하면 다음의 자료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박물관 전경 사진(17.5cm×12.5cm) 1장

(2) 자료진열 상태 사진(12.5cm×9cm) 1장 이상

※ ⑩⑪⑫⑬⑯란은 반드시 실시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작성방법

⑥⑦ : 설립자·관장 및 학예사의 인적 사항을 기재(설립자와 관장이 같은 경우도 모두 기재)하며 ⑦란의 총인원란에는 박물관·미술관에 관련 되는 설립자, 관장(원장), 학예사, 그 밖의 직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⑨ : 단위시설의 시설수와 충면적을 기재하되,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의 특수시설 현황은 비고란에 적습니다.

⑰ : 문화교육을 위한 특별전, 특별강좌, 세미나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⑱ : 도록 등 발간자료가 있는 경우 발간자료명과 도록, 팸플릿, 참고도서 등 자료의 종류를 적습니다.

⑲ : 박물관의 주요 특징을 서술식으로 적습니다.

⑳ : 다음 연도의 사업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문화사업계획을 간략히 적습니다.

※ 작성 중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2. 학예사 자격제도 입법평가에 대한 조사 보고서

2009. 7

Hankook Research

목 차

제 1 장 조사 개요	31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313
2. 조사 설계	313
3. 조사 내용	314
4. 응답자 구성	316
제 2 장 주요 조사 내용	317
1. 학예사 자격 취득 여부 및 의향	319
가. 학예사 자격 취득 여부	319
나. 학예사 자격증 취득 의향 및 이유	320
2. 인턴 등 실무 경험	322
가. 실무 경험 일반 정보	322
나. 실습 경험 유용성 및 만족도	325
다. 인턴 실습 의향	329
3. 현행 학예사 제도에 대한 인식	330
가.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330
나. 학예사 명칭 규정에 대한 인식	333
다. 학예사 자격 구분	335
라.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	337
마. 학예사 자격증 관리 업무	340
바. 학예사 승급제도에 대한 인식	340
4.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개선	345
가. 전문학예사 제도	345
나. 인증학예사 제도	349
다. 기존 인력 교육 및 제도 개선 방향	363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구성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조사 필요성

-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시행중인 학예사 자격제도의 규범적 내용과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

□ 조사의 목적

- 학예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및 문제점 파악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예사 자격제도는 박물관·미술관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를 두도록 하였으나, 그 제도 내용이 학예사자격증 취득자와 현 박물관·미술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와 맞지 않는 등 체계적이지 못하여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학예사 자격제도의 개정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제도의 수범자인 관련 전문가 및 인력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실효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장 적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요구됨

2. 조사 설계

□ 조사 방법

- Web Survey와 전화조사 병행
 - 박물관·미술관장 등 전문직과 학예사 자격소지자들에 대한 설문은 질문양이 많고 보다 심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으로

부 록

응답자들의 신중한 설명을 이끌어 낼 필요 있으므로 Web survey 방식을 채택

- 설문양이 비교적 적은 관련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전화 조사를 채택, 조사 편의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

□ 표본 추출 : 표본 할당 추출로 총 150명 대상

- o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사 관련 리스트를 활용, 조사대상자별 비례로 총 150명의 표본 추출
 - 그룹 1 : 박물관·미술관장 및 전문직. 박물관 협력망 회원가입자 대상 (50명)
 - 그룹 2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및 준학예사자격 시험 합격자 (50명)
 - 그룹 3 : 박물관·미술관 관련분야 대학 및 대학원생 (50명)
- o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3.1%

□ 조사 기간

2009. 7. 7. ~ 2009. 7. 11. (총 5일 간)

3. 조사 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조 사 대 상
학예사 자격취득 현황 및 의향	1) 학예사 자격증 보유 현황 - 자격증 보유 비율 - 자격증 보유 유형	Group 1 Group 2
	2) 학예사 자격 취득 의향 및 이유 - 향후 학예사 자격 취득 의향 - 자격 취득 의향/ 거부 이유	Group 1 Group 3

2. 학예사 자격제도 입법평가에 대한 조사 보고서

구 분	조 사 내 용	조 사 대 상
인턴 등 실무 경험	1) 인턴 경험 전반에 대한 의견 - 인턴 경험 유무 - 인턴 경험한 기관 및 담당 업무	Group 2 Group 3
	2) 실무 경험 내용 - 박물관 실무 이해와 관련한 인턴 경험의 유용성 - 인턴 경험 만족도 - 향후 원하는 실무 경력 유형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1)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 학예사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및 주요 문제점 - 학예사 명칭 규정에 대한 인식 - 학예사 자격 구분에 대한 인식 -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에 대한 인식 - 학예사 자격증 관리 기관에 대한 인식	ALL
	2) 학예사 승급제도 인식 및 개선안 - 현행 학예사 승급제도의 문제점 - 현행 학예사 승급제도의 변화 필요성 - 각 학예사 승급제도 개선 방향	Group 2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개선	1) 전문학예사 제도 - 도입 필요성 및 이유 - 제도 도입 시 주요 평가 요인	Group 1 Group 2
	2) 인증학예사 제도 - 도입 필요성 및 이유 - 자격 부여 방식 및 검증 요인 - 명칭 및 등급 구분 - 경력 인정 기관 및 기간에 대한 기준 - 관리 및 재교육 방식 및 관리 기관	
	3) 박물관 인력 교육에 대한 인식 - 참가 경험 및 개선 방향	
	4) 학예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ALL

4. 응답자 구성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성별	남성	39.3 (59)	52.0 (26)	46.0 (23)	20.0 (10)
	여성	60.7 (91)	48.0 (24)	54.0 (27)	80.0 (40)
연령	20 ~ 29세	40.0 (60)	16.0 (8)	12.0 (6)	92.0 (46)
	30 ~ 39세	38.0 (57)	52.0 (26)	56.0 (28)	6.0 (3)
	40 ~ 49세	15.3 (23)	20.0 (10)	26.0 (13)	0.0 (0)
	50 ~ 59세	6.0 (9)	10.0 (5)	6.0 (3)	2.0 (1)
	60세 이상	0.7 (1)	2.0 (1)	0.0 (0)	0.0 (0)
전공	박물관학 일반	10.7 (16)	14.0 (7)	14.0 (7)	4.0 (2)
	박물관 경영 및 마케팅	7.3 (11)	8.0 (4)	4.0 (2)	10.0 (5)
	학예 연구 분야 (미술사, 역사학, 자연사, 과학사, 고고학, 문화사, 인류학, 민속학, 미술학, 서지학 등)	68.0 (102)	70.0 (35)	76.0 (38)	58.0 (29)
	박물관 전시 기획	3.3 (5)	4.0 (2)	0.0 (0)	6.0 (3)
	박물관 교육	1.3 (2)	4.0 (2)	0.0 (0)	0.0 (0)
	보존 과학 및 재질학 관련	9.3 (14)	0.0 (0)	6.0 (3)	22.0 (11)

제 2 장 주요 조사 내용

1. 학예사 자격 취득 여부 및 의향
2. 인턴 등 실무 경험
3. 현행 학예사 제도에 대한 인식
4.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개선

1. 학예사 자격 취득 여부 및 의향

가. 학예사 자격 취득 여부

- 문. 현재 귀하께서는 정학예사/ 준학예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 다음 중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 o 조사 대상자들의 약 53%가 정학예사/ 준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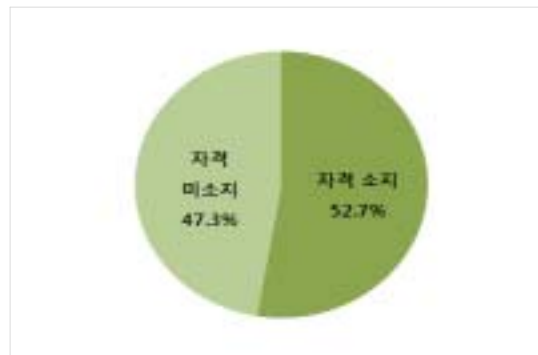
<표 1> 학예사 자격증 소지 여부

단위: % / (명)

		사례수	자격증 소지	
전 체		(150)	52.7	(79)
그룹별	그룹 1	(50)	58.0	(29)
	그룹 2	(50)	100.0	(50)
	그룹 3	(50)	0.0	(0)

[그림 1] 학예사 자격증 소지 여부

N= 150



부 록

- 학예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79명 중 3급 정학예사 소지자들이 58명, 준학예사가 17명으로 대다수가 하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2급 정학예사로 상위 자격증 소지자의 설문 참여 비중 매우 낮음

<표 2> 학예사 자격증 보유 유형

단위: % / (명)

		사례수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전 체		(150)	5.1	(4)	73.4	(58)	21.5	(17)
그룹별	그룹 1	(50)	13.8	(4)	75.9	(22)	10.3	(3)
	그룹 2	(50)	0.0	(0)	72.0	(36)	28.0	(14)
	그룹 3	(50)	0.0	(0)	0.0	(0)	0.0	(0)

나. 학예사 자격증 취득 의향 및 이유

- 문. 향후 학예사 자격증 취득 의향이 있으신지요?
- 문. 학예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 학예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학예사 자격증이 없는 71명 중 약 78%인 55명이 향후 학예사 자격증 취득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인 취득 의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학예사 자격증 취득 의향

단위: % / (명)

		사례수	취득 의향 있음		취득 의향 없음	
전 체		(71)	77.5	(55)	22.5	(16)
그룹별	그룹 1	(21)	71.4	(15)	28.6	(6)
	그룹 3	(50)	80.0	(40)	20.0	(10)

- o 학예사 자격 취득의 이유로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것은 향후 박물관 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관련 분야 대학/ 대학원생 집단인 그룹 3에서 박물관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희망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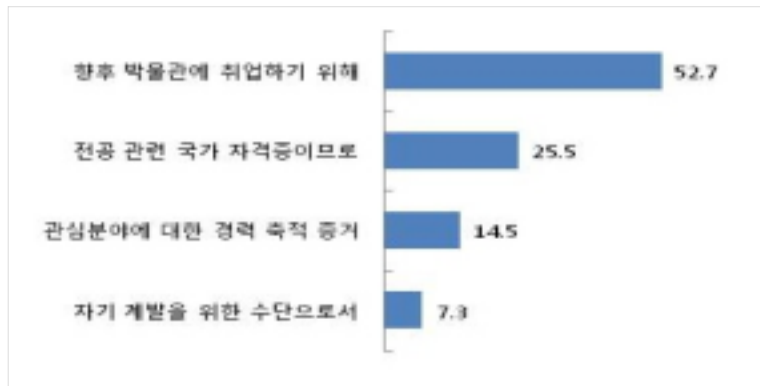
<표 4> 자격증 취득 의향 이유

단위: % / (명)

	전체 (55)	그룹 1 (15)	그룹 3 (40)
향후 박물관에 취업하기 위해	52.7 (29)	33.3 (5)	60.0 (24)
전공 관련 국가 자격증이므로	25.5 (14)	33.3 (5)	22.5 (9)
관심분야에 대한 경력 축적의 증거	14.5 (8)	20.0 (3)	12.5 (5)
자기 계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7.3 (4)	13.3 (2)	5.0 (2)

[그림 2] 자격증 취득 의향 이유 (%)

N= 55



- o 향후 학예사 자격 취득이 없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 중 그룹 1에 속한 응답자 대부분은 박물관에서 일하는데 있어 자격증이

없어도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전공 대학·대학원생 중 자격증 취득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박물관 취업 계획이 없거나(5명), 자격증이 없어도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다(3명)고 밝힘

<표 5> 자격증 취득 거부 이유

단위: % / (명)

	전체 (16)	그룹 1 (6)	그룹 3 (10)
박물관 취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37.5 (6)	16.7 (1)	50.0 (5)
박물관 취업 시 자격증 유무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12.5 (2)	0.0 (0)	20.0 (2)
자격증이 없어도 현재 박물관에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50.0 (8)	83.3 (5)	30.0 (3)

2. 인턴 등 실무 경험

가. 실무 경험 일반 정보

- 문. 귀하께서는 박물관 인턴 등 실무 경력이 있으십니까?
 문. 귀하께서는 어느 박물관/미술관에서 인턴(실습) 경험을 쌓으셨습니까?

- 학예사 자격증 소지 집단인 그룹 2와 관련 전공 학생 집단 그룹 3의 응답자 총 100명 중 62%가 인턴 등 실무 경력을 쌓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그룹 2의 응답자 전원이 실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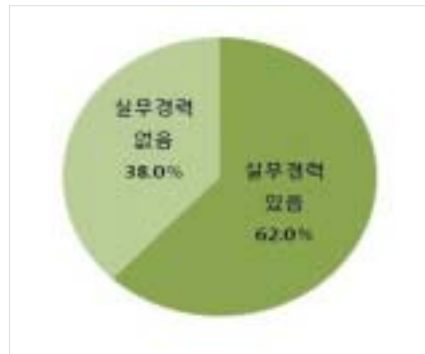
<표 6> 인턴 등 실무 경험

단위: % / (명)

		사례수	실무 경험 있음		실무 경험 없음	
전 체		(100)	62.0	(62)	38.0	(38)
그룹별	그룹 2	(50)	100.0	(50)	0.0	(0)
	그룹 3	(50)	24.0	(12)	76.0	(38)

[그림 3] 인턴 등 실무 경험

N= 100



- o 실습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약 35%가 대학 박물관에서 실무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는 사립박물관(24%), 국립박물관(19.4%) 순

<표 7> 인턴 실습 기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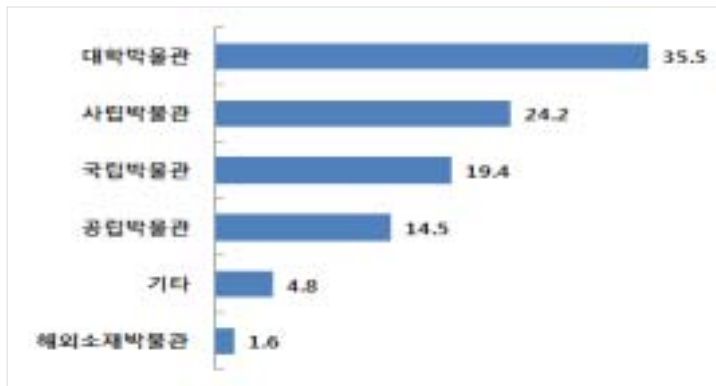
단위: % / (명)

	전체 (62)	그룹 2 (50)	그룹 3 (12)
국립박물관	19.4 (12)	18.0 (9)	25.0 (3)
공립박물관	14.5 (9)	16.0 (8)	8.3 (1)

	전체 (62)	그룹 2 (50)	그룹 3 (12)
사립박물관	24.2 (15)	28.0 (14)	8.3 (1)
대학박물관	35.5 (22)	34.0 (17)	41.7 (5)
해외소재박물관	1.6 (1)	2.0 (1)	0.0 (0)
기타	4.8 (3)	2.0 (1)	16.7 (2)

[그림 4] 인턴 실습 기관 유형 (%)

N= 62



- 실무 경력을 쌓은 응답자들이 인턴 활동 등을 하면서 담당한 업무는 조사연구(18명), 등록 및 유물 관리(17명), 전시(13명) 순으로 나타남

<표 8> 실무 경험 유형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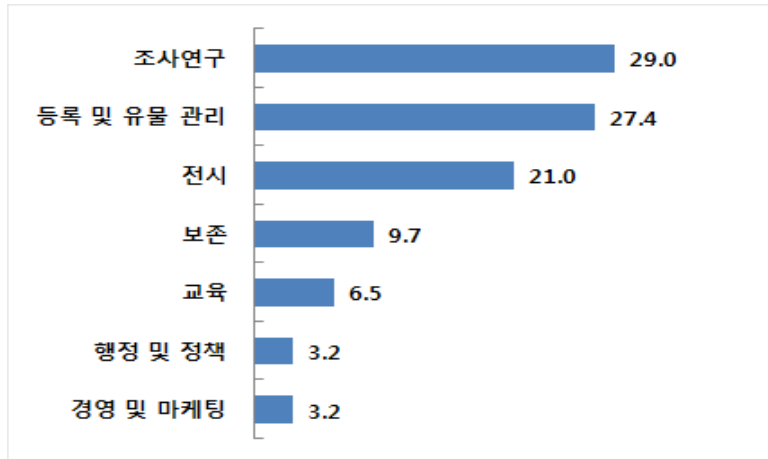
	전체 (62)	그룹 2 (50)	그룹 3 (12)
등록 및 유물관리	27.4 (17)	28.0 (14)	25.0 (3)
조사연구	29.0 (18)	32.0 (16)	16.7 (2)
보존	9.7 (6)	8.0 (4)	16.7 (2)

2. 학예사 자격제도 입법평가에 대한 조사 보고서

	전체 (62)	그룹 2 (50)	그룹 3 (12)
전시	21.0 (13)	20.0 (10)	25.0 (3)
교육	6.5 (4)	4.0 (2)	16.7 (2)
행정 및 정책	3.2 (2)	4.0 (2)	0.0 (0)
경영 및 마케팅	3.2 (2)	4.0 (2)	0.0 (0)

[그림 5] 실무 경험 유형 (%)

N= 62



나. 실습 경험 유용성 및 만족도

문. 인턴 실습이 박물관 업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 5점으로 1~5점 사이로 평가해 주십시오.

문. 인턴 실습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불만족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만족 5점으로 1~5점 사이로 평가해 주십시오.

문. 인턴 실습 과정에서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웠는지요? 다음 중 세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문. 인턴 실습 과정이 유급이었습니까?

부 록

- 인턴 등 실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실무 경력이 박물관 업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5점 척도로 실무 경험의 유용성을 평가했을 때 평균 4.4점으로 인턴 실습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 높음

<표 9> 실무 경험 유용성

단위: % / (명)

	전체 (62)	그룹 2 (50)	그룹 3 (12)
평균(점)	4.4	4.4	4.3
Top 2%	88.7 (55)	90.0 (45)	83.3 (10)

* Top 2%: 도움이 되었다 4 + 매우 도움이 되었다 5의 합

- 인턴 실습의 만족도 또한 응답자의 약 73%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무 경험 유용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만족도 지표가 다소 낮음

<표 10> 실무 경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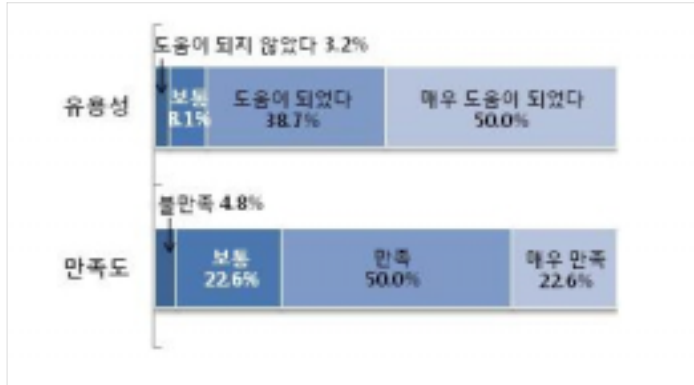
단위: % / (명)

	전체 (62)	그룹 2 (50)	그룹 3 (12)
평균(점)	3.9	4.0	3.7
Top 2%	72.6 (45)	76.0 (38)	58.3 (7)

* Top 2%: 만족스럽다 4 + 매우 만족스럽다 5의 합

[그림 6] 인턴 실습의 유용성 및 만족도 (%)

N= 62



- 실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자신의 인턴 경험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것으로 주어진 업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었으며(64.5%), 뒤를 이어 인턴 운영 매뉴얼의 부재 등 체계적인 관리 부족의 문제 및 적절한 편의 제공이나 처우 부족을 주요한 불만 사항으로 들고 있음

<표 11> 실무 경험 불만족 요인 (복수응답)

단위: MA% / (명)

	전체 (62)	그룹 2 (50)	그룹 3 (12)
인턴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음	24.2 (15)	30.0 (15)	0.0 (0)
인턴 운영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음	59.7 (37)	70.0 (35)	16.7 (2)
맡겨진 업무가 명확하지 않았음	64.5 (40)	62.0 (31)	75.0 (9)
기존 인턴과 신입 인턴들 간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음	16.1 (10)	18.0 (9)	8.3 (1)

부 록

	전체 (62)	그룹 2 (50)	그룹 3 (12)
인턴 운영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	17.7 (11)	22.0 (11)	0.0 (0)
주차, 식사, 패찰 착용 등 편의 제공이나 적절한 처우 부족	40.3 (25)	44.0 (22)	25.0 (3)
기대했던 것보다 인턴과정을 통해 얻는 실무경험 습득이 미흡	21.0 (13)	18.0 (9)	33.3 (4)
인턴 실습 시간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었음	29.0 (18)	36.0 (18)	0.0 (0)

[그림 7] 실무 경험 불만족 요인 (MA%)

N= 62



- o 실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약 61%가 실무 경험 시 급여를 받고 경력을 축적하였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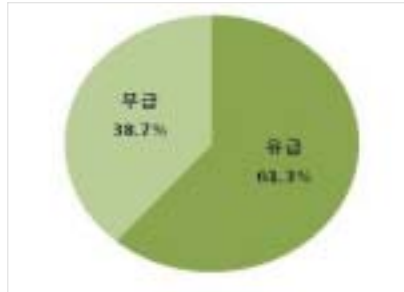
<표 12> 유급 실무경험 여부

단위: % / (명)

	전체 (62)	그룹 2 (50)	그룹 3 (12)
유급	61.3 (38)	68.0 (34)	33.3 (4)
무급	38.7 (24)	32.0 (16)	66.7 (8)

[그림 8] 유급 실무 경험 여부

N= 62



다. 인턴 실습 의향

- 문. 다음 중 어떤 박물관에서 인턴 등 실무 경력을 쌓길 원하십니까?
 문. 박물관에서 인턴 실습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실무를 담당하고 싶으신가요?

- 그룹 3 응답자 중에서 인턴 실습 경험이 없는 38명의 향후 희망 실무기관을 조사한 결과, 국립박물관에서 인턴 실습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63.2%(24명)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실무 경험을 쌓고 싶은 업무 분야는 전시, 등록 및 유물관리, 조사 연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13> 인턴 실습 희망 기관

단위: % / (명)

	그룹 3 (38)	
국립박물관	63.2	(24)
공립박물관	0.0	(0)
사립박물관	25.3	(2)

	그룹 3 (38)	
대학박물관	0.0	(0)
해외소재박물관	10.5	(4)
기타/ 무응답	21.1	(8)

<표 14> 희망 실무 경험 유형

단위: % / (명)

	그룹 3 (38)	
등록 및 유물관리	21.1	(8)
조사연구	21.1	(8)
보존	13.2	(5)
전시	23.7	(9)
교육	13.2	(5)
행정 및 정책	5.3	(2)
경영 및 마케팅	2.6	(1)

3. 현행 학예사 제도에 대한 인식

가.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문. 현행 학예사 자격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 현행 학예사 자격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두 가지 골라주십시오.

- o 응답자들의 72%가 현행 학예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 그룹에서 현 제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학예사 자격제도 입법평가에 대한 조사 보고서

- o 특히 박물관 현직에 종사하는 그룹 1과 학예사 자격 소지자들인 그룹 2에서 현재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비중이 더 높음

<표 15> 현행 학예사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

단위: % / (명)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문제 있다	72.0 (108)	84.0 (42)	72.0 (36)	60.0 (30)
문제 없다	28.0 (42)	16.0 (8)	28.0 (14)	40.0 (20)

[그림 9] 현행 학예사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

N= 150



- o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은 학예사 자격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실제 박물관 등에서의 수요가 고려되지 않은 채 시험 등 자격제도를 통해서 대책 없이 자격증 소지자만을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음
- o 그룹 1 응답자는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적 비대 문제 외에 학예사라는 명칭의 제한으로 인해 실제로 박물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고려되지 않으며, 그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함

-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집단인 그룹 2 응답자들은 타 집단에 비해 현재 제도가 실수요에 비해 학예사들을 너무 많이 배출한다는 점에 가장 널리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외에도 실제 학예사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채용 의무화나 가산점이 부여 등 실제적인 이점이 없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 관련 전공 대학/대학원생 집단인 그룹 3 응답자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실무 경력의 취득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정학예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박물관에서의 경력만 인정될 뿐, 연구소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 문제를 느끼고 있음

<표 16>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 문제점

단위: MA%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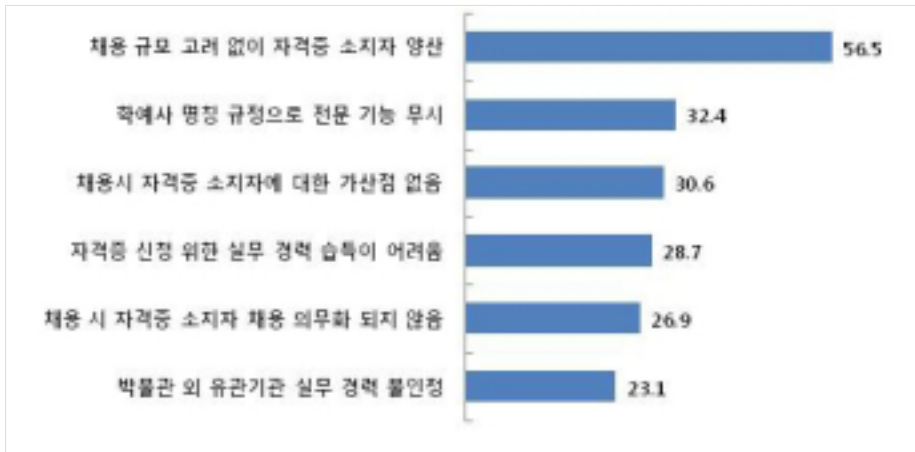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정학예사 취득 자격 요건으로 박물관 이외 유관 기관의 실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23.1 (25)	21.4 (9)	11.1 (4)	40.0 (12)
자격증 신청을 위한 실무 경력 습득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28.7 (31)	28.6 (12)	19.4 (7)	40.0 (12)
학예사 채용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격증 소지자만을 양산함	56.5 (61)	50.0 (21)	66.7 (24)	53.3 (16)
학예사라는 명칭 규정 때문에 학예 연구 기능 외 박물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기능 및 인력의 전문성 무시	32.4 (35)	50.0 (21)	22.2 (8)	20.0 (6)

2. 학예사 자격제도 입법평가에 대한 조사 보고서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학예사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26.9 (29)	21.4 (9)	41.7 (15)	16.7 (5)
학예사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가되지 않음	30.6 (33)	28.6 (12)	38.9 (14)	23.3 (7)

[그림 10] 현행 학예사 자격 제도 문제점 (MA%)

N= 150



나. 학예사 명칭 규정에 대한 인식

문.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의 ‘학예사’라는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학예사’라는 명칭이 문제가 있다면, 향후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반적으로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의 ‘학예사’ 명칭 규정에 대해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룹 1

에서는 학예사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
다는 의견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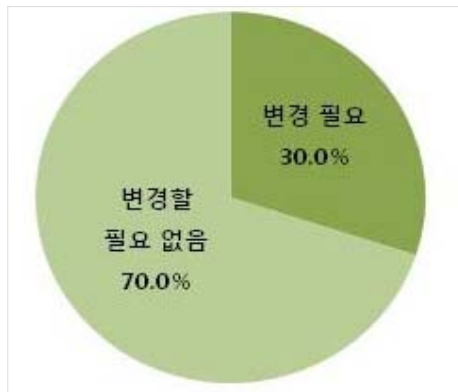
<표 17> 학예사 명칭 변경 필요성

단위: % / (명)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변경해야 한다	30.0 (45)	44.0 (22)	22.0 (11)	24.0 (12)
변경할 필요 없다	70.0 (105)	56.0 (28)	78.0 (39)	76.0 (38)

[그림 11] 학예사 명칭 변경 필요성

N= 150



- 학예사 명칭을 변경할 경우, 전체 학예사에 대해 구분 없이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 통칭하는 방향보다는, 학예 연구직에 제한하여 “학예사” 명칭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명명하는 방향을 선호함

<표 18> 학예사 명칭 변경 방향

단위: % / (명)

	전체 (45)	그룹 1 (22)	그룹 2 (11)	그룹 3 (12)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 통칭	17.8 (8)	27.3 (6)	9.1 (1)	8.3 (1)
학예 연구직에 한해서 ‘학예사’ 명칭을 쓰고, 나머지 전문 학예사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명명	82.2 (37)	72.7 (16)	90.9 (10)	91.7 (11)

다. 학예사 자격 구분

- 문. 현행 학예사 자격 구분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 현행 학예사 자격 구분이 향후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1·2·3급 정학예사/준학예사로 구분되어 있는 자격 등급에 대해 응답자들의 약 67%가 현행 학예사 등급 구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박물관 현업에 종사하는 그룹 1과 2에 속한 응답자들이 각각 83%, 70% 비중으로 현행 등급 구분의 변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관련 대학·대학원생 집단인 그룹 3에서는 현재의 등급 제도를 유지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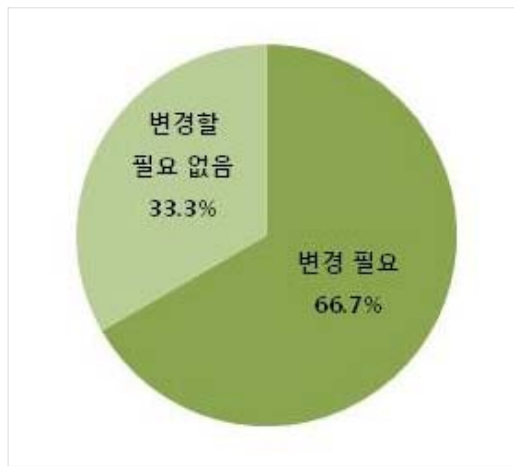
<표 19> 현행 학예사 자격 구분 변화 필요성

단위: % / (명)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변화해야 한다	66.7 (100)	86.0 (43)	70.0 (35)	44.0 (22)
변화할 필요 없다	33.3 (50)	14.0 (7)	30.0 (15)	56.0 (28)

[그림 12] 학예사 자격 구분 변화 필요성

N= 150



- o 현행 학예사 등급 구분의 개선책으로서,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현재처럼 준학예사와 정학예사를 구분하되 정학예사 간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박물관 기능에 따른 주제 전문 학예사를 신설하는 방향에 찬성하고 있음

<표 20> 학예사 자격 구분 변화 방향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43)	그룹 2 (35)	그룹 3 (22)
구분 없이 “학예사”로 통칭	20.0 (20)	18.6 (8)	28.5 (10)	9.1 (2)
준학예사/정학예사/기능 별 전문 학예사를 구분하되 정학예사 등급 구분을 폐지	77.0 (77)	81.4 (35)	62.9 (22)	90.9 (20)
준학예사 제도를 폐지하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	1.0 (1)	0.0 (0)	2.9 (1)	0.0 (0)
모름/ 무응답	2.0 (2)	0.0 (0)	5.7 (2)	0.0 (0)

라.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

- 문. 현행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학예사 자격부여 방식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71%가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특히 그룹 1 응답자들의 변화 필요 긍정 응답이 96%로, 현행 자격 부여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널리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 그룹 3의 응답자들은 현 자격 부여 방식에 대해 변화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58%로 다소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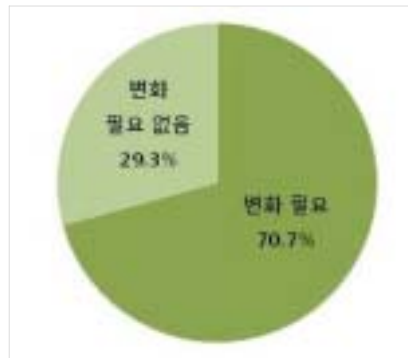
<표 21>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 변화 필요성

단위: % / (명)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변화 필요하다	70.7 (106)	96.0 (48)	74.0 (37)	42.0 (21)
변화 필요 없다	29.3 (44)	4.0 (2)	26.0 (13)	58.0 (29)

[그림 13]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 변화 필요성

N= 150



- 향후 학예사 자격을 부여할 때, 그룹 1과 2의 응답자들은 학력을 기준으로 우선 구분 후, 각각에 실무 경력을 요구하여 심사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
- 반면 그룹 3의 응답자들은 학력을 기준으로 우선 구분하는 안에는 동의하지만,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 경력 습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우선 자격을 취득한 뒤 추후 실무 경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응답 결과와 일치하는 태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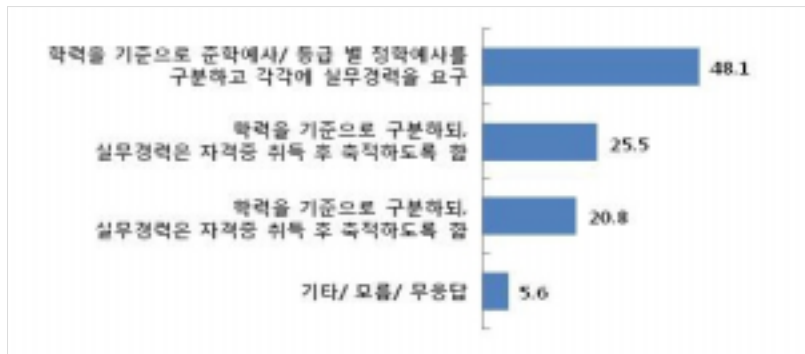
<표 22>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 변화 방향

단위: % / (명)

	전체 (106)	그룹 1 (48)	그룹 2 (37)	그룹 3 (21)
학력을 기준으로 준학예사는 전문학사 소지자, 3급 정학예사는 학사 소지자, 2급 정학예사는 석사 소지자, 1급 정학예사는 박사 소지자로 구분하고 각각에 실무경력 요구하여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	48.1 (51)	54.2 (26)	48.6 (18)	33.3 (7)
학력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실무경력 습득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자격증을 우선 부여한 뒤 실무 경력을 축적하도록 함	25.5 (27)	16.7 (8)	21.6 (8)	52.4 (11)
준학예사의 경우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학점 은행제 등을 활용하여 필수과목 이수 시 자격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	20.8 (22)	27.1 (13)	16.2 (6)	14.3 (3)
기타	4.7 (5)	2.1 (1)	10.8 (4)	0.0 (0)
모름/ 무응답	0.9 (1)	0.0 (0)	2.7 (1)	0.0 (0)

[그림 14] 학예사 자격 부여 방식 변화 방향

N= 106



마. 학예사 자격증 관리 업무

문.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예사 자격증 관리 업무를 향후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예사 자격증을 담당하는 데 적절한 부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재 담당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 응답자 비율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며, 기타 응답 비율과도 큰 차이 없음
- 학예사 자격증 소지 집단인 그룹 2에서 상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자격증 관리 업무를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높은 편임

<표 23> 학예사 자격 관리 담당 기관

단위: % / (명)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현재 담당기관 유지	26.7 (40)	22.0 (11)	28.0 (14)	30.0 (15)
한국박물관협회	22.0 (33)	30.0 (15)	8.0 (4)	28.0 (14)
문화재청	23.3 (35)	20.0 (10)	20.0 (10)	30.0 (15)
문화체육관광부	28.0 (42)	28.0 (14)	44.0 (22)	12.0 (6)

바. 학예사 승급제도에 대한 인식

문. 현행 학예사 승급제도의 가장 주요한 문제점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문. 현행 학예사 승급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준학예사 승급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3급 정학예사 승급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2급 정학예사 승급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1급 정학예사 승급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o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이루어진 그룹 2를 대상으로 승급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
- o 그룹 2 응답자들은 현행 학예사 승급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승급을 위해 필요한 실무 경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실무 경력을 심사할 때 근무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기간만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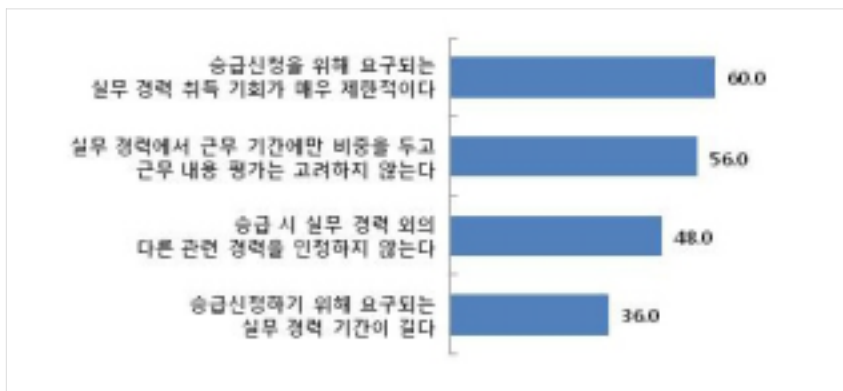
<표 24> 학예사 승급제도의 문제점 (복수응답)

단위: MA% / (명)

	그룹 2 (50)	
승급신청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무 경력 기간이 길다	36.0	(18)
승급 시 실무 경력만 고려할 뿐 다른 관련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48.0	(24)
승급신청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무 경력의 취득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60.0	(30)
실무경력 인정 시, 근무 기간에만 비중을 두고 근무 내용 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56.0	(28)

[그림 15] 학예사 승급제도의 문제점 (MA%)

N= 50



- o 현행 학예사 승급제도에 대해 그룹 2 응답자들의 7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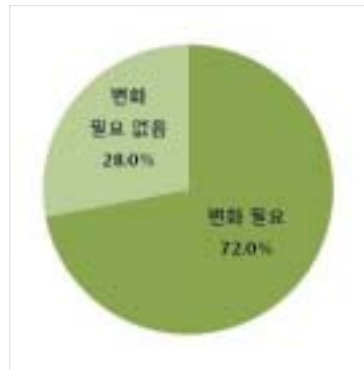
<표 25> 학예사 승급제도 변화 필요성

단위: % / (명)

	그룹 2 (50)	
변화 필요하다	72.0	(36)
변화 필요 없다	28.0	(14)

[그림 16] 학예사 승급제도 변화 필요성

N= 50



- o 전반적으로 승급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은 한 쪽으로 수렴되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o 준학예사 승급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경력인정대상 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다소 비중이 높으나, 기타 응답과 큰 차이 없음

<표 26> 준학예사 승급제도 변화 방향

단위: % / (명)

	그룹 2 (36)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교부	25.0	(9)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 경력 2년 이상일 때 심사를 통해 교부	30.6	(11)
학사/전문학사학위 취득과 관계없이 국립박물관 주관 학점은행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 심사를 통해 교부	25.0	(9)
현행 준학예사 승급제도 유지	19.4	(7)

- 3급 정학예사 승급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 또한 준학예사 제도 개선 방향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이 교루 나타나고 있음
-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시험을 통해 준학예사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서 3급 정학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타나, 승급을 위한 실무 경력 축적이 제한되어 있다는 어려움과 통하는 결과를 보임

<표 27> 3급 정학예사 승급제도 변화 방향

단위: % / (명)

	그룹 2 (36)	
준학예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교부	5.6	(2)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교부	25.0	(9)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 경력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교부	22.2	(8)

부 록

	그룹 2 (36)	
해당분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실무 경력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교부	22.2	(8)
현행 3급 정학예사 승급제도 유지	25.0	(9)

- o 2급 정학예사 승급제도의 적절한 개선 방향으로서, 해당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정도의 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표 28> 2급 정학예사 승급제도 변화 방향

단위: % / (명)

	그룹 2 (36)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을 교부	5.6	(2)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을 교부	44.4	(16)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수료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을 교부	27.8	(10)
현행 2급 정학예사 승급제도 유지	22.2	(8)

- o 1급 정학예사 승급제도의 적절한 개선 방향으로서, 2급 정학예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학력보다는 실무 경력 축적을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표 29> 1급 정학예사 승급제도 변화 방향

단위: % / (명)

	그룹 2 (36)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을 교부	5.6	(2)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하고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을 교부	16.7	(6)
2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을 교부	47.2	(17)
현행 1급 정학예사 승급제도 유지	30.6	(11)

4.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개선

가. 전문학예사 제도

- 문. 전문학예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찬성한다 5점으로 1~5점 사이로 평가해 주십시오.
- 문. 전문학예사 자격제도가 시행될 경우, 귀하는 어떤 분야의 전문학예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 문. 전문학예사 제도가 시행된다면 박물관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다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중요하다 5점으로 1~5점 사이로 평가해 주십시오.

- 전문학예사 제도에 대해 약 70%의 응답자들이 도입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그룹 1 응답자들의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0> 전문학예사 제도 도입

(): 사례 수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찬성(Top 2%)	69.0 (69)	74.0 (37)	64.0 (32)
반대(Bottom 2%)	8.0 (8)	4.0 (2)	12.0 (6)
평균(점)	3.9	4.0	3.7

* Top 2%: 찬성한다 4 + 매우 찬성한다 5의 합

Bottom 2%: 반대한다 2 + 매우 반대한다 1의 합

[그림 17] 전문학예사 제도 도입

N= 100



- o 전문학예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취득하기 원하는 분야로는 조사 연구와 교육 부문의 희망자가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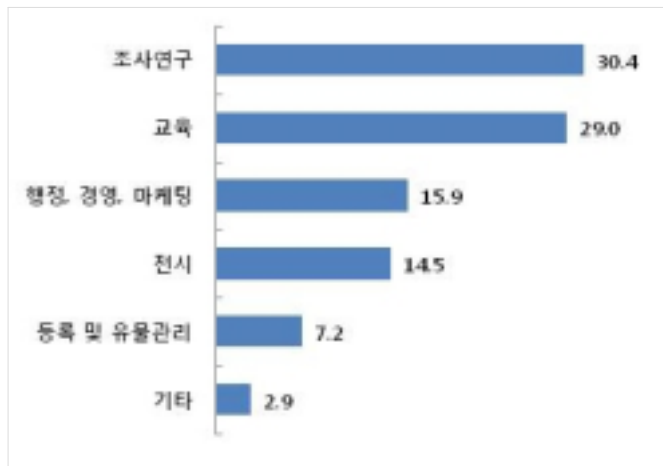
<표 31> 전문학예사 취득 의향 분야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조사연구	30.4 (21)	21.6 (8)	40.6 (13)
교육	29.0 (20)	29.7 (11)	28.1 (9)
전시	14.5 (10)	16.2 (6)	12.5 (4)
등록 및 유물 관리	7.2 (5)	5.4 (2)	9.4 (3)
행정, 경영, 마케팅	15.9 (11)	21.6 (8)	9.4 (3)
기타	2.9 (2)	5.4 (2)	0.0 (0)

[그림 18] 전문학예사 취득 의향 분야

N= 100



- 전문학예사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박물관 인력 채용 시 각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8개 요인을 놓고 5점 척도로 중요도 응답

부 록

- 전문학예사 채용에 있어 박물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 능력과 소장품에 대한 이해, 관련 전공 여부 및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능력으로 평가됨
- 박물관 협력망 가입 대상자 집단인 그룹 1에서는 특히 박물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능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96%로 매우 높으며, 기관의 특성 및 행정 이해도와 보고서 작성 능력도 채용 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
- 반면 학예사 자격증 소지 집단인 그룹 2 응답자들은 전문학예사 채용 시 박물관 관련분야를 전공했는지 여부 등 전문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86%로 그룹 1에 비해 10%p 높게 나타나며, 행정 프로세스 등에 대한 이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

<표 32> 전문학예사 제도 도입 시 각 능력별 중요도

(): 사례 수

		박물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관련 소장품에 대한 이해	박물관 관련분야 전공여부 등 전문성	박물관 실무 경력	외국어 능력	기관 특성 및 행정에 대한 이해	기획서/ 보고서 작성 능력	프리젠테이션 능력
전체 (100)	중요도 (Top 2%)	93.0(93)	91.0(91)	81.0(81)	79.0(79)	30.0(30)	70.0(70)	75.0(75)	48.0(48)
	평균(점)	4.5	4.4	4.2	4.1	3.2	3.9	3.9	3.5
그룹 1 (50)	중요도 (Top 2%)	96.0(48)	92.0(46)	76.0(38)	78.0(39)	40.0(20)	82.0(41)	80.0(40)	52.0(26)
	평균(점)	4.5	4.4	4.1	4.1	3.3	4.0	4.0	3.5
그룹 2 (50)	중요도 (Top 2%)	90.0(45)	90.0(45)	86.0(43)	80.0(40)	20.0(10)	58.0(29)	70.0(35)	44.0(22)
	평균(점)	4.4	4.4	4.24	4.1	3.1	3.7	3.8	3.5

* Top 2%: 중요하다 4 + 매우 중요하다 5의 합

[그림 19] 전문학예사 제도 도입 시 각 능력별 중요도

N= 100



나. 인증학예사 제도

(1)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찬반 의견

문. 준학예사 또는 정학예사 취득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학예사 자격증을 갖지 못한 전문 인력을 위해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인증학예사 제도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인증학예사 제도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반적으로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수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학예사 자격증 소지 집단인 그룹 2 응답자들이 인증학예사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비중 높음

<표 33>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 사례 수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찬성(Top 2%)	31.0 (31)	46.0 (23)	16.0 (8)
반대(Bottom 2%)	50.0 (50)	38.0 (19)	62.0 (31)
평균(점)	2.8	3.1	2.4

* Top 2%: 찬성한다 4 + 매우 찬성한다 5의 합
 Bottom 2%: 반대한다 2 + 매우 반대한다 1의 합

[그림 20]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N= 100



-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인증학예사 제도를 통해서 기존 학예사 자격 조건의 주요 요인인 학력 조건 등 보다는 박물관 실무 경력 및 유사 경력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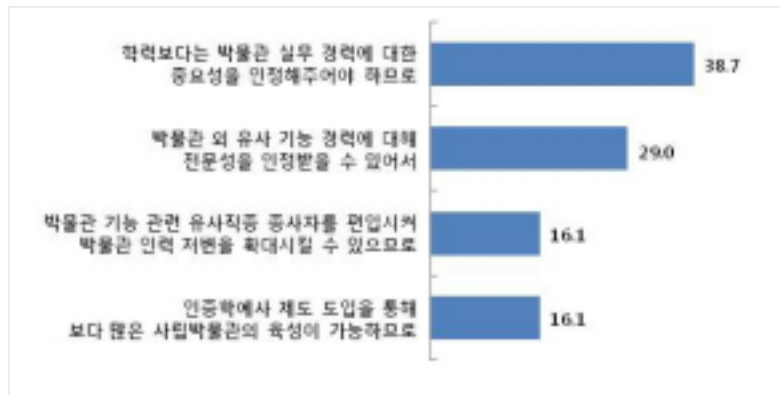
<표 34> 인증학예사 도입 찬성 이유

단위: % / (명)

	전체 (31)	그룹 1 (23)	그룹 2 (8)
박물관 외 유사 기능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29.0 (9)	21.7 (5)	50.0 (4)
학력보다는 박물관 실무경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해주어야 하므로	38.7 (12)	43.5 (10)	25.0 (2)
박물관 기능과 관련된 유사 직종 종사자를 편입시켜 박물관 인력 저변을 확대할 수 있어서	16.1 (5)	17.4 (4)	12.5 (1)
인증학예사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립박물관을 육성할 수 있으므로	16.1 (5)	17.4 (4)	12.5 (1)

[그림 21] 인증학예사 도입 찬성 이유 (%)

N= 31



- 반면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인증학예사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기존 학예사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무 인력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었을 때, 학예사 고유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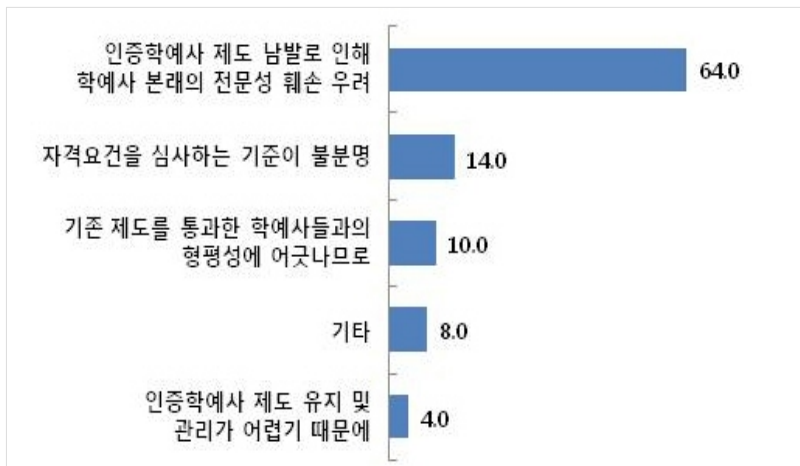
<표 35> 인증학예사 도입 반대 이유

단위: % / (명)

	전체 (50)	그룹 1 (19)	그룹 2 (31)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14.0 (7)	21.1 (4)	9.7 (3)
인증학예사 제도의 남발로 인해 학예사 본래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64.0 (32)	63.2 (21)	64.5 (20)
기존 제도를 통과해서 자격을 부여받은 학예사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10.0 (5)	5.3 (1)	12.9 (4)
인증학예사 제도의 유지 및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4.0 (2)	5.3 (1)	3.2 (1)
박물관 실무경력이 없기 때문에	2.0 (1)	5.3 (1)	0.0 (0)
기타	6.0 (3)	0.0 (0)	9.7 (3)

[그림 22] 인증학예사 도입 반대 이유 (%)

N= 50



(2) 인증학예사 자격 부여 및 검증 요인

문. 인증학예사 제도에도 준학예사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음 중 어느 부분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o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시 기존 준학예사 제도와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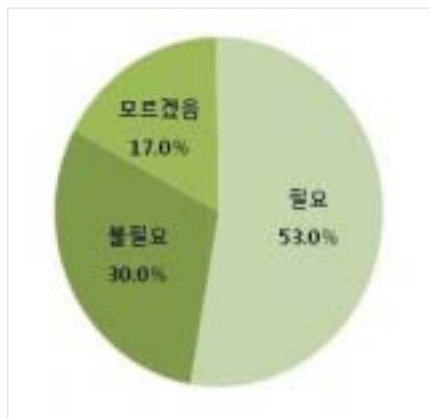
<표 36> 인증학예사 자격시험 필요성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시험 필요하다	53.0 (53)	50.0 (25)	56.0 (28)
시험 필요 없다	30.0 (30)	38.0 (16)	22.0 (11)
잘 모르겠다	17.0 (17)	12.0 (6)	22.0 (11)

[그림 23] 인증학예사 자격시험 필요성

N= 100



부 록

-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시 가장 중요하게 검증되어야 할 요인으로서, 응답자들의 60%가 박물관 관련 분야 전공 여부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특히 기존 학예사 자격 소지 집단인 그룹 2에서 전문성 요인에 대한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로 그룹 1의 46%에 대비되며,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으로 인해 학예사 본연의 전문성 훼손을 우려하는 집단 전반의 태도와 일치하는 태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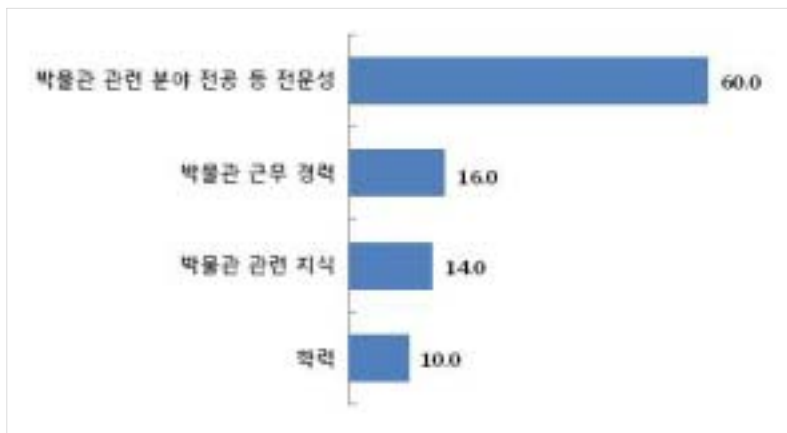
<표 37> 인증학예사 검증 요인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학력	10.0 (10)	14.0 (7)	6.0 (3)
박물관 관련 지식	14.0 (14)	20.0 (10)	8.0 (4)
박물관 근무 경력	16.0 (16)	20.0 (10)	12.0 (6)
박물관 관련 분야 전공 등 전문성	60.0 (60)	46.0 (23)	74.0 (37)

[그림 24] 인증학예사 검증 요인 (%)

N= 100



(3) 인증학예사 명칭 및 등급 구분

문.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1~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라는 자격 명칭 외에 별도로 “인증학예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학예사처럼 등급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o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학예사들과 별도의 명칭인 “인증학예사”로 명명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

<표 38> 인증학예사 별도 명칭 사용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인증학예사” 명칭 사용	47.0 (47)	48.0 (24)	46.0 (23)
“인증학예사” 명칭 불필요	33.0 (33)	34.0 (17)	32.0 (16)
잘 모르겠다	20.0 (20)	18.0 (9)	22.0 (11)

[그림 25] 인증학예사 별도 명칭 사용

N= 100



부 록

- o 인증학예사 제도에 대해 등급 구분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로 나타남

<표 39> 인증학예사 등급 구분 필요성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등급 구분 필요	31.0 (31)	28.0 (14)	34.0 (17)
등급 구분 불필요	51.0 (51)	56.0 (28)	46.0 (23)
잘 모르겠다	18.0 (18)	16.0 (8)	20.0 (10)

[그림 26] 인증학예사 등급 구분 필요성

N= 100



(4) 인증학예사 경력 인정 기준

문.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경력인정대상 기관의 중장기 근무 경력 외에 어떤 기관의 근무 경력을 인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문.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또는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의 중장기 근무 경력을 인정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학예사 자격제도 입법평가에 대한 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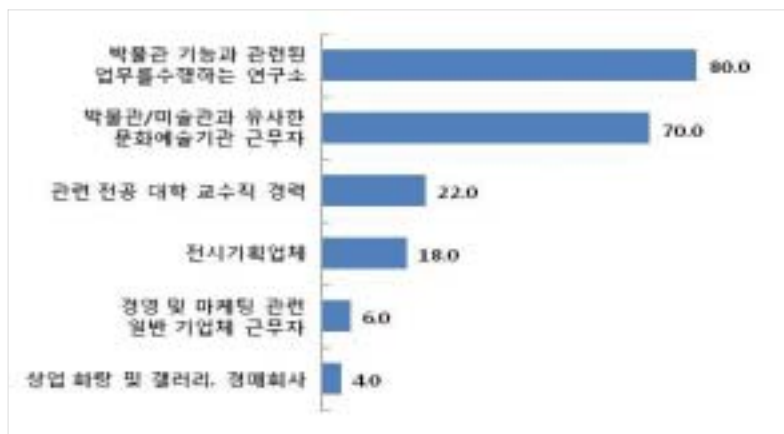
- 인증학예사 자격 부여 시 유사 경력 인정 기관으로서 적절한 곳으로 박물관 기능 관련 연구소 및 박물관 및 미술관과 유사한 문화예술기관이라는 응답 비중 매우 높음
- 특히 학예사 자격 소지 집단인 그룹 2의 응답자들은 박물관·미술관과 유사한 문화예술기관이 경력 인정 기관으로서 적절하다는 응답 비중이 그룹 1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0> 인증학예사 근무 경력 인정 대상 (복수응답)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전시기획업체	18.0 (18)	22.0 (11)	14.0 (7)
박물관 및 미술관과 유사한 문화예술기관 근무자	70.0 (70)	64.0 (32)	76.0 (38)
관련 전공 대학 교수직 경력	22.0 (22)	24.0 (12)	20.0 (10)
경영 및 마케팅 관련 일반 기업체 근무자	6.0 (6)	8.0 (4)	4.0 (2)
박물관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소	80.0 (80)	80.0 (40)	80.0 (40)
상업 화랑 및 갤러리, 경매회사	4.0 (4)	2.0 (1)	6.0 (3)

[그림 27] 인증학예사 근무 경력 인정 대상 (MA%)



부 록

- 인증학예사 자격 부여 시 관련 경력 인정 기간으로 응답자의 80%가 10년 정도의 실무 경력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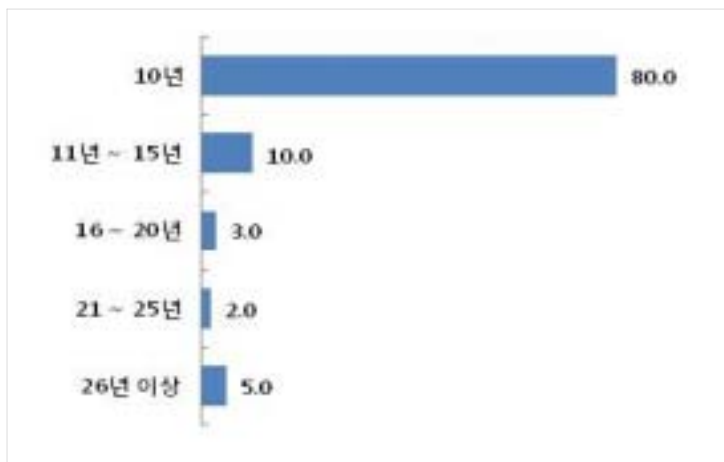
<표 41> 인증학예사 경력 인정 기간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10년	80.0 (80)	84.0 (42)	76.0 (38)
11 ~ 15년	10.0 (10)	6.0 (3)	14.0 (7)
16 ~ 20년	3.0 (3)	2.0 (1)	4.0 (2)
21 ~ 25년	2.0 (2)	2.0 (1)	2.0 (1)
26년 이상	5.0 (5)	6.0 (3)	4.0 (2)

[그림 28] 인증학예사 경력 인정 기간 (%)

N= 100



(5) 인증학예사 관리/재교육 및 관리 기관

- 문.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관리 및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 인증학예사 제도에 대한 관리 및 재교육으로 어떠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문.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해서 재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현행 국공립박물관과 기타 유사 공립기관에서 제공하는 박물관 전문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 인증학예사 제도 관리는 어느 곳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시 이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응답자들의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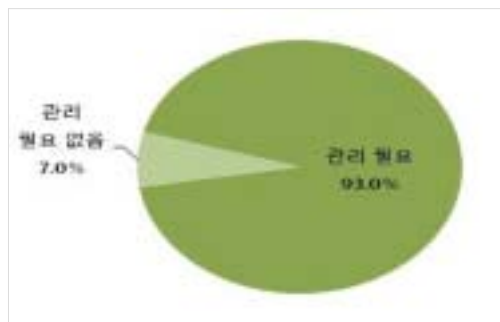
<표 42> 인증학예사 관리 및 재교육 필요성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재교육 필요	93.0 (93)	92.0 (46)	94.0 (47)
재교육 불필요	7.0 (7)	8.0 (4)	6.0 (3)

[그림 29] 인증학예사 관리 및 재교육 필요성

N= 100



부 록

- o 적절한 관리/재교육 방식으로는 현재 국공립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 2회 오프라인 재교육 및 평가 방식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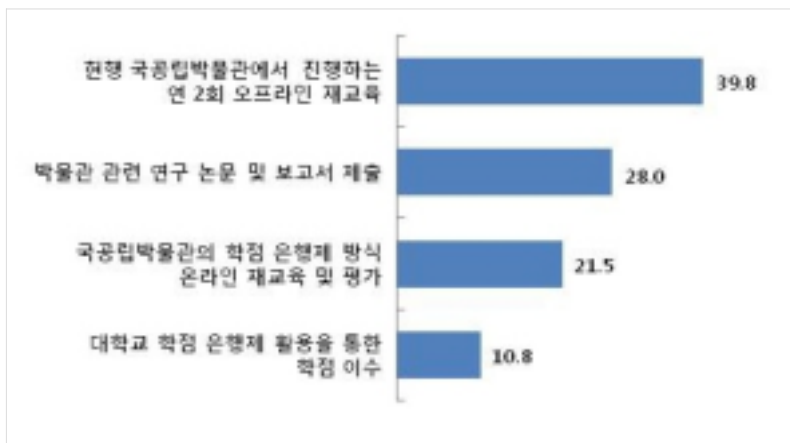
<표 43> 인증학예사 관리 및 재교육 방식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현행 국공립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 2회 오프라인 재교육 및 평가	37.0 (37)	36.0 (18)	38.0 (19)
국공립박물관의 학점 은행제 방식 온라인 재교육 및 평가	20.0 (20)	20.0 (10)	20.0 (10)
대학교 학점 은행제 활용을 통한 학점 이수	10.0 (10)	8.0 (4)	12.0 (6)
박물관과 관련된 연구 논문 및 보고서 제출	26.0 (26)	28.0 (14)	24.0 (12)
모름/ 무응답	7.0 (7)	8.0 (4)	6.0 (3)

[그림 30] 인증학예사 관리 및 재교육 방식 (%)

N= 100



- 인증학예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행 박물관 전문 인력 재교육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의 약 70%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재교육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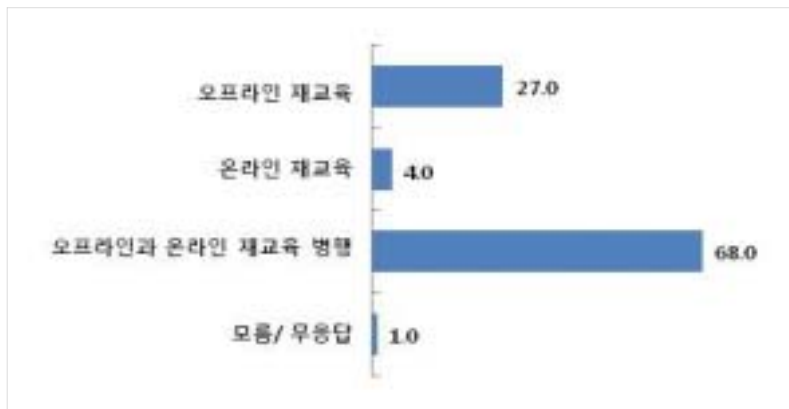
<표 44>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시 기존 인력 재교육

단위: % / (명)

	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오프라인 재교육	27.0 (27)	26.0 (13)	28.0 (14)
온라인 재교육	4.0 (4)	4.0 (2)	4.0 (2)
오프라인과 온라인 재교육 병행	68.0 (68)	70.0 (35)	66.0 (33)
모름/ 무응답	1.0 (1)	0.0 (0)	2.0 (1)

[그림 31] 인증학예사 제도 도입 시 기존 인력 재교육 (%)

N= 100



- 인증학예사 제도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48%가 국립중앙박물관을 들고 있으며, 특히 그룹 2 응답자들

부 록

중 62%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인증학예사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박물관 협력망 가입자 집단인 그룹 1에서는 한국박물관협회
회가 인증학예사 제도 관리 기관으로서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비
중이 42%로 국립중앙박물관 응답자의 34%에 비해 근소하게 높
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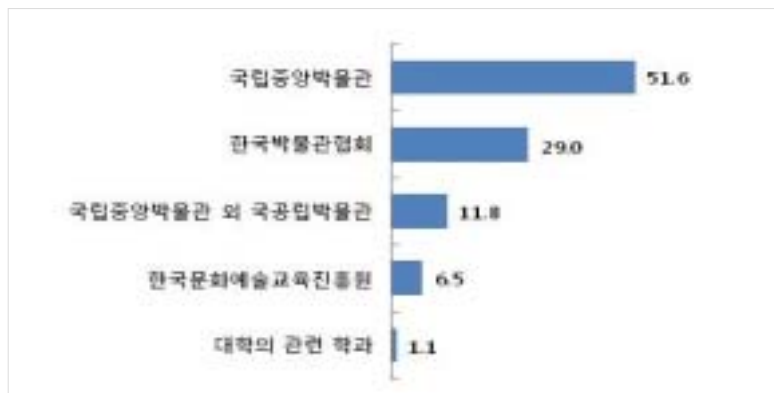
<표 45> 인증학예사 제도 관리 기관

단위: % / (명)

	진체 (100)	그룹 1 (50)	그룹 2 (50)
국립중앙박물관	48.0 (48)	34.0 (17)	62.0 (31)
국립중앙박물관 이외의 국공립박물관	11.0 (11)	8.0 (4)	14.0 (7)
한국박물관협회	27.0 (27)	42.0 (21)	12.0 (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6.0 (6)	6.0 (3)	6.0 (3)
대학의 관련 학과	1.0 (1)	2.0 (1)	0.0 (0)
모름/ 무응답	7.0 (7)	8.0 (4)	6.0 (3)

[그림 32] 인증학예사 제도 관리 기관 (%)

N= 100



다. 기존 인력 교육 및 제도 개선 방향

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전문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문. 귀하의 재교육 참가 경험에 미루어볼 때, 박물관 전문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학예사 자격제도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골라 답변해 주세요.

- 전체 응답자들의 약 37%가 현재 진행 중인 인력 교육·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박물관 협력망 가입자들인 그룹 1에서 교육 참가 비중이 52%로 가장 높고, 관련 전공 대학·대학원생 집단인 그룹 3의 교육 참가 경험 비율은 20%로 낮은 편으로 향후 잠재적 인력 풀(pool)인 관련 학과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참가 기회 및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련 교육에 대한 홍보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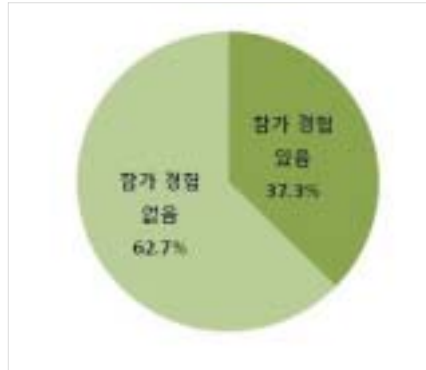
<표 46> 교육 참가 경험

단위: % / (명)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참가 경험 있음	37.3 (56)	52.0 (26)	40.0 (20)	20.0 (10)
참가 경험 없음	62.7 (94)	48.0 (24)	60.0 (30)	80.0 (40)

[그림 33] 교육 참가 경험 (%)

N= 150



- o 교육 참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인력 교육이 일회성을 벗어나 박물관의 각 기능별로 심화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이론 외에도 실제 사례에 대한 연구 및 실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표 47>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향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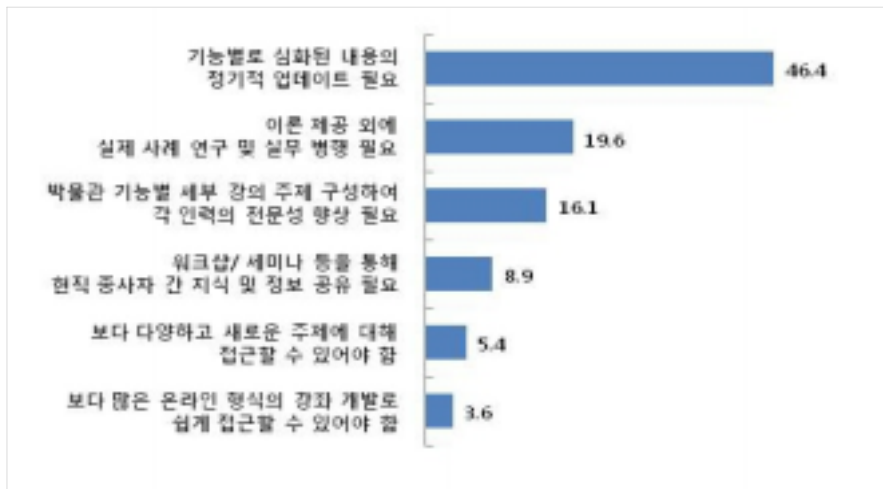
	전체 (56)	그룹 1 (26)	그룹 2 (20)	그룹 3 (10)
일회성 교육이 아닌 기능별로 심화된 내용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함	46.4 (26)	53.8 (14)	45.0 (9)	30.0 (3)
보다 많은 온라인 형식의 강좌가 개발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3.6 (2)	0.0 (0)	5.0 (1)	10.0 (1)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함	5.4 (3)	3.8 (1)	10.0 (2)	0.0 (0)
이론 제공 외에 실제 사례 연구 및 실무가 병행되어야 함	19.6 (11)	23.1 (6)	15.0 (3)	20.0 (2)

2. 학예사 자격제도 입법평가에 대한 조사 보고서

	전체 (56)	그룹 1 (26)	그룹 2 (20)	그룹 3 (10)
일방향식 강의가 아닌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현직 종사자 간 지식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함	8.9 (5)	3.8 (1)	10.0 (2)	20.0 (2)
박물관 기능에 따라 세부 강의 주제를 구성하여 각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해야 함	16.1 (9)	15.4 (4)	15.0 (3)	20.0 (2)

[그림 34]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향 (%)

N= 56



- 향후 학예사 자격제도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학예직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지위 안정성 보장이 전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그룹 2의 경우 학예직의 처우 개선 문제 외에도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학예직 채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나 타 집단에 비해 학예사 자격증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부 록

- o 잠재적 박물관 전문 인력인 그룹 3의 경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인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실습 제도가 체계화 되어야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표 48> 학예사 자격제도 선결 과제 (복수응답)

단위: MA% / (명)

	전체 (150)	그룹 1 (50)	그룹 2 (50)	그룹 3 (50)
박물관의 규모에 따라 학예사 수가 결정되어야 함	24.0 (36)	32.0 (16)	18.0 (9)	22.0 (11)
학예직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안정성 보장 및 처우 개선 필요	69.3 (104)	80.0 (40)	70.0 (35)	58.0 (29)
박물관 학예사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의무화	34.0 (51)	26.0 (13)	56.0 (28)	20.0 (10)
학예사 지원 사업의 내용, 범위, 기간의 확대 필요	22.0 (33)	24.0 (12)	14.0 (7)	28.0 (14)
인턴으로서 실무경력 습득 시 유급제도, 운영매뉴얼, 담당관리 인력 배치 등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34.0 (51)	28.0 (14)	26.0 (13)	48.0 (24)
경력인정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 마련 및 지속적 관리 필요	16.7 (25)	10.0 (5)	16.0 (8)	24.0 (12)

[그림 35] 학예사 자격제도 선결 과제 (MA%)



3. 설문 양식

학예사 자격제도 입법평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지

※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에 표기(✓)해 주십시오.

질 문(공통)	답 변
1.현재 학예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1) 예(1-1. 문항에 답변하신 후 2번 문항으로 가 주시길 바랍니다) 2) 아니오(1-2.~1-4. 문항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1-1.다음 중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1) 1급 정학예사 2) 2급 정학예사 3) 3급 정학예사 4) 준학예사
1-2.현재 학예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 향후 자격증을 취득 하길 원하십니까?	1) 예(1-3. 문항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아니오(1-4. 문항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잘 모르겠다.
1-3.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향후 박물관에 취업하기 위해 2) 전공 관련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3) 관심 분야에 대한 경력 축적의 증거로서 4) 자기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5) 기타()
1-4.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향후 박물관에 취업할 계획이 없다. 2) 자격증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박물관 채용시 반영되지 않는다. 3) 박물관 실무 경력이 부족하거나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5) 현재 자격증이 없어도 박물관에서 근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6) 기타()
2.박물관 인턴 등의 실무 경력을 갖고 계십니까?	1) 예(2-4.~2-10. 문항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아니오(2-1~2-3. 문항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 문(공통)	답 변
2-1.다음 중 어떤 박물관에서 인턴 등의 실무 경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1) 국립박물관(명칭:)
	2) 공립박물관(명칭:)
	3) 사립박물관(명칭:)
	4) 대학박물관(명칭:)
	5) 해외소재박물관(명칭:)
	6) 기타(명칭:)
2-2.박물관 인턴 실습 과정에서 어떠한 실무를 담당하길 원하십니까?(택2 가능)	1) 등록 및 유물관리
	2) 조사연구
	3) 보존
	4) 전시
	5) 교육
	6) 행정 및 정책
	7) 경영 및 마케팅(홍보)
	8) 기타()
2-3.귀하의 전공 영역(최종학력 기준)은 다음 중 어느 분야에 해당됩니까?	1) 박물관학 일반
	2) 박물관 경영 및 마케팅
	3) 미술사, 역사학, 자연사, 과학사, 고고학, 미술학(예술학), 민속학, 서지학, 인류학, 문화사 등 학예 연구 분야
	4) 박물관 전시 기획
	5) 박물관 교육
	6) 보존 과학 및 재질학 관련
	7) 기타()
2-4.어느 박물관(미술관 포함)에서 인턴(실습) 경험을 습득했습니까?	1) 국립박물관(명칭:)
	2) 공립박물관(명칭:)
	3) 사립박물관(명칭:)
	4) 대학박물관(명칭:)
	5) 해외 박물관(명칭:)
	6) 기타(명칭:)
2-5.박물관 인턴(실습) 과정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했습니까?(택 2)	1) 등록 및 유물관리
	2) 조사연구
	3) 보존
	4) 전시
	5) 교육
	6) 행정 및 경영
	7) 기타()

질 문(공통)	답 변
2-6.인턴 실습 과정이 박물관 업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 2) 도움 3) 잘 모르겠음 4)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7.인턴 실습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불만족하다고 답변한 응답자(4와 5답변자)는 2-8. 문항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조금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2-8.인턴 실습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은 무엇입니까?(택3)	1) 인턴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2) 인턴 운영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 3) 인턴에게 맡겨진 업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다. 4) 인턴에게 맡겨진 업무가 박물관 실무 경력을 축적하는 것과 관련성이 없었다. 5) 기존의 인턴과 신입 인턴과의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6) 인턴 운영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다. 7) 주차, 식사, 패찰 착용 등의 편의 제공이나 적절한 처우가 부족했다. 8) 기대했던 것 보다 인턴과정을 통해 얻는 실무 경험 습득이 미흡했다. 9) 인턴 실습 시간이 너무 길거나 또는 너무 짧았다.
2-9.인턴 실습 과정이 유급이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2-10. 문항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10.만일 유급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월 지급 액수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0만원 2) 30만원 3) 40만원 4) 50만원 5) 60만원 6) 70만원 이상

질 문(공통)	답 변
<p>3. 현재 학예사 자격증 관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 어느 기관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한국박물관협회 2)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 3) 문화재청 4) 문화체육관광부 5) 기타()</p>
<p>4. 현행 학예사 자격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택2)</p>	<p>1) 정학예사 취득 자격 요건으로 박물관 이외의 기타 유관 기관의 실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현실적으로 자격증 신청을 위해 실무 경력을 습득하기가 어렵다. 3) 학예사 채용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만 양산하고 있다. 4)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 전문 인력의 명칭을 ‘학예사’로 규정해 놓아, 학예 연구 기능 이외의 박물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과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5) 학예사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부가되지 않고 있다.</p>
<p>5.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의 ‘학예사’의 명칭은 향후 어떠한 명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현행대로 ‘학예사’라고 명명한다. 2) ‘박물관 전문 인력’이라고 통칭한다. 3) 학예연구직에 한해서 ‘학예사’라고 부르고, 나머지 전문 학예사는 기능에 따라 등록 및 유물 관리자, 보존처리사, 교육담당자, 전시기획자 등으로 구분해서 명명한다. 4) 기타()</p>
<p>6. 학예사 자격의 구분에 대한 귀하의 의견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p>	<p>1) 현행대로,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로 구분한다. 2) 일률적으로 구분 없이 학예사로 한다. 3) 준학예사, 정학예사(1급~3급 구분 없음), 주제 전문 학예사(등록 및 유물관리, 보존, 연구, 교육, 전시, 행정·경영·마케팅 등)으로 구분한다. 4) 기타()</p>

질 문(공통)	답 변
<p>7. 학예사 자격의 부여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p>	<p>1) 현행대로 준학예사는 시험과 실무 경력을, 정학예사1급~3급은 학력과 실무 경력을 근거로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p> <p>2) 학력을 기준으로 준학예사는 전문학사 소지자, 3급 정학예사는 학사 소지자, 2급 정학예사는 석사 소지자, 1급 정학예사는 박사 소지자로 구분하고 각각에 실무 경력을 요구하여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p> <p>3) 학력을 기준으로 준학예사는 전문학사 소지자, 3급 정학예사는 학사 소지자, 2급 정학예사는 석사 소지자, 1급 정학예사는 박사 소지자로 구분하고 실무 경력 습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먼저 자격증을 부여한 후 실무 경력을 축적하게 한다(2번은 자격증 교부시 실무 경력이 요구되는 것이고, 반면 3번은 자격증 교부 후 실무 경력 습득하는 것임).</p> <p>4) 준학예사의 경우,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점 은행제를 활용 필수과목을 지정하여 이를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p> <p>5) 기타()</p>
<p>8. 현행 학예사 승급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택2)</p>	<p>1) 승급신청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무 경력 기간이 길다 (현행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상 준학예사는 7년, 3급 정학예사는 7년, 2급 정학예사는 5년의 실무 경력이 요구된다).</p> <p>2) 승급 시 실무경력만 고려할 뿐 기타 연구 및 교육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p> <p>3) 자격증 취득 후, 박물관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7년의 실무경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p> <p>4) 실무 경력 인정 시, 근무 기간에만 비중을 두고 있어 근무 진행 과정이나 근무 내용에 대한 평가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p> <p>5) 2003년 하반기 학예사운영위원회에서 3급정학예사 교부신청자 자격요건 심의시 석사논문 이외 연구논문(발굴·지표조사 보고서 제외)을 학술지, 학회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없는 자는 자격증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p>

질 문(공통)	답 변
<p>9.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승급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1.준학예사 자격증(현행: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기시험 합격 후 학 위여부에 따라 1~5 년의 실무경력을 심 사하여 교부)</p>	<p>1)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 증을 교부한다. 2)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 부한다. 3)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국립박 물관에서 주관하는 학점은행제 방식의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일정 학점을 취득 및 이수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4)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5) 기타()</p>
<p>9-2.3급 정학예사 자격증 (현행: 준학예사 자격 을 보유하고 7년 이 상의 경력을 가진 자 혹은 석·박사 이상 의 학위를 취득하고 1~2년 이상의 경력 을 가진 자를 심사하 여 교부)</p>	<p>1) 준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2)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자격증이 있 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4) 해당분야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경력이 있 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5)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6) 기타()</p>
<p>9-3.2급 정학예사 자격증 (현행: 3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를 심사하여 교부)</p>	<p>1)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 증을 교부한다. 2)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3) 해당분야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 증을 교부한다. 4)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5) 기타()</p>
<p>9-4.1급 정학예사 자격증 (현행: 2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7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를 심사하여 교부)</p>	<p>1)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 증을 교부한다. 2)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의 경력이 있 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3) 2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4)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5) 기타()</p>

질 문(공통)	답 변
<p>10.전문학예사 제도(박물관 기능에 따라 학예사의 기능을 분화하는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입장 이십니까?</p>	<p>1) 매우 찬성 2) 찬성 3) 잘 모르겠다 4) 반대 5) 매우 반대</p>
<p>10-1.만일 전문학예사 자격제도를 시행할 경우, 귀하는 어떤 전문학예사를 신청하기를 원하십니까?</p>	<p>1) 조사연구 2) 교육 3) 전시 4) 보존처리 5) 등록 및 유물관리 6) 행정·경영·마케팅(홍보)</p>
<p>10-2.만일 전문학예사 자격제도를 시행한 이후 박물관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경우, 귀하는 아래의 능력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우선 순위 대로 3가지를 골라 그 순위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p>	<p>1) 박물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 2) 관련 소장품에 대한 이해() 3) 박물관 기능적 측면에서의 개인의 전문성() 4) 박물관 실무 경력() 5) 외국어 능력() 6) 기관의 업무적 특성이나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7) 기획서(보고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능력() 8) 기타()</p>
<p>11.준학예사 또는 1,2,3급 정학예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학예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못한 전문 인력을 위해 ‘인증 학예사’제도 도입할 경우, 귀하는 인증학예사 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 이십니까?</p>	<p>1) 매우 찬성(11-1.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찬성(11-1.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잘 모르겠다 4) 반대(11-2.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5) 매우 반대(11-2.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p>

질 문(공통)	답 변
<p>11-1.찬성(매우 찬성 및 찬성)의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학력 혹은 박물관 외의 유사 기능을 수행한 경력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2) 학력보다는 박물관 실무경력에 대한 중요성도 인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3) 학예사 자격요건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박물관 기능과 관련된 유사 직종 종사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4) 인증 학예사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립박물관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5) 기타 ()</p>
<p>11-2.반대(매우 반대 및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2) 인증 학예사 제도의 남발로 인해 학예사의 본래의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형평성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3) 인증 학예사 제도의 유지 및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4) 박물관 실무경력이 없기 때문에 5) 기타 ()</p>
<p>11-3.만일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또는 경력인정 대상 기관의 중장기 근무 경력 이외에 어떤 기관의 근무 경력을 인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택2)</p>	<p>1) 전시기획업체 2) 박물관 및 미술관과 유사한 문화예술기관의 근무자(문화의 집, 문예회관, 문화재단 등의 기관 포함) 3) 관련 전공의 대학 교수의 교육 경력 4) 일반 기업체 근무자(경영 및 마케팅의 경우) 5) 박물관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소 6) 상업 화랑 및 갤러리, 경매회사 7) 기타()</p>
<p>11-4.만일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1~3급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라는 자격 명칭 이외에 별도로 ‘인증학예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다.</p>

질 문(공통)	답 변
11-5.또한 만일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떤 부분을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학력 2) 박물관 관련 지식 3) 박물관 근무 경력 및 능력 4) 박물관 기능과 관련된 전문성(등록, 전시, 교육, 보존, 경영 및 마케팅 등) 5) 기타()
11-6.인증학예사 자격제도 또한 준학예사 자격증처럼 일종의 시험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다.
11-7.만일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또는 경력인정 대상 기관의 중장기 근무 경력을 인정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10년 2) 11-15년 3) 16-20년 4) 21-25년 5) 26년 이상
11-8.만일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학예사처럼 등급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다.
11-9.만일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현행 국공립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재교육(연 2회) 및 평가 2) 국공립박물관의 학점 은행제 방식의 지속적인 온라인 재교육 및 평가 3) 대학교 학점 은행제 활용을 통한 학점 이수 4) 박물관과 관련된 연구 논문 및 보고서로 제출 5) 필요 없다.

질 문(공통)	답 변
<p>11-10.이러한 재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곳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국립중앙박물관 2) 국립중앙박물관 이외의 국공립 박물관 3) 한국박물관협회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 대학의 관련 학과 6) 기타()</p>
<p>11-11.만일 인증학예사 제도를 도입해서 재교육을 할 경우, 현행 국공립 박물관과 기타 유사 공립 기관에서 제공하는 박물관 전문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오프라인 재교육 2) 온라인 재교육 3) 오프라인 + 온라인 재교육 4) 기타</p>
<p>12.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전문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p>	<p>1) 예(12-1. 문항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아니오</p>
<p>12-1.박물관 전문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현재는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각 주제별(기능별)로 심화된 내용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2) 대부분 오프라인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접근 용이성과 오프라인에 참가하지 못하는 전문 인력을 고려, 온라인 형식의 강좌가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3) 주제가 제한되어 있고 내용이 중복되므로 좀 더 광범위하며 새로운 주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4) 이론 제공뿐만 아니라 사례연구와 실무가 병행되어 현실적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5) 강의뿐만 아니라 워크샵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박물관 현직 종사자간의 지식 및 정보 공유와 함께 주제별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어 각론은 박물관 기능에 따라 구성하여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주어야 한다. 7)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강사도 강사진에 포함되어야 한다. 8) 기타 ()</p>

질 문(공통)	답 변
<p>13. 학예사 자격제도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택2)</p>	<p>1) 박물관 등록요건 상 박물관의 규모에 따라 학예사 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2) 학예직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안정성 보장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3) 박물관 학예사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4) 학예사 지원 사업의 내용, 범위, 기간이 확대되어야 한다. 5) 인턴으로서 실무경력 습득 시 유급제도, 인턴 운영 매뉴얼, 담당 인력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6) 경력인정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가 마련되고 이들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7) 기타 ()</p>
<p>14. 성 별</p>	<p>1) 남자 2) 여자</p>
<p>15. 연 령</p>	<p>1) 20-25세 2) 26-30세 3) 31-35세 4) 36-40세 5) 41-45세 6) 46-50세 7) 51세 이상</p>
<p>16. 직 업</p>	<p>1) 학부 학생(전공:) 2)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전공:) 3)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전공:) 3) 대학 교수(전공:) 4) 박물관 전문 인력(담당 업무:) 5) 기타 ()</p>

※ 장시간 동안 설문에 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